



한국 생활 가이드북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

※

이 책의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홈페이지
www.livein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I 대한민국 소개

- 8 일반정보
- 8 정식국명
- 8 위치와 면적
- 8 국기(태극기)
- 9 국화(무궁화)
- 9 인구
- 9 경제
- 10 행정구역
- 11 날씨
- 11 봄
- 11 여름
- 11 가을
- 11 겨울
- 12 화폐
- 12 명절과 공휴일
- 12 명절
- 13 공휴일

II 외국인지원서비스

- 16 외국인지원서비스
- 16 한국어교육
- 16 한국문화 · 생활교육
- 17 정보화교육
- 17 상담
- 17 외국인지원서비스의 이용
- 18 외국인지원기관
- 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77-5432)
- 20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2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 22 출입국관리사무소(☎1345)
- 23 다국어 지원 웹사이트

III 체류 및 국적취득

- 26 외국인 체류
- 26 여권의 유효기간 및 사증 체류기간 확인
- 28 외국인등록
- 33 체류기간 연장
- 35 체류자격 변경
- 36 체류자격외 활동
- 37 재입국허가
- 38 외국인의 신고의무
- 39 영주권 취득
- 39 대상
- 40 결혼이민자의 경우
- 41 영주자격의 상실
- 42 국적 취득
- 42 대상

- 42 결혼이민자의 경우
- 47 사회통합프로그램
- 50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친지 초청**

IV 한국문화와 생활

- 54 **가족생활문화**
- 54 한국가족의 특징
- 55 언어예절
- 60 가족생활에서 기억하고 축하할 날
- 64 **식생활**
- 64 평소에 먹는 음식
- 65 한국의 기본음식
- 71 양념
- 73 **주거생활**
- 73 집 구하기
- 77 전기 사용
- 78 수도 사용
- 78 가스 사용
- 80 난방시설
- 81 전화, 유선방송, 인터넷 사용
- 86 생활쓰레기 처리
- 88 **소비경제생활**
- 88 가게
- 90 물건구입과 사용
- 93 저축과 은행이용
- 97 **교통수단**
- 97 버스
- 100 지하철
- 104 택시
- 105 자가용

- 107 기차
- 110 항공
- 112 **공공기관 이용**
- 112 행정기관
- 112 경찰서
- 113 소방서
- 113 우체국
- 114 도서관
- 115 **편의시설 이용**
- 115 이발소
- 115 미용실
- 115 목욕시설

V 임신과 육아

- 120 **임신과 출산**
- 120 임신부가 받아야 할 검사
- 120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해 주의할 점
- 122 임신부를 위한 보건소 서비스
- 124 출산
- 125 **영유아 건강관리**
- 125 아이의 발달 단계
- 126 예방접종
- 128 보건소 예방접종
- 129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 129 보육 및 유아교육
- 130 보육료 및 유치원교육비 지원
- 134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VI 자녀교육

- 138 **한국의 교육제도**
- 138 교육제도 일반
- 138 교육과정 운영
- 139 **초등학교 교육**
- 139 초등학교 입학안내
- 142 입학준비
- 144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 지도
- 149 **중학교 교육**
- 149 교과 과목에 따른 학습 내용
- 150 중학교 재량활동
- 151 중학교 특별활동
- 156 **고등학교 교육**
- 156 고등학교 종류
- 157 학생복지
- 161 **대학교 교육**
- 161 대학의 종류
- 162 장학금

VII 건강과 의료

- 166 **국민건강보험**
- 166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 166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 167 가입방법
- 167 가입자 혜택
- 168 보험료 납부
- 168 상담기관 또는 문의처

- 169 **의료급여제도**
- 169 적용대상
- 170 본인부담금
- 171 **의료기관**
- 171 의료기관 유형
- 172 진료 분야와 진료과목
- 173 의료기관 이용절차
- 174 응급상황 대처법
- 175 약국
- 176 **보건소**
- 176 일반진료
- 177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178 무료 정신건강 서비스
- 179 **응급처치**

VIII 사회보장제도

- 184 **국민기초생활보장**
- 184 적용대상
- 185 급여의 종류
- 186 신청방법
- 187 **국민연금**
- 187 적용대상
- 188 보험료 부담
- 188 급여혜택
- 190 **긴급복지지원**
- 190 적용대상
- 191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 192 소득·재산 기준 및 적정성 심사기준

192	지원종류
194	자활근로사업
194	적용대상
194	근로조건
195	신청방법
196	한부모가족 지원
196	서비스 종류
197	신청방법

IX 취업과 근로

200	취업 및 직업훈련
200	취업
204	직업훈련
206	근로 관련 주요사항
206	사회보험
206	근로기준법 안내
208	근로기준
210	임금
211	고용보험
211	실업급여
213	산업재해보험
213	산업재해
215	기본적인 안전수칙
216	알아두어야 할 안전표지
21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17	출산휴가
218	유사산휴가
219	육아휴직

X 대한민국 즐기기

224	여러 가지 문화 공간
225	주요 관광지
225	UNESCO 지정 세계문화유산
228	국립공원
229	지역별 주요 관광지
240	박물관 및 미술관
243	놀이공원
245	외국인거리

부 록

2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255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255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56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I

대한민국 소개

8 일반정보

- 8 정식국명
- 8 위치와 면적
- 8 국기(태극기)
- 9 국화(무궁화)
- 9 인구
- 9 경제
- 10 행정구역

11 날씨

- 11 봄
- 11 여름
- 11 가을
- 11 겨울

12 화폐

12 명절과 공휴일

- 12 명절
- 13 공휴일





1 » 일반정보

1_정식국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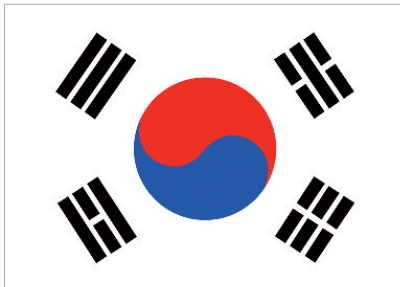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줄여서 ‘한국(Korea)’ 이라고도 부른다.

2_위치와 면적

아시아 대륙 북동쪽, 면적 99,000km² (한반도 전체 면적 221,000km²의 45%)

3_국기(태극기)

한국의 국기는 ‘태극기’라고 부른다. 태극기의 문양은 동양 철학의 음양 이론을 상징하며, ‘세계의 조화와 평등’을 뜻한다.



4_국화(무궁화)

한국의 나라꽃은 ‘무궁화’이다.

무궁화는 영원한 꽃이라는 뜻이다. 매년 7월에서 10월까지 핀다.

5_인구

2007년 10월말 현재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5,008만 7,307명이다. 이는 세계 194개국 중 24위에 해당한다. 인구 밀도는 490명/km²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

6_경제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이며(세계은행 발표) OECD 회원국이다. 2007년 한국의 GDP는 8,874억 달러, 1인당 GNI는 18,372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자동차, 선박, 철강, IT제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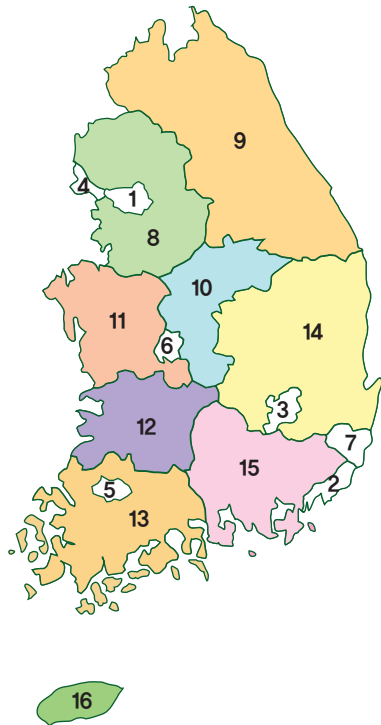
7_행정구역

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6개의 광역자치단체로 나뉜다. 광역자치단체에는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뉜다.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으로, 도는 자치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2008년 12월 현재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6개의 군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과 주변 도시(인천, 부천, 안양, 성남, 의정부, 광명, 시흥, 의왕, 군포, 과천, 구리, 미금, 광주, 고양, 하남시 등)를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한다.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 1천만명, 경기도 1천만명, 인천 2백 5십만 명 등 전체 인구의 약 50%가 밀집하여 살고 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8 경기도	16 제주특별자치도
	3 대구광역시	9 강원도	
	4 인천광역시	10 충청북도	
	5 광주광역시	11 충청남도	
	6 대전광역시	12 전라북도	
	7 울산광역시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2»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절이 분명한 온대기후이다.

1_봄

3월~5월. 아침저녁으로 춥고 낮에는 따뜻하다.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피어난다. 3월에는 따뜻한 겨울옷이 필요하고 4월에는 가벼운 옷차림이 좋다. 5월은 여름처럼 더운 날도 많다.



2_여름

6월~8월. 25℃~35℃정도 되는 더운 날씨. 6월 말부터 7월말 사이에 우기(장마)가 있다. 우기라고 해도 비가 매일 내리는 것은 아니다. 8월부터 9월 사이에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을 거느린 태풍이 몇 차례 지나간다.



3_가을

9월~11월. 10℃~25℃로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 11월에는 겨울처럼 추운 날도 많다. 미리 겨울옷을 준비하고 난방기구를 살피두는 것이 좋다. 단풍이 무척 아름답다.



4_겨울

12월~2월. -10℃~10℃로 아주 춥다. 3일 동안 춥고 4일 동안 조금 덜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날이 많다. 따뜻한 옷과 난방기구가 꼭 필요하다. 2월말이면 날씨가 풀려 제법 따뜻해진다.



3» 화폐

- 화폐단위는 원(Won, ₩)이다.
- 환율(2009년 9월 기준) 1달러 : 1,204원 / 1유로 : 1,766원 / 100엔 : 1,310원

4» 명절과 공휴일

1_명절

한국에는 명절과 계절에 따라 지키는 행사(세시풍습)들이 있다. 한국은 달력에서 양력과 음력 날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명절과 계절 행사는 주로 음력으로 지내고 있다.

• 설날(음력 1월 1일)

- 의미 : 새해가 시작되는 날
- 음식 : 떡국, 만두
- 하는 일 : 새 옷(설빔) 입기,
세배(어른에게 절함)와 성묘(조상 산소에 감),
웃놀이

• 추석(음력 8월 15일)

- 의미 : 한해 농사에 감사하는 날
- 음식 : 햃곡식(가을에 새로 나온 곡식)과 송편
- 하는 일 : 차례 지내고 성묘하기, 달맞이,
강강술래 놀이



2_공휴일

- **삼일절** (양력 3월 1일)

일본 강제점령시대에 독립을 요구하며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규모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

-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

- **어린이날** (양력 5월 5일)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 **현충일** (양력 6월 6일)

한국전쟁 전사자들을 비롯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날

- **광복절** (양력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강제점령에서 벗어나 독립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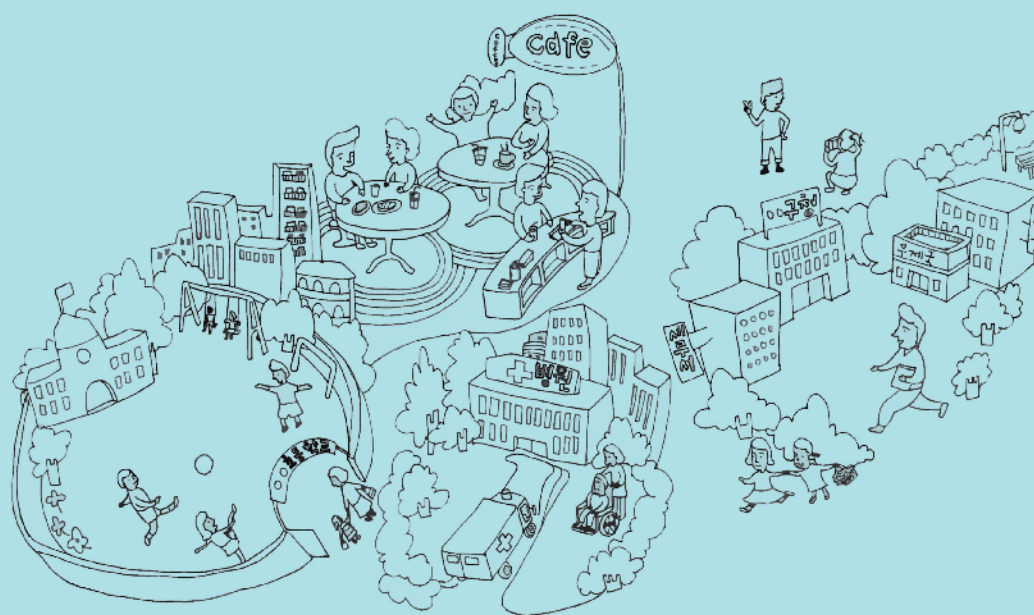
- **개천절** (양력 10월 3일)

한민족의 시조 단군이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날.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

- **성탄절** (양력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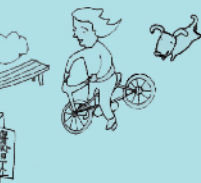
II 외국인지원서비스

16 외국인지원서비스

- 16 한국어교육
- 16 한국문화 · 생활교육
- 17 정보화교육
- 17 상담
- 17 외국인지원서비스의 이용

18 외국인지원기관

- 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77-5432)
- 20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2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 22 출입국관리사무소(☎1345)
- 23 다국어 지원 웹사이트



1 » 외국인지원서비스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상담 등 외국인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가 정부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국 문화가 낯설고,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입국 초기에 외국인 지원기관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1_한국어교육

한국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국어학당 등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집에 직접 한국어교사를 보내 한국어 교육을 시켜주는 방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어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도 손쉽게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_한국문화·생활교육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한국의 생활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이해교육, 법률 및 인권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한국사회적응교육 등이 강의와 체험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3_ 정보화교육

한국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행정업무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많은 기관에서 인터넷 검색 활용 및 각종 프로그램 사용방법을 교육하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_ 상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상담, 노동상담, 체류상담, 법률상담 등)



5_ 외국인지원서비스의 이용

그 밖에 취업 및 창업 교육, 통번역서비스 등이 제공되므로, 다음장의 외국인지원 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원하는 기관에 방문·문의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결혼이민자 통역·번역 서비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와 모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 12개국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로 서비스 제공되며, 입국 초기 상담, 공공기관 이용 시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 ☎1577-5432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외국인지원기관

외국인과 그 가족의 한국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 글로벌센터 등 지역 또는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외국인 지원기관이 있다.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안산시에는 외국인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지방문화원 등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1_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전국에 100개가 설치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개인 상담,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 통역·번역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중언어교실 운영, 언어발달지원(한국어 학습지원) 등이 있다.



(1)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 용
교육 프로그램	• 한국어교육 • 가족교육 •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 역량강화교육
상담 프로그램	• 상담(체류 · 경제 · 직업 · 인권 · 가족폭력 · 성폭력 등) • 가족생활상담, 부부상담, 각종 치료상담
자녀지원 프로그램	• 센터 내 육아정보나눔터 설치 • 자녀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 자녀언어발달지원 • 이중언어교실운영 • 지역 내 보육기관 다문화자녀 언어교육지원 • 대학생 멘토 매칭으로 학습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프로그램	• 가족봉사단 • 취업 · 창업 프로그램 및 기관연계 • 원어민 강사/ 다문화 강사/ 통 · 번역사로 활동 가능
다문화 인식개선 및 정서지원	• 친정어머니결연 • 출신국가별, 다문화가족단위 자조모임결성
가정방문서비스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 • 임신 · 출산 지도 서비스

(2) 이용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보통 평일 09:00~18: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 2009년 현재 전국에 1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1577-5432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_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 용
상담	• 임금 체불 • 사업장 변경(이동) • 출입국 체류 • 산업재해 • 의료/복지 • 가정/국제결혼 • 사기/폭행 등
교육	• 한국어교육 • 컴퓨터교육 • 태권도교육 • 특별교육 : 법률, 안전, 생활적응교육 등
행사	• 공동체행사 • 교육행사 • 문화행사
진료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작은 병원에도 쉽게 갈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작은 질병과 상해의 기본적 진료 및 치료실시
미디어	• MNTV.NET : 이주민 인터넷 방송 • Migrant.kr : 실무자 네트워크 • MigrantOK : 월간 다국어 뉴스레터

(2) 이용방법

- 평일 09:00~18:00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교육에 대해서는 일요일에도 실시된다.
- 모국어상담전화(Migrants' Help-line ☎1644-0644)를 이용하면 다국어로 각종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일요일 (오후1시~7시), 평일에는 ☎1644-0644로 전화하고, 토요일의 경우 ☎02-6900-8000으로 전화하면 된다.

3_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이주여성을 위한 위기상담센터이다.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을 당했거나 긴급하게 보호받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정보가 필요할 때 생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적, 체류 문제 등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국어, 태국어, 몽골어, 따갈로그어가 가능한 이주여성이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한다. 상담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경찰, 변호사, 병원, 여성단체, 복지단체, 전국병원 내 One-Stop지원센터 등)에 연결해 준다.

(1)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 용
상담	•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을 위한 자국어 초기상담 • 365일 전화상담 ☎1577-1366 • 8개국어로 상담
긴급지원서비스 연계활동	• 긴급피난시설 운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 의료, 법률, 검찰, 경찰서비스 연계
기타	•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 법률 정보 안내 • 지역센터를 통한 현장방문상담서비스 실시

(2) 이용방법

- 전화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1577-1366을 누르면 가능하다.
- 필요시 면접상담도 가능하며, 홈페이지 상담코너 및 이메일 상담도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한국어 및 8개국어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따갈로그어, 러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 수원, 대전, 광주, 부산에 지역센터가 있어 면접상담 및 현장방문상담서비스도 가능하다.

4_출입국관리사무소(☎1345)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허가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이지만,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정보제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위해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복드림 Happy Start 프로그램’을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매월 2째 주 또는 4째 주 목요일, 14:00~16:00(결혼이민자 지원의 날)에 운영하고 있다.



행복드림 Happy Start 프로그램

- 한국사회 소개
- 체류허가, 가족초청, 국적 등 출입국관리 분야
- 기초생활 법질서 분야
- 의료, 건강보험, 법률상담 분야
-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 한국어교육 등 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소개



알아두세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Hi Korea)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운영되는 하이 코리아를 통해 방문예약, 재입국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법무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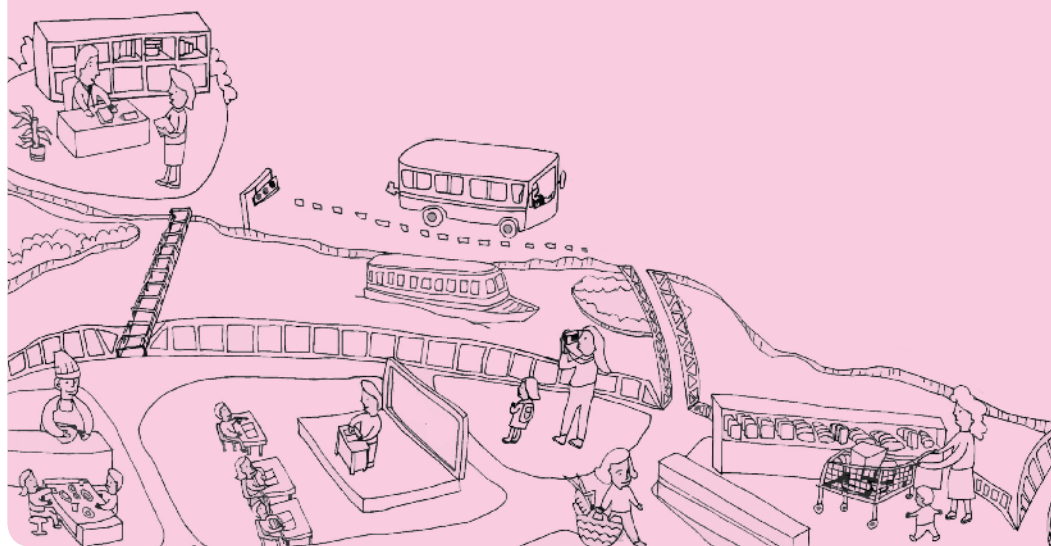
- 이용안내
 -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 회원가입
 - 전자민원, 방문예약, 마이페이지 등 서비스 이용



5_ 다국어 지원 웹사이트

정보통신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 등을 사이버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지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여러 국가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웹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제공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홈페이지	http://www.liveinkorea.go.kr	전국다문화가족 사업지원단	한국어교육 및 한국생활안내, 다국어뉴스 등 통합적인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제공
korea.net	http://korea.net	해외문화정보원	대한민국의 공식 웹사이트
KBS 월드 뉴스	http://world.kbs.co.kr	KBS World	다국어 뉴스, 시사교양, 연예오락 프로그램 소개 등
이주민 방송	http://www.mntv.net	한국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다국어 뉴스, 생활한국어
다문화가정 e-배움	http://ecamp.kdu.edu	한국디지털대학교	한국어 교육
한국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http://www.migrantok.org	한국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상담 및 교육 안내 등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	법무부	방문예약, 재입국허가, 체류 기간연장허가 등 법무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망고넷	http://www.mangonet.kr	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결혼이민자 커뮤니티, 교육, 건강, 직장생활정보 등 제공
샐러드TV	http://www.saladtv.kr	샐러드TV 다문화방송국	외국인, 다문화가정, 해외거주자 등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
korea sparkling	http://www.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한국의 여행 및 축제 정보



III

체류 및 국적취득

- 26 **외국인 체류**
- 26 여권의 유효기간 및 사증 체류기간 확인
- 28 외국인등록
- 33 체류기간 연장
- 35 체류자격 변경
- 36 체류자격외 활동
- 37 재입국허가
- 38 외국인의 신고의무
- 39 **영주권 취득**
- 39 대상
- 40 결혼이민자의 경우
- 41 영주자격의 상실
- 42 **국적 취득**
- 42 대상
- 42 결혼이민자의 경우
- 47 사회통합프로그램
- 50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친지 초청**



1» 외국인 체류

1_ 여권의 유효기간 및 사증 체류기간 확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권 및 사증의 각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만 체류기간 연장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다.

여권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한국입국 비자 읽기



- 윗줄은 한국입국 날짜이다. 이날로부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계산된다.
-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다. 체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체류연장과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체류기간 바로 아래에 있는 만료일은 체류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사증의 유효기간을 나타낸다.

외국인등록증 읽기



- ① 외국인등록번호
- ② 여권상 이름
- ③ 여권상 국적
- ④ 한국내 주소
- ⑤ 체류자격
- ⑥ 발급 날짜(윗줄)

체류기간이 끝나는 날짜(아랫줄)

※ 체류가 끝나는 날짜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⑦ 발급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추가란

일 자	구 분	내 용	허가기관	확인자
체류기간 PERIOD OF STAY	1	2007.03.10	3	4
	2	2008.03.10	5	6

※ 이 증명·증서·허가란 등은 주재원에 넣어 주십시오. If found, please put this into the postbox.

(1) 단기체류자(C계열 – 최대 90일 이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이 체류기간 만료일이다.

(2) 장기체류자 및 영주권자 :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외국인등록증 우측하단에 기재된 날짜가 체류기간 만료일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한 경우에는 뒷면에 기재된 날짜가 체류기간 만료일이다.

(3)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이민자는 장기체류자 혹은 영주권자와 동일하다.

2_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 다만, 입국할 때 여권 안의 사증에 체류기간이 59일로 되어 있다면 입국이후 59일이 지나기 전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 대한민국에 체류중 체류자격부여 혹은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즉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2)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마련)
 - 컬러사진 (3cm x 4cm) 2매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체류자격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꼭 확인할 것)
 - 수수료 10,000원 (정부수입인지)

(3) 결혼이민자의 경우

위의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4) 외국인등록 신청 및 발급

- 외국인등록신청 및 발급은 주소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로 문의)

기 관	주 소	관할구역
◎ 서울·경기·인천지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21	서울특별시,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세종로출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로 12 윤현궁 SK허브빌딩 2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31	인천광역시, 경기도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용진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번지	경기도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5	평택항, 당진항
오산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송탄우체국 사서함 3호	오산군옹비행장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67-2번지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기 관	주 소	관할구역
◎ 강원지역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6	강원도, 경기도 가평군
동해출장소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47 동진빌딩 4층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속초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3-3 속초항만지원센터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고성출장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88	남북왕래 출입국심사
◎ 충북 · 충남 · 대전지역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새터1길 23	충청북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길 150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북 영동군, 옥천군
대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97-8, 한성빌딩 3층	충남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당진군, 보령항
◎ 전북 · 전남 · 광주지역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호성로 213	전라북도
군산출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49-32	전라북도 군산시, 정항항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여주시 무선로 267	전라남도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광양출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59-5	광양항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96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제외)
목포출장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82-2	전라남도 목포시,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기 관	주 소	관할구역
◎ 경북 · 경남 · 대구 · 울산지역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로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상남도(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울산출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16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117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출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13	경상북도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경상남도 마산시 해안로 260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제외)
통영출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171-10	통영시
사천출장소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44-5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거제출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마전동 535-5	경상남도 거제시
◎ 제주지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7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등록증 교부방법

외국인등록증 교부시기는 관할 사무소에 따라 다르나 신청일로부터 대개 7일~10일이 지난 이후 직접 사무소에 방문하여 찾거나 택배비(3,000원)을 선불로 내고 택배신청을 하여 체류지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5) 외국인등록증 관리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의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한다.

-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14일 이내에 주소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재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외국인등록증이 낡아서 못쓰게 된 경우
 - 필요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
 - 외국인등록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된 경우



구비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청이유를 기재한 서류(양식은 없으며 잃어버린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
- 컬러사진(3cm X 4cm) 1매
- 수수료 10,000원

- 외국인등록증 반납 : 아래 사유가 생긴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해야 하는 경우	반납시기	제출 서류
완전히 출국할 때	출국할 때 공항에서	없음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한국 국민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한민국국적취득 증명서류, 외국국적상실서류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진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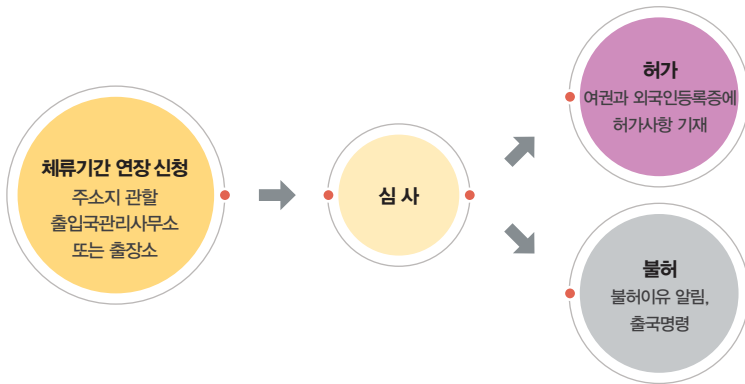
3_ 체류기간 연장

(1) 연장의 대상 및 시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만료일이 지난 이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료 당일까지 체류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너무 촉박하게 신청하였다가 종전의 체류기간 내에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면 불허된 날로부터 불법체류가 되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2) 체류기간연장절차



(3) 구비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30,000원

(4) 결혼이민자의 경우

- 위의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철회하여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신원보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이주민 관련 상담소, 여성 관련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찾아가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체류기간연장이 어려우니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 결혼이민자가 이혼소송 중인 경우에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1회 3개월씩 한정될 수 있다.



4_체류자격 변경

(1) 체류자격변경의 대상 및 시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단기상용(C-2) 사증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려는 경우(D-8)
-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D-2)
- 한국에서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F-2)

(2) 구비서류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50,000원

(3) 결정

허가되면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하고,
불허되면 불허이유고지를 한다.

[illegible]

5_ 체류자격외 활동

(1) 대상 및 시기

90일 이상 장기체류(90일 이내 단기사증소지자는 할 수 없다)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다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학자격(D-2) 사증을 가진 유학생이 학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S-3)를 할 경우
- 종교체류자격(D-6)으로 활동하는 선교사가 대학에서 강의(E-1)를 하고자 경우

(2) 구비서류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50,000원 (D-2 시간제 취업과 F-2는 30,000원)

(3) 결정

허가되면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하고, 불허되면 불허이유고지를 한다.



6_재입국허가

(1) 대상 및 시기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당일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서 체류지 관할과 상관없이 단수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기존의 체류자격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종류

- 단수 : 1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국 가능
- 복수 : 2년 내에 2회 이상 재입국 가능

(3) 구비서류

- 재입국허가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 단수 : 30,000원, 복수 : 50,000원

(4)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민의 배우자(F-2-1)의 경우에는 체류기간 내에서 복수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국민의 배우자 사증을 갖고 있더라도 이혼소송 중이어서 체류기간이 3개월씩 연장되는 경우에는 단수 재입국허가서만 발급된다.

(5) 재입국허가기간의 연장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허가기간 내 입국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간 내에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7_ 외국인의 신고의무

외국인은 아래 내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체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의무

- 대상 및 시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고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외국인의 소속기관이나 단체가 변경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변경사항 입증서류

(2) 체류지변경 신고의무

- 대상 및 시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이사 등의 이유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로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체류지변경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영주권 취득

아래 대상자의 경우, 각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_대상

- 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②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③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 외국인
- ④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
- ⑤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⑥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⑦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 ⑧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 ⑨ 특별공로자
- ⑩ 연금수혜자



2_결혼이민자의 경우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는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상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 중인 자 중 그 잘못이 결혼이민자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이혼 혹은 별거의 이유에 관계없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2) 영주권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변경신청서(F-2 → F-5)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
- 재산관계 입증서류 (아래 중 하나)
 -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 한국인 배우자 외에도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신원보증인의 보증능력을 보여주는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원 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수수료 50,000원

(3) 영주자격 취득시 유리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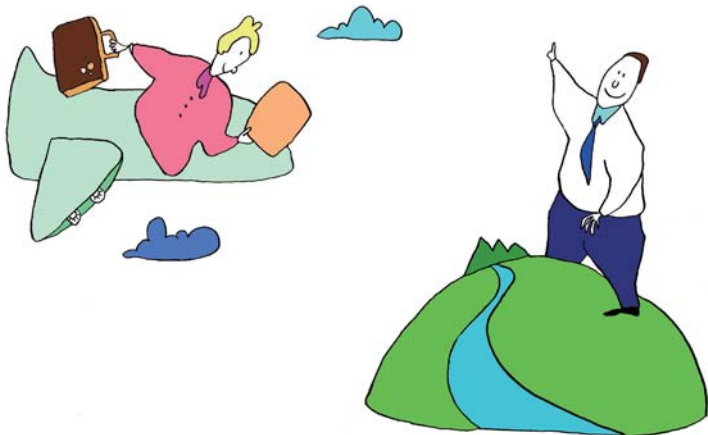
-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영주자격이 유지된다.
-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_영주자격의 상실

영주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영주자격을 잃게 된다.

-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않은 사람
-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 살인, 강도, 마약범, 국가보안법위반, 강간,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
-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 위·변조 여권 또는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

※ 위장결혼이란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인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인 배우자를 소개받을 당시 돈을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위장결혼이라 할 수 없다.



3» 국적 취득

1_대상

아래 대상자의 경우, 각 자격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다.

- 아래 해당되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국적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국적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이후 서류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 ①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부모의 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③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④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 ※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나 혼인여부 관계없으며 국내 거주기간도 요구하지 않고 특별귀화허가신청이 가능하다.
- 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2_결혼이민자의 경우

(1) 대상

-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이후 2년 이상 계속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는 자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

(2) 구비서류

- 귀화허가신청서 (컬러사진 4cm x 5cm 1매 부착)
 - ※ 신청서 작성 후 첫장 사본 1부 제출
- 귀화진술서
- 신원진술서(사진 부착)
- 여권사본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 부동산등기부 등본 혹은 전세계약서 사본
 -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 한국인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에는 실종선고 판결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한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 등



이혼 또는 별거 이유가 결혼이민자에게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영주자격신청,

국적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다음 중 1개 이상)

- 형사판결문 또는 이혼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남편의 잘못이 나타나 있어야 함)
-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한 경우 :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배우자가 때린 경우 : 병원 진단서(남편으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등
-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 남편의 가출신고서 등
-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쓴, 혼인관계 중단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 혼인관계가 중단될 때 살던 지역의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 원인 및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의 확인서' 등



알아두세요!

한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책임이 외국인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적취득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중단된 이후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수수료 100,000원

(3) 국적취득절차

① 귀화허가 신청서 및 서류제출

국적신청은 국적업무를 취급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신청서를 낼 때,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② 자격조사 및 면접

- 신청을 하면 서류 및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접심사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통지서가 도착하므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면접을 통해 한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
-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2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③ 귀화허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가족관계 등록, 외국국적포기, 주민등록, 외국인등록증 반납을 하여야 한다.

④ 가족관계등록신고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서에 기재된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가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는 귀화허가통지서와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⑤ 외국국적포기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외국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국적포기신고를 하고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담당자에게 제출한 뒤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그 기간 내에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한국국적취득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 한국 내에 해당국가의 대사관이 없거나 본국의 관련법상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⑥ 주민등록

- 귀화허가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외국인등록증 반납

- 주민등록이 발급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화허가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다.

(4) 주민등록증 발급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각종신고, 민원서류발급,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진 1매(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3cm x 4cm)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이사한 경우 :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주소지 관할 읍·면·주민자치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살고 있는 곳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3_사회통합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를 위해 표준화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을 통해 이를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 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개설 목적 : 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사회정착
 - 교육과정 : ① 한국어 과정 ② 한국사회 이해 과정
 - 이수시간 : 개인별 최소 50 ~ 최대 450시간
 - ‘한국어’ 과정 최대 400시간 + ‘한국사회 이해’ 과정 50시간
 - 운영주기 : ‘한국어’ 과정 연 2회, ‘한국사회 이해’ 과정 연 3회
- ※ 한국어 구사능력에 따라 이수시간이 차등 적용되며, 결혼이민자는 한국어 과정 3·4단계 면제(사회통합 프로그램 세부 구성단계 참조)
- 운영기관 : 2009년도 20개 운영기관(광역별 1개, 수도권 2~3개)
 - 이수자 혜택
 - 결혼이민자 : 귀화심사 대기기간 단축 및 귀화면접에 반영
 - 일반귀화 신청자 : 귀화 필기시험 면제, 귀화심사 대기기간 단축 및 귀화면접에 반영
- ※ 프로그램 참여자가 희망시, 교육과정 중 다양한 상담 제공



사회통합프로그램 세부 구성단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한국어과정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	고급
이수 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면제
한국사회이해 과정						일반교육 (50시간)
기본소양 사전평가 점 수	결혼이민자	29점이하	30~49점	—		50~100점
	일반이민자	29점이하	30~49점	50~69점	70~89점	90~100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09년도)

지역명	기관명	대표전화	소재지
서울 지역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02-3475-23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50 서울교육대학교
	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957-107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화원종합사회복지관	02-837-076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476-134
경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57-850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2-1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031-544-061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91-5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길 67
인천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440-6545	인천광역시 남구 여성회관길 16
부산 (울산)	동덕대학교 (부산다문화사회통합센터)	051-890-103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051-419-463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151

지역명	기관명	대표전화	소재지
대구	한우리가족사랑센터	053-553-2780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85-23
경북	아름다운가정만들기	054-464-0545	경북 구미시 형곡동 314-3
경남	진주교육대학교 (다문화가족연구소)	055-740-1209	경남 진주시 신안동 380
광주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동문로 3 3층
전남	장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944-9225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83-9
전북	우석대학교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290-1036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후정리 409 우석대학교
대전	목원대학교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	042-829-7288	대전광역시 서구 목원길 21 목원대학교
충남	상명대학교(국어문화원)	041-550-539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산 92 상명대학교
충북	충북 여성단체 협의회	043-223-525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6-4 기정빌딩 2층
강원	강원대학교(국어문화원)	033-250-8137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제주	제주이주민센터	064-712-1140	제주시 노형동 과원 3로 47호 은혜빌딩 6층

4»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친지 초청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친지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부모나 친지가 직접 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각 국가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따라 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초청 가능한 친척의 범위가 각각 다르다. 정확한 정보는 각 국가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는 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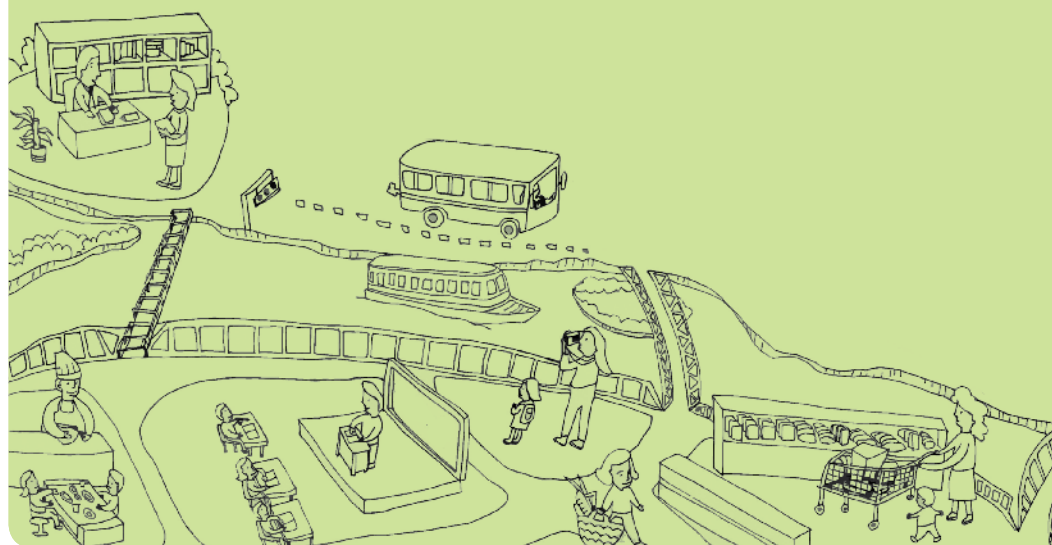
주요 해외공관 연락처

주요 해외공관	연락처
중국 주 광저우 총영사관	86-20) 3887-0555
주 태국 대사관	66-2) 247-7537
주 베트남 대사관(하노이)	84-4) 3831-5110
주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	84-8) 3822-5757
주 몽골 대사관	976-11) 32-1548
주 필리핀 대사관	63-2) 811-6139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62-21) 520-1915
주 캄보디아 대사관	855-23) 211-900/3
주 방글라데시 대사관	8802) 881-2088



Memo





IV

한국문화와 생활

54 가족생활문화

- 54 한국가족의 특징
- 55 언어예절
- 60 가족생활에서 기억하고 축하할 날

64 식생활

- 64 평소에 먹는 음식
- 65 한국의 기본음식
- 71 양념

73 주거생활

- 73 집 구하기
- 77 전기 사용
- 78 수도 사용
- 78 가스 사용
- 80 난방시설
- 81 전화, 유선방송, 인터넷 사용
- 86 생활쓰레기 처리

88 소비경제생활

- 88 가게
- 90 물건구입과 사용
- 93 저축과 은행이용

97 교통수단

- 97 버스
- 100 지하철
- 104 택시
- 105 자가용
- 107 기차
- 110 항공

112 공공기관 이용

- 112 행정기관
- 112 경찰서
- 113 소방서
- 113 우체국
- 114 도서관

115 편의시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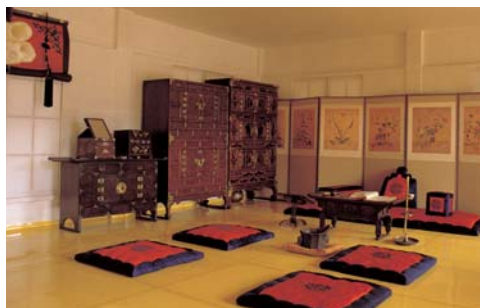
- 115 이발소
- 115 미용실
- 115 목욕시설



1 » 가족생활문화

1_한국가족의 특징

한국의 가족생활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한국가족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가족생활이 좀 수월할 수 있으며,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문화는 각 가정마다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한국가족문화는 유교문화권 국가들과 유사한 측면이 많지만,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가족문화도 점차 변하고 있다.



(1) 가족관계

- 가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 못지않게 가족 간의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가족 내 위, 아래의 순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 가정에서는 부모, 조부모, 친척 중 웃어른을 공경할 것을 가르친다.
- 부모 - 자녀 관계가 특별하다. 한국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편이다. 때로는 이러한 사랑이 지나쳐서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한다. 효도란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노후에 편히 지내시도록 잘 모시는 것을 말한다.

(2) 부부관계

-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가족 내에서 자녀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 집안일이나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여자의 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자들도 집안일이나 아이를 키우는 일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 한국 남성들은 아내에게 애정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들 앞에서 아내에 대한 칭찬이나 애정표현은 못난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조심하는 편이다.

(3) 가족생활의 적응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문화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중요하다. 한국의 가족생활문화가 고국과 다른 부분이 있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한다.



- 서로의 가족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가족 전통을 물어보기
- 그 집안 문화를 존중하고 우선 따라 해보기
- 가족생활에서 힘든 부분은 대화하여 해결하기
-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

※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상담원과 의논해 보는 것이 좋다.

가까운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77-5432)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이용해 보자.

2_언어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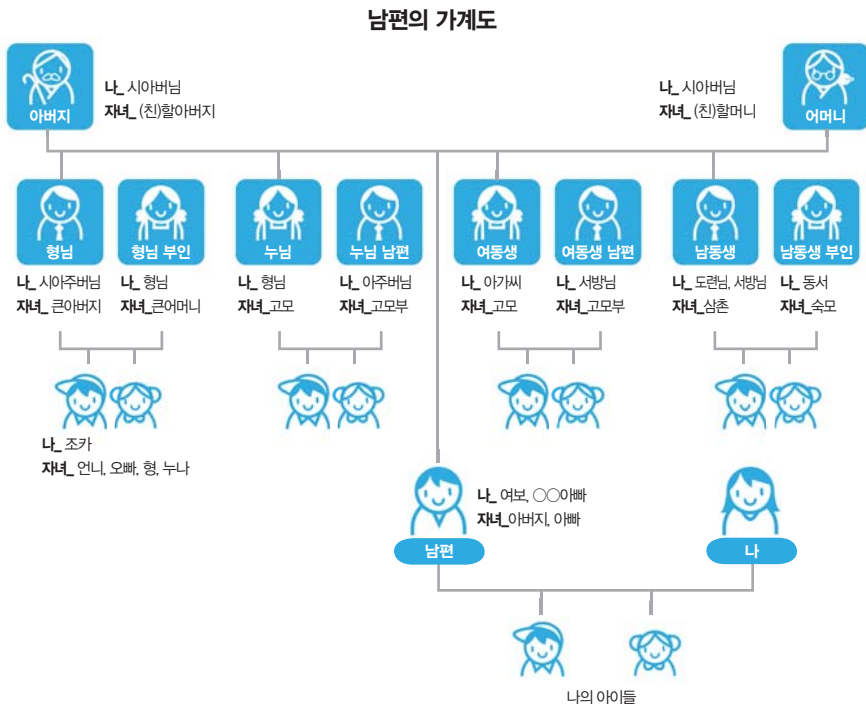
‘호칭’이란 어떤 사람을 직접 부르는 말이고, ‘지칭’이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가리키는 말인데 모두 말할 때는 ‘칭호’라 한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라 같은 대상이라도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부르거나 말하게 된다. 또 순수한 우리말 칭호와 한자말이 섞여서 쓰이고 있다. 때문에 호칭이나 지칭을 잘못 쓰면 무례한 사람이 된다.

(1) 가족을 부르는 방법

한국에서는 가족관계에서 서로 예의를 가지고 부르는 호칭이 있다. 가계도*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가족들을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호칭이 나타나 있다. 부인은 남편의 가족에게 나이 차이에 상관없이 주로 존댓말을 사용한다. 남편은 부인의 가족에게 손윗사람인 경우에 존댓말을 사용하고, 손아랫사람에게는 주로 보통말을 사용한다. 가족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가족과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가계도** : 가족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선으로 연결된 그림이다. 선이 수평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는 결혼을 가리키며, 수직으로 이어진 관계는 부모자식관계를 가리킨다.

아내가 남편 가족 부르기



(2) 아내의 남편, 남편 가족에 대한 호칭* 및 지칭*

관계상황	호칭어	지칭어				
		남편에게	시부모님께	시댁식구들에게	주변사람들에게	자녀에게
시아버지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시아버님	할아버지
시어머니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님	할머니
남편	여보, OO아빠	여보, OO아빠	아범, 애비 그사람, 그이	아범, 애비	남편, 그이, 애아빠	아버지, 아빠
남편의 형	아주버님	아주버님	아주버님	아주버님	시아주버님	큰아버지
남편의 누나/ 여동생	형님/ 아가씨	형님/ 아가씨	형님/ 아가씨	형님/ 아가씨	시누이, 시동생	고모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 서방님	도련님, 서방님	도련님, 서방님	도련님, 서방님	도련님, 서방님, 시동생	삼촌(미혼) 작은아버지
남편 형의 아내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큰동서	큰어머님
여동생의 남편	서방님	서방님, 고모부	서방님	서방님	고모부	고모부
남편 동생의 아내	동서	동서	동서	동서	동서	작은어머님

* 호칭 : 상대방을 부르는 말

* 지칭 : 상대방을 가리켜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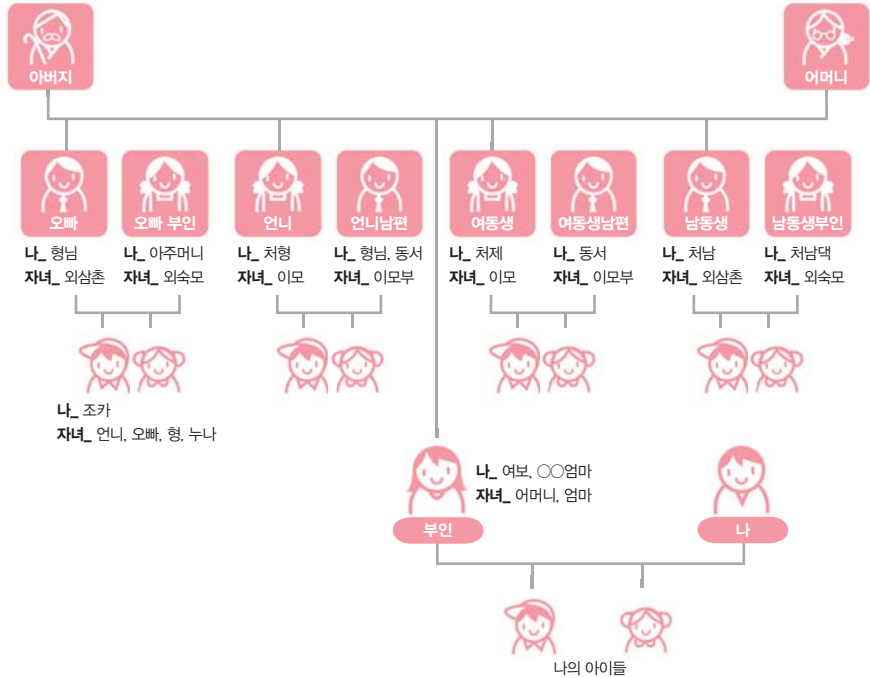
OO → 본인의 자녀이름, O → 성씨

남편이 아내 가족 부르기

부인의 가계도

나_ 장인, 아버님
자녀_ (외)할아버지

나_ 장모, 어머님
자녀_ (외)할머니



(3) 남편의 아내, 아내 가족에 대한 호칭* 및 지칭*

관계상황	호칭어	지칭어				
		아내에게	처부모님께	처가식구들에게	주변사람들에게	자녀에게
장인	장인, 아버님	아버님, 장인어른	아버님, 장인어른	아버님, 장인어른	외할아버지, 장인어른	외할아버지
장모	장모, 어머님	어머님, 장모님	어머님, 장모님	어머님, 장모님	OO외할머님, 장모님	외할머니
아내	여보, OO엄마	당신, OO엄마	OO어미, 집사람	OO어미, 집사람	OO엄마, 처, 아내	어머니, 엄마
아내의 오빠/ 남동생	형님/ 처남	형님/ 처남	형님/ 처남	형님/ 처남	처남	외삼촌, 외숙부
아내의 언니/ 여동생	처형/ 처제	처형/ 처제	처형/ 처제	처형/ 처제	처형/ 처제	이모
아내 오빠의 아내	아주머니	처남댁	처남댁	처남댁	처남댁	외숙모
아내 동생의 아내	처남댁	처남댁	처남댁	처남댁	처남댁 OO외숙모	외숙모
아내 언니의 남편	형님, 동서	형님, 동서	형님, 동서	형님, 동서	동서, OO이모부	이모부
아내 여동생의 남편	동서, O서방	동서, O서방	동서, O서방	동서, O서방	동서, OO이모부	이모부

* 호칭 : 상대방을 부르는 말

* 지칭 : 상대방을 가리켜 이르는 말

OO→본인의 자녀이름, O→성씨

(4) 존댓말과 보통말

한국말은 상대방의 연령, 관계의 친밀성, 지위 등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 상대방을 높이는 존댓말(높임말)과 높이거나 낮추는 말이 아닌 보통말이 있다.

- 상대방이 연령이 높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 또는 공적(public)인 장소에서는 높임말을 사용한다.
- 상대방이 친구이거나 아랫사람 또는 어린이인 경우에는 보통말을 사용한다.

3_가족생활에서 기억하고 축하할 날

가족생활에는 아기의 탄생, 결혼, 죽음 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개인과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므로, 이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거나 슬픈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예의이다.

(1) 탄생 의례

- 백일 : 한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지 백일 되는 날을 기념한다. 백일 음식으로 백설기, 붉은팥으로 만든 수수경단, 미역국을 마련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 축하해 준다.
- 돌 : 아기가 태어난 지 1년 되는 첫 생일에 친척 및 친지들을 초대하여 돌잔치를 한다. 아기에게는 한복을 입히고 돌상을 차려준다. 전통적으로 돌상에는 백설기, 송편, 수수경단을 마련하고, 과일, 실, 쌀, 돈, 연필, 책 등을 올려놓은 다음, 돌잡이(아기가 무엇을 잡는지 봄)를 하고 덕담(좋은 말)과 함께 선물을 준다. 최근에는 식당에서 돌상을 준비해주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돌상차림



현대식 돌상차림



알아두세요!

전통적인 돌잡이 물건의 종류와 의미

- 실 - 오래 삶
- 돈, 쌀 - 재물이 많은 부자
- 축구공 - 축구선수
- 의사봉 - 판사
- 연필, 붓, 책 - 공부를 잘하거나 학자

- 생일 : 태어난 날을 말하며 어른의 경우 '생신'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생일날 아침식사로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 가정의 형편에 따라 맛있는 음식을 차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을 초대한다. 초대받은 사람은 생일(생신)을 맞은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선물하거나 현금을 주기도 한다.

(2) 혼례(결혼)

전통적인 방식의 결혼식과 현대식 결혼식이 있는데, 전통적 방식의 결혼식은 현재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현대식으로 한다. 현대식 결혼식은 결혼식장이나 교회, 절 등에서 할 수 있다. 신랑은 예복,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 후에는 한복으로 갈아입고 시부모나 그 밖의 시댁 어른들에게 폐백*을 드린다.

* 폐백 : 혼례 때 신부가 시부모나 그 밖의 시댁 어른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해 가는 특별 음식



(3) 회갑 · 고회연(장수를 바라는 예식)

- 회갑 :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날을 의미한다. 수명이 짧았던 과거에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을 축하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마련하는 행사이다. 수명이 길어진 요즘에는 간단한 축하의식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잔치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여행을 보내드리거나, 현금을 포함한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전해 드리기도 한다.

- 고회연 : 만 70세가 되는 해의 생일날을 의미한다.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매년 맞이하는 생일보다 더 크게 생일잔치를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한다.

(4) 장례

사람이 죽은 경우에 갖추는 예의를 말한다.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고인에게는 수의를 입힌다. 일반적으로 수의는 연세가 높은 어르신의 생전에 준비한다.

상복은 집안 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베옷을 입는 경우도 있으며, 주로 흰색, 검은 색의 옷을 입는다. 문상* 가는 손님들은 너무 화려한 색깔의 옷은 피하고, 검은 색 또는 흰색 종류의 옷을 입으면 좋다. 문상을 할 때에는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 준비한 방법대로 기도 또는 절을 함으로써 슬픈 마음을 전한다. 형편에 맞게 ‘조의금(현금)’을 낸다.

* 문상 : 돌아가신 분의 가족에게 슬픈 마음을 드러내어 위문하는 것

(5) 제례

현재의 나를 있게 해 준 조상과 부모를 생각하며, 후손으로서 뿌리의식과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예절이다.

- 기제사 :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로서, 보통 조상 2대조까지 한다.
- 차례 : 차례는 명절에 조상을 위하여 지내는 제사로서, 신년차례, 한식차례, 추석차례가 있다.

기제사와 차례 비교

형식	기제사	차 례
순서	3번 술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다.	1번 술잔만 올린다.
시간	돌아가신 날에 한다.	명절 아침에 지낸다.
옷	검소한 옷차림을 한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다.
음식	밥, 국 등 제사 상차림	명절 음식 상차림
기타	촛불을 켜다.	촛불을 켜지 않는다.



2» 식생활

1_평소에 먹는 음식

한국 사람은 모여서 먹기를 좋아하고 나누어 먹기를 즐긴다.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평소에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차려서 대접한다.

한국 음식은 주로 밥, 국, 반찬으로 이루어진다. 국과 유사한 것으로 탕, 찌개가 있으며, 반찬에는 나물, 찜, 조림, 구이, 볶음, 튀김, 전 등이 있다. 반찬을 대표하는 것은 김치 종류이다.

밥을 대신하는 것으로는 면류(국수, 냉면 등), 수제비, 떡 등이 있다.



알아두세요!

한국인과 함께 식사하자!

한국인과 함께 식사하면 훨씬 친해지기 쉽다. 음식에 익숙해지는 것은 한국에 적응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 음식에 마음을 열면 한국 문화에도 그만큼 친숙해지고, 한국생활도 훨씬 즐거워질 것이다.

식수

한국에서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편이다. 한국인들은 정수된 물을 그냥 마시거나, 차를 끓인 뒤 차게 식혀 먹기도 한다.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큰 탈은 없지만, 끓여 먹거나 정수해 먹는 것이 좋다. 처음 한국에 와서 물이 바뀌면 며칠간 배탈이 날 수도 있다. 대부분 며칠 뒤면 좋아지지만, 심하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음식점에서는 얼마든지 무료로 물을 마실 수 있고, 필요하면 가게에서도 쉽게 살 수 있다.

2_ 한국의 기본음식

(1) 밥

쌀을 끓여 익힌 것으로 동남아시아지역 밥보다 찰지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거나 배탈이 날 수도 있다.

일주일 정도 노력하면 한국 밥과 친해질 수 있다.



알아두세요!

비빔밥 : 밥에 각종 나물, 쇠고기, 양념 등을 넣어 참기름과 고추장으로 비빈 음식으로 한국 대표음식이다.
세계적인 유명 스타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2) 국, 탕, 찌개, 전골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채소, 생선, 고기가 들어간 국물이 많은 음식을 밥과 함께 먹는다. 재료와 조리법에 따라 ○○국, ○○탕, ○○찌개, ○○전골이라고 부른다.

- 북어국 : 말린 명태로 끓인 국. 간의 피로와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국물요리
- 콩나물국 : 콩의 뿌리를 연하게 키운 콩나물을 이용한 국물요리
- 미역국 : 해초의 일종인 미역을 넣고 끓인 국물요리
- 설렁탕 : 소의 여러 부위를 함께 넣고 푹 끓인 국, 또는 그 국에 밥을 만 음식
- 갈비탕 : 갈비 부위를 오랜 시간 동안 우려낸 뒤에 국간장과 소금으로 양념을 하고 식성에 따라 면류를 넣어 먹는 음식
- 감자탕 : 돼지뼈와 감자, 채소를 함께 끓인 음식
- 닭도리탕(닭볶음탕) : 닭고기, 채소에 매운 양념장을 섞어 끓인 요리
- 김치찌개 : 김치와 돼지고기 등과 함께 끓인 음식
- 된장찌개 : 된장을 푼 물에 두부, 호박, 버섯, 양파 등을 넣어 끓인 음식
- 부대찌개 : 김치와 햄, 다양한 채소를 함께 넣어 끓인 음식
- 동태(생태)찌개 : 동태(생태)와 무, 두부, 호박을 넣어 끓인 생선찌개



동태찌개



설렁탕

(3) 김치

김치는 한국인에게 매끼마다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음식이며, 맛과 영양, 저장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무, 배추, 오이 등의 채소를 소금에 절인 다음 고추, 마늘, 파, 생강, 젓갈 등의 양념 및 부재료를 함께 버무려 담근다.

그런 다음 밀봉하여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효·숙성시켜 먹는 음식이다. 겨울에는 배추를 재배할 수 없으므로, 11월 말~12월 초에 여러 가지 김치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김장을 한다.

김장 때는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므로,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기도 한다.



배추김치



보쌈김치



갯김치



백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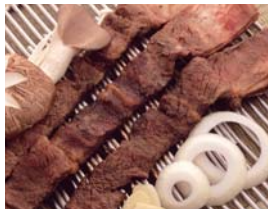
총각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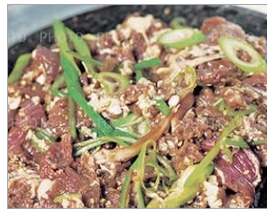
깍두기

(4) 고기요리

- 불고기 : 약간 달고 고소한 맛으로 쇠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에 재웠다가 볶은 요리
- 갈비 : 소와 돼지의 갈비 부위를 양념하여 구운 요리
- 삼겹살 : 돼지뺏살 부위로 팬에 구워 다양한 채소에 싸먹는 요리
- 닭갈비 : 잘게 썬 닭고기를 채소와 함께 볶은 약간 매운 요리
- 제육볶음 : 돼지고기를 채소와 함께 볶은 요리



갈비



불고기

(5) 생선요리

- 생선회 : 익히지 않은 생선을 초고추장이나 겨자에 찍어 먹는 음식
- 생선구이 : 생선에 소금만 뿌려서 굽거나, 양념을 발라 구워먹는 음식
- 생선찜 : 생선에 양념을 하여 물을 붓고 끓이거나 증기를 이용하여 찌는 음식
- 생선조림 : 생선과 채소에 간장과 양념을 넣고 오래 조린 음식
- 오징어볶음 : 오징어를 채소와 함께 맵게 볶은 음식



생선회



생선구이

(6)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 라면 : 짧은 시간 동안 손쉽게 끓여먹을 수 있는 대표적 인스턴트식품. 매운 맛, 순한 맛 등 다양하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즉석 컵라면도 있음
- 김밥 : 김에 밥과 단무지, 햄(돼지고기), 계란, 당근, 오이를 넣고 돌돌 말아서 먹는 음식, 싸고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
- 국수(면) : 국수를 국물에 말거나 양념에 비빈 음식
- 만두 : 고기만두, 김치만두, 물만두, 튀김만두의 종류에 따라 밀가루 반죽에 고기·두부·김치 등을 넣어 찌거나 튀긴 음식
- 떡볶이 : 가래떡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어묵과 여러 가지 야채를 섞고 갖은 양념하여 볶은 음식
- 순대 : 돼지 창자에 당면을 넣고 선지를 섞어서 간한 것을 삶은 음식



라면



김밥



만두

(7) 계절별 과일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각 계절마다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이 많이 나온다. 요즘엔 비닐하우스 재배가 일반화되어 계절에 관계없이 4계절의 과일을 모두 먹을 수 있지만, 과일은 제철에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

본국에서 먹던 과일을 먹고 싶다면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에 가면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본국에서처럼 맛이 좋은 것이 아니며 한국에서는 한국 과일이 가장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

- 봄 : 애플, 딸기(5월초-6월초)
- 여름 : 복숭아(7-8월), 참외(6-7월), 수박(6-8월), 자두, 토마토
- 가을 : 감(9-10월), 배, 사과, 대추, 밤, 포도(9월)
- 겨울 : 귤, 오렌지



딸기



복숭아



사과



귤

3_양념

• 마늘

단단한 겉껍질 속에 맛은 자극적이지만, 구울 경우 매운맛이 줄어들고 달콤한 맛이 난다. 조미료로 쓸 때에는 곱게 다져 사용하고, 향신료로 쓸 때에는 통째로 사용한다.

• 간장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쓰는 짠맛이 있는 액체 조미료이다. 콩으로 만든 메주와 소금으로 발효해 만든다. 간장에는 국간장(조선간장, 진간장)과 양조간장이 있다.

국간장은 국이나 나물을 무칠 때, 양조간장은 무침이나 생선회, 찍어먹는 소스로 사용한다.

• 고추장

매운맛을 내는 양념장이다. 고춧가루, 메줏가루, 소금을 사용해 만든다. 메줏가루의 구수한 맛, 고춧가루의 매운맛, 소금의 짠맛이 잘 조화되어, 고추장 특유의 맛을 낸다.

• 된장

콩으로 만든 메주와 소금을 가지고 만드는 한국 고유의 양념장이다. 국물요리에 많이 쓴다.



마늘



간장



고추장



된장

• 설탕

단맛을 내는 가루로 흰색, 노란색, 갈색이 있다.

• 식초

신맛을 내는 액체로 대부분 노란색이다. 식용유와 비슷해 보이거나 포장지에 사과, 쌀(현미) 그림이 있다.

• 소금

짠맛을 내는 흰색 가루이다. 설탕과 비슷해 보이므로 잘 구분해야 한다.

• 조미료

미원이나 다시다 같이 음식의 맛을 내는 가루. 음식의 맛을 내는 데 도움이 된다. 미원은 소금, 설탕과 비슷하니 잘 살펴봐야 한다. 너무 많이 넣으면 맛과 건강에 좋지 않으니 적당량을 사용하도록 한다.

• 식용유

음식을 튀기거나 부칠 때 사용하는 노란색 액체. 포장지에 옥수수, 땅콩 그림이 있다.

• 참기름

고소한 맛을 낼 때 사용하는 갈색 액체. 참깨기름이라고도 한다.

• 액젓

생선을 소금에 절여 만든 것으로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등이 있다. 태국, 베트남 등의 음식에 쓰는 생선소스(fish sauce)와 같은 맛을 내는 것은 까나리액젓이다.



설탕



식초



소금



조미료



참기름



액젓

3» 주거생활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주거형태로는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이 있다. 요즘 도시에서 사는 한국사람들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 한국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 집의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며, 농촌보다 도시의 집값이 훨씬 비싸다.



1_집 구하기

(1) 전세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다. 주택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다. 집 전체를 빌릴 수도 있고, 일부 공간(한 층, 또는 방 1~2개)만 빌릴 수도 있다. 집 전체를 빌릴 경우 보증금은 주택 가격의 60~70% 선이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하며, 집주인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2년 이내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2) 월세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 방식이다. 대신 같은 규모의 공간을 빌릴 때 전세보다 보증금이 훨씬 싸다. 계약할 때 집주인과 잘 상의하면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조절할 수도 있다. 보증금을 높이면 월 사용료가 적어지고, 보증금을 낮추면 월 사용료가 그만큼 많아진다. 월세는 방 크기와 개수, 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전세나 월세 계약에는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TV수신료 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따로 부담한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팔려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3) 기숙사

회사 또는 학교에서 마련해주는 숙소를 말한다. 산업연수생(D-3)에게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도록 되어있다. 연수취업생(E-8)과 고용허가제 노동자(E-9) 역시 대부분은 회사에서 마련해 주지만, 반드시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4) 방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점

한국에서 방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거리에 붙은 광고지를 보고 직접 찾아가서 집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대신 확인해 주기도 하고,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기도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계약

• 계약상대

계약서는 꼭 집주인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거주 기간, 보증금 액수, 월세 액수 등이 적혀 있다. 그런데 간혹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그 방에 살고 있던 세입자와 계약을 한 뒤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만일 집주인이 그 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쓸 때에는 반드시 그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택소유자가 누구인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 등기부등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집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집주인의 이름, 주소, 집의 면적과 구조, 집주인의 채무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면 주변의 한국인 동료에게 부탁하는 게 좋다.

• 지불 금액과 방법

계약금 액수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이다. 보증금이 200만원인 방이라면 계약금은 20만원이 된다. 나머지 180만원 중 일부는 입주 전에 날짜를 정해 지불하고, 나머지는 입주하는 날 지불한다. 입주하는 날 잔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경우도 많다. 영수증을 꼭 챙겨두자.



계약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사항

- 주택 소재지(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재지와 계약서에 기록되는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 계약 금액(보증금과 월세 금액)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시기(계약금은 보증금의 10%만 주는 것이 안전하다)
- 계약기간
-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 또는 손도장



(6) 계약기간 만료와 보증금 환불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를 공제할 수 있다.

가령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5만원인 방에서 살다가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방을 옮기게 되었다고 하자. 곧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나머지 3개월분의 월세 45만원을 빼고 155만원만 돌려주어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만료일로부터 최소한 1달 전에 집주인에게 집을 옮기겠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위법이다. 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돈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므로, 만일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일단 상담지원기관을 찾아가 상의하는 게 좋다.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꼭 해야 할 일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이사 나갈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 큰 손해를 보니 잊지 말아야 한다.



2_전기 사용

(1) 전압 220V

한국 전기 콘텐서의 전압은 대부분 220V이다. 만약 전기기구가 110V 전용이라면 콘텐서를 220V에서 110V로 감압시켜주는 트랜스가 필요하다.



(2) 누전 차단기

모든 주택에는 전기로 인한 화재를 막아주는 누전 차단기라는 안전장치가 있다. 전기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전기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내려가면서 전기 공급이 끊어진다.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을 새로 구했을 때는 누전 차단기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누전 차단기의 시험용 단추(적색, 누전 전용은 녹색)를 눌러보면 된다. 스위치가 아래로 떨어지면 정상, 그렇지 않으면 불량이다.



3_수도 사용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어 물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물이 새고 있는지 여부 및 보온재(스티로폼)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복도식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벽체가 직접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수도계량기함은 외부보호커버에 비닐을 부착하거나 또는 동파방지용 열선을 감아 보온 조치해야 하며 집을 장기간 비우거나 혹한기간 중 수돗물을 안 쓰는 야간에는 수돗물을 아주 소량으로 흘려보내야 동파사고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다.
- 또 수도계량기가 얼은 경우라면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녹이기 시작, 점차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수도계량기를 녹여야 수도계량기 유리 파열을 막을 수 있다.

4_가스 사용

(1) 취사용 가스

취사용 가스기구를 잘못 다루면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다. 사용이 끝난 후에 항상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고, 중간밸브를 잘 잠그는 습관을 갖는다.

(2)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버너에 부탄가스를 넣어 사용한다. 잘못 넣어 가스가 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꽃이 작거나 가스 냄새가 나면 즉시 확인해야 한다.

다 쓴 부탄가스통을 버릴 때는 못이나 송곳으로 구멍을 내어 재활용통에 넣는다.



부탄가스 버너

부탄가스

(3) LPG가스 · 도시가스

중간밸브를 열고 가스를 점화하여 사용한다. 사용이 끝나면 꼭 중간밸브를 잠근다. LPG가스 ·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는 가스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스가 새는지 점검하려면 주방용 액체세제를 물과 1:1로 섞은 다음 호스의 연결부분 주위에 발라본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정상이고 거품이 발생하면 가스가 새는 것이므로 즉시 수리해야 한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스회사에서 안전점검을 하러 온다. 이때는 가능하면 외출하지 말고 있다가 꼭 점검을 받고, 부득이 집을 비우게 되면 집주인이나 이웃사람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4) 가스사고 예방

가스사고는 대부분 가스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해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발생한다. 가장 흔한 것은 가스 질식과 가스 폭발이다. 점검 결과 가스가 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스 안전밸브를 잠근다.
- 창문과 출입문을 모두 열고 환기를 시킨다.
- 전기 스파크에 의한 가스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기구는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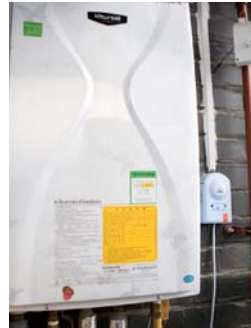
5_ 난방시설

(1) 보일러

보일러 시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연탄을 사용하는 연탄보일러, 기름을 사용하는 기름보일러,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보일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도시가스보일러가 있다. 연탄보일러는 가격은 싸지만 연탄을 시간에 맞춰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기름보일러와 LPG 가스보일러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름과 LPG가스가 떨어지면 그때마다 주문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가장 좋은 것은 도시가스보일러다. 도시가스는 파이프를 통해 늘 공급되고, 취사와 난방에 모두 쓸 수 있다. 가격도 싸다.

방을 얻을 때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도시가스가 설치된 방은 월세가 더 비싸지만 난방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으므로 더 이득이다.



(2) 전기난로 · 전기장판

전기난로와 전기장판도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무척 많이 나오므로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가스난로

실내 난방용으로 많이 쓰지만 잠잘 때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가스난로를 켜 놓고 자다가 산소부족으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자주 환기시키는 것을 잊지 말자.

6_ 전화, 유선방송, 인터넷 사용

(1) 일반전화

설치 신청을 받는 전화국 안내번호는 전국 어디에서나 100번이다. 수화기를 들고 100을 누르면 그 지역의 안내센터로 연결된다. 처음엔 한국어로 안내음성이 나오고, 잠시 후엔 영어로 다시 안내음성이 나온다. 그러므로 한국어나 영어를 잘 한다면 전화국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요금은 매달 통장에서 자동으로 출금되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게 편리하다. 그러면 매달 은행에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고장 신고를 비롯한 각종 문의 역시 ☎100번으로 하면 된다.

(2) 핸드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할부로 핸드폰을 살 수 없으며 현금 일시불 구매만 가능하다. 또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명의로 핸드폰 전화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그런 경우 '카드폰'이라고 불리는 선불식 핸드폰을 주로 사용한다. 돈이 충전되어 있는 카드를 미리 사서 핸드폰에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그 액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일반 핸드폰과 달리 가입비나 기본요금이 없지만 통화요금은 약간 비싼 편이다.

카드폰을 계속 사용하려면 1달에 최소 10,000원을 충전해야 하며, 통화요금이 10,000원 보다 적더라도 다음달에 그 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핸드폰 신제품 가격은 약 300,000원~600,000원이며, 중고품은 30,000원~200,000원이다. 카드는 핸드폰 매장에서 판매하며,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공장 주변의 매점이나 외국인 식품점 등에서도 살 수 있다.

**알아두세요!****광고전화/광고메세지**

핸드폰을 이용하다 보면 광고전화나 광고메세지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그냥 무시하는 게 좋다. 호기심에 전화를 했다가 예상치 못한 요금을 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광고나 성인용 메시지에 무심코 응답했다가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알아두세요!****지역번호**

한국 내 지역번호는 총16개로 나뉜다. 같은 지역 안에서는 전화번호만 누르면 되지만, 다른 지역으로 전화할 때는 지역번호를 먼저 누른 뒤 전화번호를 눌러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서울로 전화를 걸 때는 전화번호만 누르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화를 걸 때는 부산의 지역번호인 051을 누른 뒤 전화번호를 누른다.

시외전화 지역번호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지역	번호
서울	02	인천	032	강원	033	경남	055
부산	051	광주	062	충북	043	전북	063
대구	053	대전	042	충남	041	전남	061
울산	052	경기	031	경북	054	제주	064

(3) 공중전화

공중전화를 사용하려면 동전이나 카드가 필요하다. 시내 통화요금은 3분당 70원이고 시외통화는 43초당 70원이다.



공중전화(카드전화)



공중전화(C카드 및 동전이용)

(4) 긴급전화와 수신자부담통화

모든 공중전화에는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빨간 버튼이 있다. 카드나 동전이 없어도 버튼만 누르면 범죄신고나 화재신고를 할 수 있고,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 음은 반드시 외워둬야 할 긴급번호들이다.



• 범죄신고 : 긴급버튼+112

• 화재신고 : 긴급버튼+119

동전이나 카드가 없을 때는 수신자부담통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요금이 상대방에게 청구되며, 가격은 일반 통화요금보다 약간 비싸다. 이용 방법은 '**긴급버튼 + 1541 + 전화번호 + #**'이다.



(5) 국제전화

국제전화는 인터넷이나 외국인을 위한 상점, 일부 편의점 등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렴하다.



사용방법

주접속번호 입력 → 카드번호 입력 → 국가번호 + 지역번호 + 상대방전화번호 입력

국가	국가번호	국가	국가번호	국가	국가번호	국가	국가번호
아르헨티나	54	홍콩	852	말레이시아	60	싱가포르	65
방글라데시	880	인도	91	멕시코	52	스리랑카	94
브라질	55	인도네시아	62	미얀마	95	수단	249
몽골	976	이란	98	네팔	977	태국	66
중국	86	이라크	964	나이지리아	234	베트남	84
콜롬비아	57	시리아	963	파키스탄	92	일본	81
이집트	20	터키	90	페루	51	앙골라	244
카자흐스탄	7	러시아	7	필리핀	63	칠레	56



알아두세요!

국제전화의 올바른 사용

국제전화는 국가간을 연결하는 통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일반 국내통화료보다 훨씬 비싸다.

국제전화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 할인시간대에 사용하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나라별, 통신사별로 요금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인터넷전화나 국제전화카드를 이용해서 저렴한 방법으로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6) 유선방송 및 인터넷

한국에는 공중파 방송(KBS, MBC, SBS) 외에도 케이블TV, 지역 유선방송, 위성방송(Sky Life) 등 다양한 종류의 방송채널들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PTV도 보급되어 있다. 지역 유선방송 및 IPTV 회사들 중엔 초고속인터넷 회선을 함께 제공하는 곳들이 있는데, 유선방송과 인터넷을 함께 신청하면 다른 업체들보다 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인터넷만 사용하려면 각 통신업체들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므로 자세히 비교해 본 뒤 신청하는 게 좋다. 집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면 필요할 때마다 PC방에 가서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PC방은 24시간 운영되며, 요금은 1시간에 1,000원~1,500원 정도이다.

7_ 생활쓰레기 처리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류별(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로 지정된 봉투에 넣어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한다. 쓰레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함부로 버리면 수거해가지 않으며, 심할 경우 벌금까지 내야 한다.

(1) 일반쓰레기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알아두세요!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는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할인마트에서 살 수 있다.

동네마다 일반 쓰레기를 담는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봉투 색깔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한 뒤에 사도록 한다.

일반 쓰레기봉투는 용량에 따라 5, 10, 20, 30, 50, 75, 100리터용이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10리터나 20리터짜리 봉투가 적당하다.

음식물 쓰레기는 자주 버려야 하므로 2~5리터 정도의 작은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역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 담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웃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쓰레기봉투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 없다.



(2)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빼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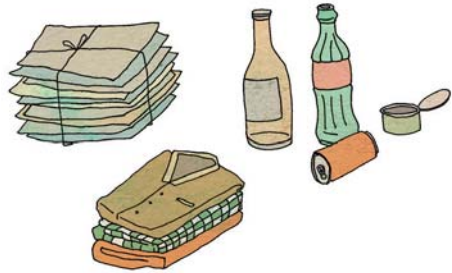
버리거나, 물기를 빼서

음식물수거통에 넣는다.



(3) 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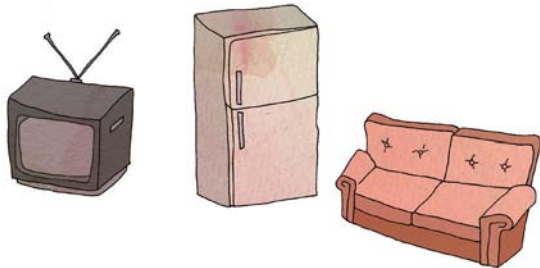
재활용이 되는 물건들은 종이류,
유리병, 캔, 플라스틱, 의류 등이다.
음료수 병이나 캔 등은 물기를
모두 말린 후 부피를 줄여서 내놓는다.

**(4) 타지 않는 쓰레기**

도자기나 사기 그릇, 신발 등
타지 않는 쓰레기도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5) 대형쓰레기**

못쓰게 된 가구나 전자제품처럼 부피가 큰 쓰레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티커를 사
다 붙여서 집 앞에 내놓는다. 스티커 가격은 물건의 종류와 부피에 따라 다르다. 지
역에 따라 스티커를 지정판매소(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4» 소비경제생활

1_가계

(1) 가계

가계란 한 집안 살림의 수입(들어오는 돈)과 지출(나가는 돈)의 상태를 말한다. 적은 수입이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계가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

(2) 화폐가치

한국의 화폐는 동전(1원, 10원, 50원, 100원, 500원)이 있으며, 지폐로는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이 있다.

이외에도 100,000원 이상의 다양한 금액의 수표를 사용할 수 있다.

• 동전



• 지폐





10,000원



50,000원



100,000원권 수표

※ 100,000원권 자기앞수표가 현금처럼 널리 쓰인다.
(수표를 사용하려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표 뒤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한국 화폐인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출신국 화폐와의 가치비교와 한국의 물가 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알아두세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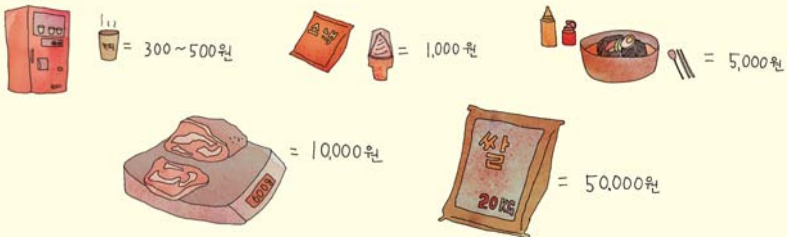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려면 300원에서 500원 정도가 필요하다.

1,000원으로는 일반 가게에서 과자 한 봉지나 아이스크림 한 개를 살 수 있다.

5,000원으로는 일반 식당에서 백반, 비빔밥, 냉면 등의 식사를 할 수 있으며,

10,000원으로는 돼지고기 한 근(600g) 정도를 구입할 수 있다.

50,000원은 쌀 한 포대(20kg)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다.



2_ 물건구입과 사용

계획없이 쇼핑을 하면, 불필요한 물건까지 사게 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 가계운영에 어려움 생기므로 쇼핑 전에 꼭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1) 목록작성

물건을 사기 전에는 무엇을 살지 미리 적어본다.

(2) 물건구입 장소

어디에서 얼마나 살 것인지 정한다.



편의점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로서 식료품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 매장이 작아 물건을 찾기 쉬우므로 한두가지 물건을 급하게 사야할 때 편리하다.



재래시장(5일장)

식품, 의류, 잡화(생활용품) 등 여러가지 물건이 모여 있는 재래시장은 대체로 물건 값이 싸고, 사는 양과 가격을 흥정할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한국의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다.



동네 슈퍼마켓

주로 과자, 야채, 고기, 음료 등 식료품 위주로 판매하며, 집 근처(동네)에 있어서 저렴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체로 원래 가격 보다 조금(10% 내외)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백화점

의류, 식품, 가전, 화장품, 보석 등 상품의 종류가 매우 많으며, 시설과 서비스가 좋고 품질도 우수한 편이라 가격도 비싸다. 할인행사가 자주 있으므로 기다렸다가 이 기간에 이용하면 유리하다.



대형할인점

백화점처럼 식품, 의류, 가전,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상품의 품질도 좋은 편이며 시설과 서비스도 좋은 편이다



TV 홈쇼핑

텔레비전에서 상품 광고를 보고 즉시 전화로 주문할 수 있으며, 의류, 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편리하지만 필요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을 주문할 수 있고,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가 매우 많다. 그러나 간혹 컴퓨터상의 화면과 실제 상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자신의 신용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부담이 있다.

(3) 지불방식

지불방식에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상품권 등이 있다.



신용카드



상품권

(4) 물건구입

상품끼리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고, 음식물의 경우 유통기한도 확인한다.

물건 값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구입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챙겨두고, 교환이나 환불할 때에는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5) 물건사용 전

- 품질보관에서 보관 : 한 곳에 모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 사용설명서 읽기 :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 주의사항과 보관방법 확인 : 신체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의사항과 보관방법은 반드시 확인한다.



(6) 반품, 환불 시 주의할 점

- 물건을 사용하거나 손상시키지 말고 잘 보관한다.
- 7일~14일 이내에 반품, 환불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게 가족이나 이웃에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 반품·환불이 어렵거나 기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소비자원 : 02-3460-3000, www.kca.go.kr

소비자시민모임 : 02-739-5441, www.cacpk.org

3_저축과 은행이용



(1) 저축의 필요성

재산 형성, 예상치 못한 재난대비, 노후대비, 내집마련, 자녀 등록금 등 목돈마련 등을 위해 저축을 해야 한다. 저축을 위해서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2) 저축의 종류

- 보통예금 : 언제나 자유롭게 돈을 예금했다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 이자율이 낮다.
- 정기예금 : 목돈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찾지 않고 은행에 맡겨 두는 예금. 이자율이 높다.
- 정기적금 :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어 정해진 기간이 끝난 후 목돈이 되는 예금. 이자율이 높다.
- 자유저축예금 : 가계 저축을 우대하기 위한 신종 예금. 장기예금시 이자율이 높다.

(3) 은행이용

• 은행계좌개설방법 (통장 만드는 법)

– 준비물 :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도장, 저축할 돈)

– 순서

① 번호표를 뽑고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기다린다.

② 전광판에 자기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로 간다.

③ 은행직원에게 용건(통장개설, 송금, 입금 등)을 말한다.

(현금카드가 필요하면 함께 신청한다)

※ 현금카드 : 통장과 도장 없이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 출금할 수 있는 카드

④ 은행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⑤ 통장이 만들어지면 신분증과 함께 잘 챙겨온다.

※ 비밀번호는 자신만 알고 있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말자

• 은행이용시간

– 월요일~금요일 : 09:00~16:00

– 업무시간 외 : 각 은행의 365일 코너

현금자동인출기(ATM) 이용

• 입금과 출금, 현금자동 인출

– 입금신청서나 출금신청서를 작성해서 창구로 가면 된다. 입금은 비밀번호가 필요 없지만, 출금은 비밀번호, 사인(도장)이 필요하다.

– 현금자동인출기(ATM)로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입금, 출금을 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3번 연속 틀리면 입금, 출금을 할 수 없다. 은행 업무시간 외에 이용하거나,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인터넷뱅킹

- 인터넷뱅킹은 인터넷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자기 계좌의 잔액조회, 입금과 출금, 송금이 모두 가능하다.
- 금융결제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PC에 저장해 두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하는 송금용 보안카드(secret card)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은행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



알아두세요!

텔레뱅킹

전화를 통해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다.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비밀번호와 코드표가 필요하다.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하면 편리하다.

• 공과금 납부

- 직접 납부

청구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한다. 요즘에는 창구에서 공과금 수납 업무를 하지 않는 은행이 많다. 이런 경우엔 은행 내에 설치된 자동납부 기계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납부 기계를 이용하려면 해당 은행과 거래하는 통장이 있어야 한다.

만약 통장이 없다면 우체국에 가서 내면 된다. 우체국은 공과금을 받는다.

- 자동이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공과금이 자동으로 인출되도록 지정하는 방식이다. 은행에 가서 신청해도 되고 공과금 청구기관에 전화로 신청해도 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뒤에는 공과금이 인출되는 날짜를 잘 기억해서 잔액을 충분히 남겨놓아야 한다.

• 송금

- 가족 이름으로 본국에 은행계좌를 만든다.
- 받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은행이름, 계좌번호, 송금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외환창구로 찾아가다. 그 다음은 은행 직원이 알아서 해준다.
- 송금하고 받은 영수증은 잘 보관한다.



알아두세요!

가장 안전한 송금방법

가장 안전하게 송금하는 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과 같은 공식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실 송금조직(브로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것이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송금업자가 중간에 돈을 가로채고 사라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송금조직(브로커)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5» 교통수단

1_버스

버스에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가 있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 할 때는 승차권을 미리 구입해야 한다. 버스에 타기 전에 출발시간과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시내버스

• 시내버스 이용방법

- 버스요금은 탈 때 현금을 지불하거나 교통카드를 사용한다.
- 교통카드는 정류장 주변의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교통요금은 1천원에서 9만원까지 천원 단위로 현금을 충전할 수 있다.
-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요금이 할인된다. 또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 탈 때 환승 요금이 적용되어 비용이 저렴해진다.

• 시내버스 요금 및 특징

구분	요금	특징
일반 시내버스	1,000원	모든 정류장 정차
좌석 시내버스	1,500~1,700원	주요 정류장 정차
마을버스	600~800원	가까운 지역 순환

※ 이용방법 및 요금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각 지역 시·구청의 교통정보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알아두세요!

서울의 시내버스



청색버스 : 중앙버스차선을 이용하여
교외 지역에서 서울 시내를 돈다.



녹색버스 : 서울 시내의 주요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을 연결하며 운행한다.



적색버스 : 서울 도심과 위성 도시 통근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한 특급 버스이다.



황색버스 : 서울 시내를 돌며 주요 철도역뿐 아니라
상업, 관광과 쇼핑 지역에 정차한다.

(2)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 시외버스 · 고속버스 이용방법

-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며, 비교적 거리가 먼 지역의 도시를 방문할 때 이용한다.
- 시외버스는 여러 도시를 방문하므로, 소요시간이 고속버스에 비하여 긴 편이다.
- 고속버스는 한 도시만을 방문하며, 일반고속버스와 우등고속버스가 있다. 우등고속버스는 좌석간의 거리가 넓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일반고속버스보다 요금이 다소 비싸다.

• 주요 도시 버스터미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탈 때는 각 지역마다 있는 버스터미널에 가야 한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www.kobus.co.kr)나 전국시외버스안내(www.gbus.co.kr)에서 운행정보, 승차권 예약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터미널 이름	전화번호	터미널 이름	전화번호
서울 고속터미널	1688-4700	울산 버스터미널	052-268-1556
동서울 종합터미널	1688-5979	강릉 버스터미널	033-647-3181
서울 남부터미널	02-521-8550	속초 버스터미널	033-631-3181
수원 버스터미널	1688-5455	춘천 버스터미널	033-256-1571
인천 버스터미널	032-430-7114	청주 버스터미널	1688-4321
안산 버스터미널	031-403-8251	목포 버스터미널	061-276-0221
의정부 버스터미널	1688-0314	전주 버스터미널	063-277-1572
대전 서부터미널	042-584-1616	광주 버스터미널	062-360-8114
천안 버스터미널	041-551-4933	여수 버스터미널	061-652-1877
대구 동부터미널	053-759-6162	부산 고속터미널	051-508-9200
대구 서부터미널	053-656-2824	마산 버스터미널	055-256-1621



알아두세요!

환승제

지하철과 전철이 다니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버스를 갈아타거나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야 할 때, 요금을 거리에 따라 지불하게 되는 할인제도이다.

예를 들어 환승제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내고 버스를 갈아타면, 버스를 탈 때마다 1,000원을 내게 된다. 그러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환승제를 적용하면,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더라도 총 거리 10km 이내에서는 돈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5km마다 추가요금 100원을 내면 된다. 지역에 따라 요금 할인 방식에 차이가 있다.

2_지하철



서울, 부산, 대구, 광주와 인천에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

서울에는 아홉 개의 지하철과 국영 한국 철도(KNR)가 운영되고 있다. 노선별로 상이한 색상의 서울 지하철은 서울의 가장 번두리와 위성 도시 그리고 모든 곳을 가로지르는 많은 환승역이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은 아침, 저녁 교통 체증 시간에는 2.5 ~ 3분 간격이고 그 외 시간에는 4~6분 간격이다.

(1) 승차권과 요금

승객 유형	요금(교통카드 사용시)
성인 (20세 이상)	기본운임 : 10km까지 900원
학생 (14세에서 19세까지)	교통카드 : 20% 할인 (기본운임 720원)
어린이 (8세~13세)	교통카드 : 50%할인 (기본운임 450원) 1회권 일반운임의 50%(500원)
고령자,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100% 할인 (무료)

(2) 이용방법

- 1회 기본구간일 경우 1,000원이며,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 부과된다.
- 운행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운행한다.
- 지하철 노선도는 지하철역 곳곳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휴대가 편리한 포켓용 노선도는 각 지하철역 매표소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다.
- 지하철이 운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바꿔 탈 경우, 환승요금제가 적용되어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되는 방식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금이 다를 수 있다.
- 요금은 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나, 할인이나 환승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교통카드에는 항상 1회 이용요금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 잔액이 부족한 경우, 버스정류장의 매표소나 전철 또는 지하철 매표소에서 원하는 현금을 내고 충전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무인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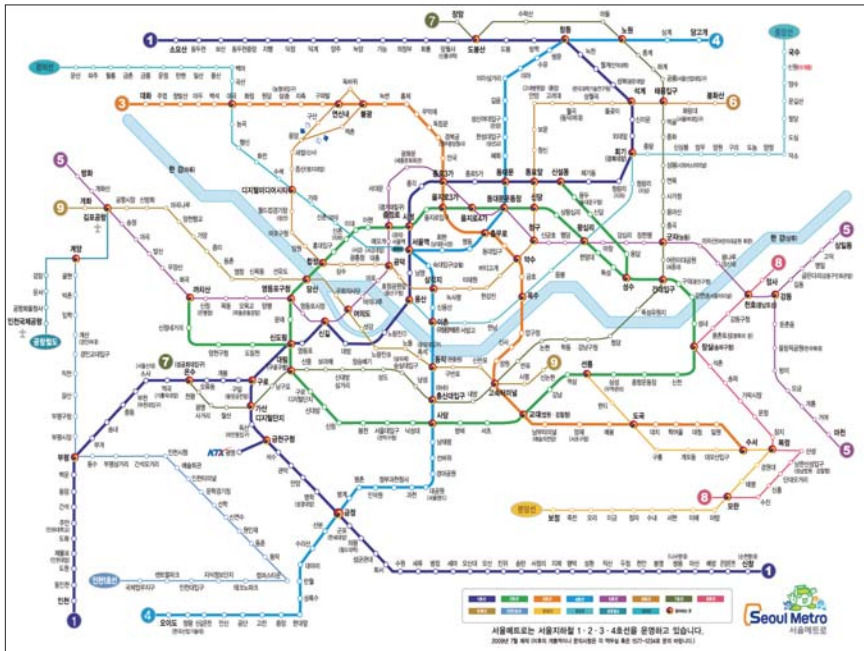
- ① 교통카드 충전, 1회용 승차권 발급, 무임승차권 중 원하는 서비스를 고른다.
- ② 행선지 선택버튼(운임)을 누른다.
- ③ 2매 이상 구매 시 매수를 누른다.
- ④ 돈을 넣는다.
- ⑤ 승차권과 거스름돈을 받는다.



※ 1회용 승차권 구입시 운임과 별도로 보증금(500원)이 필요하며, 보증금은 하차 후 보증금 환급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3) 지하철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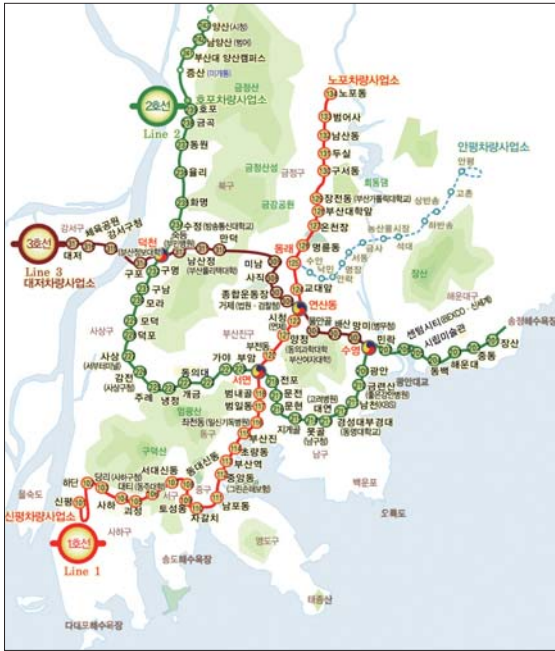
첫차나 막차시간, 역정보, 운행시간표, 빠른 경로 찾기 등의 정보는 아래 각 지역별 지하철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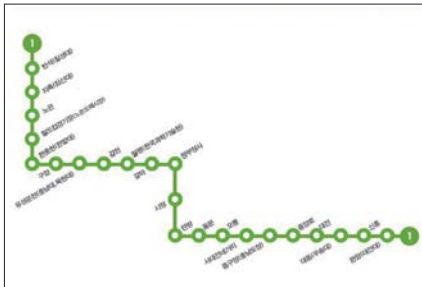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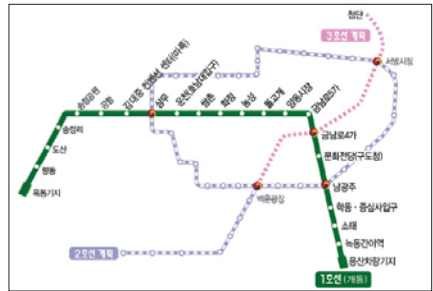
서울

서울메트로 www.seoulmetro.co.kr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www.smrt.co.kr



부산

부산교통공사 www.humetro.busan.kr

대구

대구도시철도공사 www.dtro.or.kr

광주

광주도시철도공사 www.gwangjusebway.co.kr

대전

대전도시철도공사 www.djet.co.kr

3_택시

택시는 24시간 운행한다. 자동차 위에 다양한 색상의 표시등을 달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과 쉽게 구분된다. 택시를 타려면 택시정류장에서 기다리거나 도로변에서 손짓을 하여 지나가는 택시를 부르면 된다. 전화로 호출하는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택시요금 외에 별도의 수수료(통상 1,000원)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한국에는 각 지역마다 여러 콜택시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 일반택시

3~4명까지 탈 수 있고, 요금미터기가 있다. 기본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2,000원~3,000원 정도이다. 00:00~04:00까지는 심야 할증요

금이 적용되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갈 때도 할증요금이 붙는다. 가령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수원시로 이동하면, 미터기 요금의 20%를 추가로 내야 한다.



(2) 모범택시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승용차로 영업하는 택시이다. 대부분 검은색이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기본요금이 4,500원(3km)으로 일반택시보다 훨씬 비싸다. 대신 야간탑승이나 장거리 이동시에도 요금이 할증되지 않는다.



(3) 대형택시(콜밴 포함)

최대 9명까지 탈 수 있는 큰 택시로, 짐이 많거나 일행이 많을 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모든 차량에 호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전화를 걸면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은 모범택시와 같은 4,500원이지만 기사와 승객의 흥정을 통해 요금이 결정되기도 한다.



4_자가용

일반 가정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차를 자가용이라고 한다.

자가용의 종류에는 크기가 작은 경차부터 매우 다양한 차종이 있으며, 가격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다.

* 운전면허취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찰서와 같이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를 위해 무료로 운전면허취득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경찰서에 문의해보자.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 교통안전교육장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한다.

② 신체검사

③ 학과접수

필요한 서류	수수료
응시원서(사진 3매), 컴퓨터용 싸인펜, 주민등록증(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 1, 2종 보통 6,000원 • 원동기 4,000원 • 2종 소형 6,000원

④ 학과시험

4지선다형으로 40문제 시험을 본다.

⑤ 기능접수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기능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한다.

필요한 서류	수수료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 (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 1, 2종 보통 15,000원 • 1종 대형 · 특수 15,000원 • 원동기 5,000원 • 2종 소형 6,000원

⑥ 기능시험

운전학원 내에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다양한 코스를 통과하는 시험을 받는다.

* 최초 1종보통, 2종보통 기능시험 전에 기능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한다.

⑦ 연습면허발급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운전면허가 나온다.

⑧ 주행연습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는 연습면허 취득 후 반드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동승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을 받는다.

⑨ 도로주행접수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10시간이상 도로주행 연습을 이수하면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는다.

⑩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 시험을 본다.

⑪ 운전면허증발급

도로주행시험에서 합격하면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면허증이 발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dla.go.kr> ☎1577-1120

5_기차

기차는 항공기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다.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는 기차역이 있으며, 버스 및 지하철과 연결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속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순으로 속도가 빠르고 요금이 비싸다.



(1) 한국고속철도(KTX)

KTX 승차권은 역의 매표소, 여행사, 자동 승차권 판매기 또는 인터넷 (www.korail.com)을 통하여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예약과 발권은 아침 9시부터 가능하며 승차하려는 열차의 출발 2달 이전부터 1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예약한 사람과 승차하려는 사람이 다른 경우는 예약한 사람이 승차권의 지불 책임이 있다.



알아두세요!

고속철도(KTX)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영하고 있다

- 경부선 : 서울 - 용산 - 광명 - 천안 · 아산 - 대전 - 동대구 - 밀양 - 구포 - 부산
- 호남선 : 서울 - 용산 - 광명 - 천안 · 아산 - 서대전 - 논산 - 익산 - 김제 - 정읍 - 장성(광주) - 송정리 - 나주 - 목포
- 안내전화 ☎1544-7788

(2) 새마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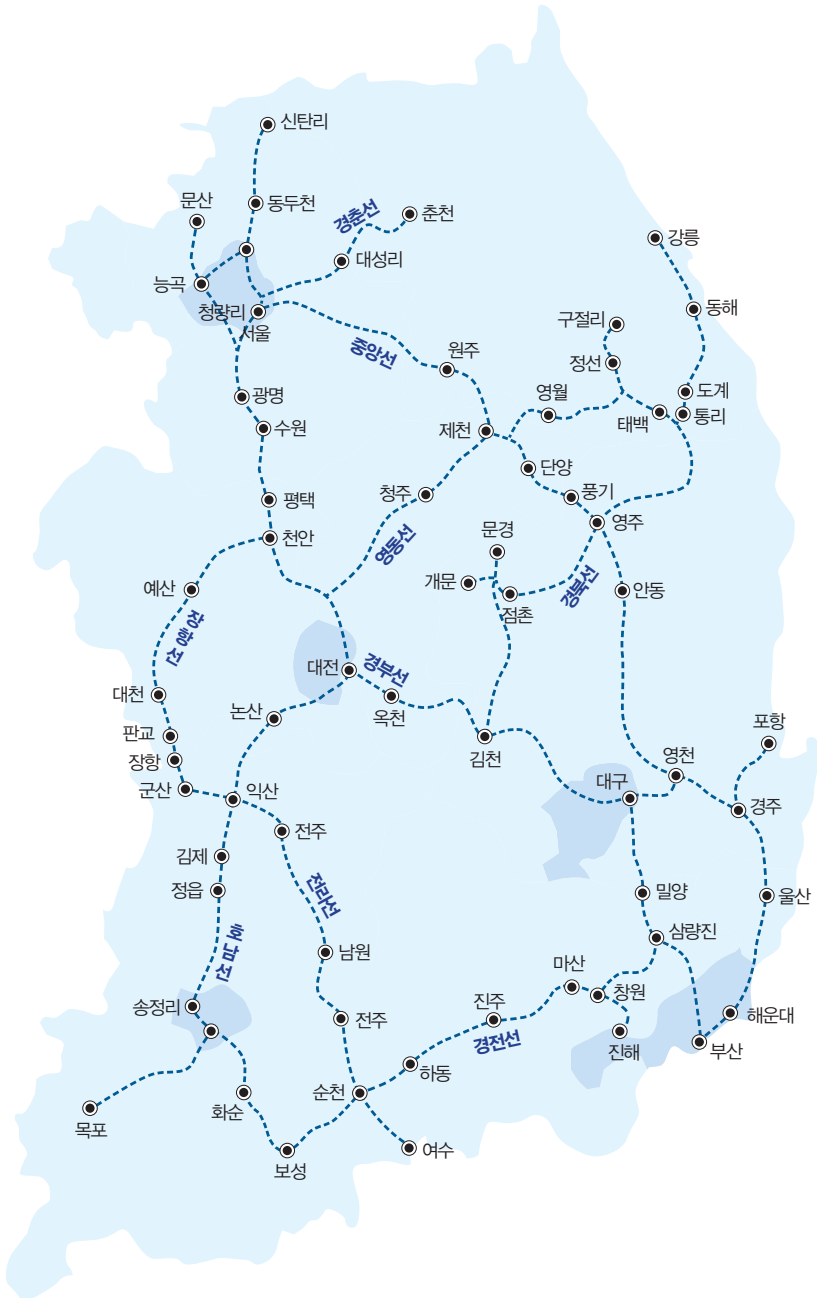
무궁화호와 비교할 때 객차 시설이 좋고, 정차하는 역의 수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다르다. 승차권 예매는 역의 매표소, 여행사, 자동 승차권 판매기 또는 인터넷(www.korail.com)을 통하여 할 수 있다.

(3) 무궁화호

한국철도공사의 거의 모든 노선에서 운행된다. 모든 열차가 각 역에 정차하는 것은 아니며, 주요 노선에서는 열차마다 정차역을 달리하는 선택정차를 해 소요 시간을 줄이면서 최대한 많은 역에 정차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4) 주요 철도노선

- 경복선 : 영주-예천-점촌-상주-김천
- 경원선 : 신탄리-연천-한탄강-소요산-의정부-용산
- 경의선 : 도라산-문산-일산-서울
- 경전선 : 삼랑진-창원-마산-진주-하동-순천-별교-보성-화순-광주-송정리
- 경춘선 : 성북-마석-청평-강촌-춘천
- 동해남부선 : 포항-경주-울산-해운대-부산진
- 영동선 : 영주-봉화-분천-승부-통리-도계-동해-정동진-강릉
- 장항선 : 장항-서천-웅천-대천-광천-홍성-예산-온양온천-천안
- 전라선 : 익산-전주-죽리온천-남원-곡성-구례구-순천-덕양-여수
- 중앙선 : 청량리-팔당 · 능내-양평 · 용문-원주-봉양-제천-단양-풍기-영주-안동-의성-영천-경주
- 충북선 : 봉양-충주-청주-조치원
- 태백선 : 제천-영월-증산-고한 · 추전 · 태백-백산
- 호남선 : 대전-서대전-논산-익산-김제-정읍-장성(광주)-송정리-나주-목포



6_항공

비교적 장거리를 이동할 때 항공편을 이용하면 시간이 단축된다. 그러나 비용이 다른 교통편에 비해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가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서울/인천-부산, 서울/인천-제주, 서울/인천-대구, 서울-울산, 서울-광주, 서울-진해, 서울-강릉 등을 운항한다. 단 제주항공과 진에어, 이스타항공은 일부 노선만 운항하고 있다. 항공티켓은 공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항공사나 여행사에서도 예매할 수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제공항

공항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	1577-2600	www.airport.kr
김포국제공항	02-2660-2114	www.airport.co.kr/doc/gimpo
제주국제공항	064-797-2114	www.airport.co.kr/doc/jeju
김해국제공항	051-974-3114	www.airport.co.kr/doc/gimhae
청주국제공항	043-210-6114	www.airport.co.kr/doc/cheongju
대구국제공항	053-980-5290	www.airport.co.kr/doc/daegu
양양국제공항	033-670-7114	www.airport.co.kr/doc/yangyang
무안국제공항	061-455-2114	www.airport.co.kr/doc/muan
광주국제공항	062-940-0214	www.airport.co.kr/doc/gwangju

국내공항

공항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군산공항	063-469-8345	www.airport.co.kr/doc/gunsan
여수공항	061-689-6300	www.airport.co.kr/doc/yeosu
포항공항	054-289-7399	www.airport.co.kr/doc/pohang
울산공항	052-288-7011	www.airport.co.kr/doc/ulsan
원주공항	033-344-3311	www.airport.co.kr/doc/wonju
사천공항	055-831-9300	www.airport.co.kr/doc/sacheon

주요 해외항공사 연락처

나라명	항공사명	전화번호
중국	국제항공	02-774-6886
중국	남방항공	02-775-9070
중국	동방항공	02-778-0375
인도네시아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02-773-2092/4
태국	타이항공	02-3707-0114
몽골	몽골항공	02-756-9760/1
필리핀	필리핀항공	02-774-3581
베트남	베트남항공	02-757-8920
네팔	로알네팔항공	02-756-2161

6» 공공기관 이용

1_행정기관

일상생활을 하면서 찾게 되는
행정기관으로는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이 있다.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서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 공공시설의
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신고 등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수행한다.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는 문화강좌 등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행정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주요 지하철역의 무인
민원발급기나 인터넷(www.egov.go.kr)을 통해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중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에는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2_경찰서(☎112)

사기나 폭행, 강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이를 목격한 때에는
112로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공중전화에서는 빨간색 긴급통화버튼을 누른 후에 112로
누르면 되고, 일반전화나 휴대폰에서는 국번없이 112로
걸면 된다.



범죄 피해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자의 주소, 이름, 연락처와 함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침착하게 설명하고, 범인의 인상착의나 특징, 도망친 방향과 어떻게
도망쳤는지를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

3_소방서 (☎119)

불이 나거나 누군가를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때,
또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면 된다.



공중전화에서는 빨간색 긴급통화버튼을 누른 후에

119를 누르면 되고, 일반전화나 휴대폰에서는 국번없이 119로 걸면 된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집의 위치와 층수, 종류와 함께 주변의 주요건물을 설명하고, 빨리 누군가를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경우에는 아픈 사람에 대한 기본정보를 정확히 알려주고,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상담원과 연락을 지속하며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4_우체국

편지나 소포를 보낼 때에는 집 근처의 우체국을
이용하면 된다. 우체국에서는 국내우편,



국제우편 업무를 모두 취급하며,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역할도 한다. 국제우편 용무가 있을 때는 외국으로 빠르게 우편물을 보내는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할 수 있다.

우편서비스는 ☎1588-1300, 금융서비스 ☎1588-1900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 국내 우편서비스

우체국택배는 보통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 배달한다. 섬 지역이나 산간 지역은 우편물이 도착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요금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기준을 초과하는 중량이나 크기의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초과한 요건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한다.

(2) 국제 특급 우편

편지나 서류, 상품 등을 전 세계 130여 개 국가로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서 최고 30kg까지 보낼 수 있다. 취급 품목은 편지나 서류, 신용장, 서적, 금융기관의 교환수표, 상품 견본,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각종 물품 등이다. 호주, 필리핀,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는 취급 중량을 20kg 이하로 제한하기도 한다. 또 나라에 따라 취급을 금지하는 품목도 있으므로 사전에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5_도서관

도서관은 서적이나 시청각 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보관하여 지역주민의 학습이나 교양, 평생교육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대부분의 시·군·구 지역에는 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에서는 무료로 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은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알아두세요!

국립중앙도서관

- 이용시간 : 자료실 : 월~일요일 09:00~18:00
(야간 도서관 18:00~22:00)
- 휴관일 :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필기도구를 제외한 개인 휴대품은 보관함에 넣고 입관
- 이용자 등록(홈페이지) >이용증 신청 >이용증 발급 >입관 >자료실 이용 >자료이용종료 >퇴관
- 찾아가는 길 :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출구 도보 15분, 7·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5번출구 도보 10분



7» 편의시설 이용

1_이발소

이발소에서는 남성에게 이발, 면도 등을 해준다. 요금은 서비스 이용 내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5,000원~10,000원 정도며, 대도시 중심가에 있는 이발소는 그보다 조금 비싸다.

2_미용실

미용실은 원래 여성용 공간이었지만 요즘엔 남성들도 많이 이용한다. 파마, 커트, 염색, 손톱손질,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서비스 이용에 따라 다른데, 단순 커트일 경우 대개 8,000원 정도이며, 파마는 20,000원에서 100,000원 이상까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3_목욕시설

한국의 대중목욕시설은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등으로 나뉜다.

- 목욕탕 : 욕조와 샤워시설이 있다. 요금은 4,000원~6,000원 정도이다.
- 사우나 : 욕조와 샤워시설, 휴식공간이 있다. 요금은 5,000원~7,000원 정도이다.
- 찜질방 : 욕조와 샤워시설, 휴식공간, 수면실이 있다. 욕탕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남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7,000원~12,000원 정도이다.

- 사우나와 찜질방 입장료엔 휴게실, 수면실, 운동기구 등 내부 시설들의 이용료가 포함되어있다. 음식구입, 이·미용 서비스, 마사지를 이용할 때는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한다.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면 때를 밀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 목욕시설 대형 욕조의 수온은 43~45℃이며, 찜질방의 실내 온도는 40~70℃다. 무료로 이용하는 건식 사우나 공간은 70~100℃, 한증막은 70~130℃다. 적당한 시간 동안 체질에 맞게 잘 이용하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한편 스트레스 해소와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알아두세요!

한국의 목욕 문화

한국은 목욕 문화가 유난히 발달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1~2주에 한 번씩 대중목욕시설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때를 벗겨 낸다.

목욕할 때는 모든 옷을 벗고 목욕한다. 한국에서 함께 목욕을 하러 가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사이라는 걸 뜻한다. 친하지 않으면 알몸으로 함께 목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가 없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설고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때때로 목욕탕에 간 외국인들이 속옷을 입고 탕 속에 들어가서 한국인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다. 알몸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목욕하는 것이 익숙치 않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



알아두세요!

목욕탕에 가면 안되는 경우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사람도 한증막같이 뜨거운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임신부나 심장병 환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약 30분 간격으로 물을 한 잔씩 마셔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게 좋다. 식수는 대개 무료로 제공되며 청량음료 등도 판매한다.

밤에 술을 많이 마신 뒤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잠을 잔 다음 곧바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찜질방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건강에 몹시 해롭다. 피부질환이나 전염병이 있다면 대중목욕시설에 가서는 안 된다.

대중목욕탕에서 목욕하는 순서

- ①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샤워하고 머리를 감는다.
- ② 뜨거운 물로 채워진 대형 욕조 안에 5~10분 정도 앉아서 땀을 뺀다.
- ③ 욕조에서 나와 손이나 목욕수건으로 몸을 문질러 '때'를 제거한다.
- ④ 각자 취향에 따라 냉수탕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한증막에 들어간다.
- 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샤워한다.

목욕탕에서 지켜야 할 것

속옷을 입은 채로 욕탕 안에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때를 밀지 않는다.

따뜻한 물과 비누가 있다고 해서 빨래를 하지 않는다.



V

임신과 육아

120 임신과 출산

120 임신부가 받아야 할 검사

120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해 주의할 점

122 임신부를 위한 보건소 서비스

124 출산

125 영유아 건강관리

125 아이의 발달 단계

126 예방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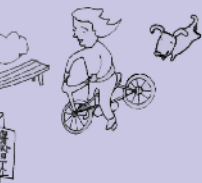
128 보건소 예방접종

129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129 보육 및 유아교육

130 보육료 및 유치원교육비 지원

134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1» 임신과 출산

1_임산부가 받아야 할 검사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상태에 따라 한층 더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받아야 하는 일반적인 검사항목과 검사 내용

혈액검사	일반혈액검사	혈액 안에 있는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의 숫자나 모양을 통해 빈혈 여부나 에이즈, 풍진 등의 질병 여부를 검사한다.
	혈액형검사	ABO혈액형과 Rh인자를 검사한다.
	매독검사	태아사망 및 유산을 초래하는 매독을 검사한다.
	간염검사	간염 여부를 검사한다. 산모가 간염이 있을 때는 신생아도 감염될 위험이 크다.
소변검사		당과 단백질을 검사해 임신중독증이나 당뇨병 등을 진단하고, 요로감염 여부도 검사한다.
초음파검사		자궁 내부를 보면서 태아 성장발육 정도, 태아의 위치나 모양, 기형유무 등을 알 수 있다.

2_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해 주의할 점

• 건강한 엄마에게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엄마가 건강해야 한다.

만약 이미 질병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를 받는다.



- **약물은 함부로 먹지 않는다**

약물은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신 초기는 태아의 손, 발, 심장, 중추신경계 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매우 주의해야 한다. 감기약을 먹을 경우에도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해야 한다.

- **술이나 담배는 절대 금지한다**

술과 담배는 태아 성장을 방해하고 지능저하나 기형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소량이라도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남편 역시 건강한 정자를 갖기 위해서는 술을 금해야 한다.

-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일상적인 식사만 제대로 한다면, 영양제를 따로 복용할 필요는 없다. 영양 섭취에 이상이 없으면 임신 초기 4개월간은 월 1kg, 후반기 6개월은 월 2kg정도로 총 13kg 정도 증가한다. 다만, 철분은 임신 5개월째부터 별도로 보충을 해주어야 한다.

- **무리한 활동은 자제한다**

무리한 중노동이나 높은 곳을 오르는 위험한 작업은 피해야 한다. 일상생활은 계속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는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는다.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산전관리를 통해서 어머니나 아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들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한국의 태교

한국에서는 임신 중 어머니의 마음과 몸가짐이 태아에게 정서적·심리적·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왔다. 건강하고 좋은 자손을 얻기 위하여 임산부가 모든 일에 대해서 조심하고, 나쁜 생각이나 거친 행동을 삼가며, 편안한 마음으로 말이나 행동을 하려는 전통이 있는데 이를 태교라고 한다. 따라서 음식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까지 일일이 금지되는 것이 많다. 한국인 식구들이 태교를 위해 충고할 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3_임산부를 위한 보건소 서비스

여성결혼이민자는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특히 고위험 임신부*는 반드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 고위험 임신부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임신부(20세 미만 및 3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이 있는 경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낳은 적이 있는 임신부를 말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

(1) 무료 산전검사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임신 조기진단 검사, 소변검사(당뇨, 단백질검사),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검사, 간염검사, 혈액형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신부 산전검사는 보건소에 등록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는다.

(2) 출산준비교실 등 교육 실시

- 모유수유교실, 임신부체조교실, 출산준비교실, 아기마사지교실 등을 운영한다.
- 임신·태교·분만 관련 서적 및 CD, 비디오 등을 대여한다.

(3) 철분제 지원

5개월 이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한다.

(4) 임신부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영양이 좋지 않은 임신부와 저소득층 여성결혼이민자와 영유아는 균형 잡힌 영양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영양교육과 필요한 보충식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가구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영유아(6세 이하) • 영양적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을 한 가지 이상 가진 자
지원내용	• 보충영양식품 패키지를 무료로 지원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굴 등 대상자의 영양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품을 제공 • 무료로 영양교육 – 개별상담 및 집단교육, 가정방문교육을 함께 실행 – 최소한 1달에 1번 이상의 만남을 원칙으로 시행 – 바쁜 직장인을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시행
신청방법	• 접수처 : 보건소 • 필요한 서류 – 거주지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이나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 등



일부 보건소에서만 임신부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4_출산

출산은 산부인과를 이용하여 하게 된다. 보건소에서 산전관리를 받았던 임신부라도 출산은 일반 병원에서 해야 한다. 출산 전 준비는 차근차근 해놓아야 출산 시 당황하지 않게 된다. 아기를 낳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가 있다.

(1) 자연분만

- 약물이나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적인 진통이 일어나 질(산도)을 통해 아기를 분만하는 방법을 말한다. 분만을 쉽게 하기 위해 회음부를 절개한다.
- 오랜 시간 경과해도 출산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진통촉진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처음 아기를 낳는 경우는 10시간 이상, 둘째 아이 이상인 경우는 5시간 정도 걸린다.
- 출산과정에서 통증이 심하지만 일단 아기를 낳게 되면, 통증이 사라지는 가장 좋은 분만 방법이다. 또한 입원기간도 2박 3일 정도로 짧으며 비용 역시 저렴하다.

(2) 제왕절개

- 자연분만이 어려울 때는 제왕절개 분만을 해야 한다. 고령출산, 골반이 좁거나 태아가 거꾸로 있는 경우 등, 분만 시 위험한 사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이용한다.
- 제왕절개는 수술을 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분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왕절개 분만을 했을 때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보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도움을 주는 기관에 연락을 하면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기는 신체발육이 왕성하고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걸리기 쉬운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보건소를 통해 영유아 건강관리 및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_아이의 발달 단계

(1) 체중

출생 시 3kg, 6개월에 2배(6kg), 1년에 3배(9kg)

(2) 신장

출생 시 약 50cm, 1년에 1.5배(75cm)

(3) 신체발달

4개월	머리를 가눌 수 있고, 누운 채로 좌우로 몸을 돌릴 수 있음
5개월	몸을 뒤집을 수 있음(복부에서 등으로)
6개월	등에서 복부로 뒤집으며, 엎드린 채 양팔로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음
7개월	도움을 받아 앉음
8개월	도움 없이도 앉음
9개월	기어다님
10개월	가구 잡고 일어남
12개월	가구 잡고 걸어다님



알아두세요!

육아갈등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집안 어른들의 육아방식과 달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갈등은 한국의 가정에서 시부모와 젊은 부부간에 흔히 발생한다. 따라서 시부모님과 대화를 통하여 풀 수 있도록 한다.

- 육아갈등의 예**
- 음식이나 우유는 아이가 원하는 시간에 먹인다 ↔ 시간에 맞추어 먹인다
 - 통통해야 좋으니 많이 먹여야 한다 ↔ 적정량을 먹인다
 - 보채면 업어준다 ↔ 자꾸 업어주면 버릇이 나빠진다
 - 찬 우유를 먹어야 장이 튼튼해진다고 한다 ↔ 너무 찬 음식은 장을 자극한다

2_ 예방접종

예방접종이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성 질환 예방 주사제를 아기에게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 접종은 오전에 시행한다. 그래야만 문제가 생겨도 병원에 다시 가기가 쉽다.
- 육아수첩을 꼭 가지고 간다. 접종 후에는 어떤 예방접종을 했는지 기록을 해야 한다.
- 열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 미리 목욕시킨 다음, 깨끗한 옷을 입혀 데려간다.
- 아기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부모가 직접 데려간다.

(2)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부위를 5분 이상 문질러 주어, 예방약이 골고루 퍼지게 한다.
- 접종한 날은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한다.
- 접종 후 3시간 정도는 아기의 상태를 잘 살펴본다.
- 접종 후 열이 나거나 경련을 하면, 바로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



(3) 예방접종의 종류와 접종 시기 및 횟수

분류	대상 전염병		백신	접종횟수	시기
국 가 필 수 예 방 접 종	결핵		BCG	1회	생후 4주 이내(1회)
	B형간염		HepB	3회	0-1-6개월(3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기초 4회, 추가 1회	2-4-6개월(3회) 추가 : 15~18개월 만4~6세
			Td	추가 1회	추가 : 만11~12세
	소아마비(폴리오)		IPV	기초 3회, 추가 1회	2-4-6개월(3회) 추가 : 만4~6세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기초 1회, 추가 1회	12~15개월(1회) 추가 : 만4~6세
	일본뇌염		JEV (사백신)	기초 3회, 추가 2회	12-24개월(2회) 2차 접종 : 12개월 후 3차 접종 추가 : 만 6세, 12세
	수두		Var	1회	12~15개월(1회)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Flu	6개월~9세 미만 2회, 이후 매년 1회	6개월이상
	장티푸스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경구용	3~4회	6세 이상
주사용			기초 1회, 추가 1회	2세 이상	
신증후군출혈열			3회	0개월	
기 타 예 방 접 수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4회	2-4-6개월, 12~15개월
	A형 간염		HepA	기초1회, 추가1회 (기초접종 후 6~12개월 후)	1~16세
	폐구균폐렴		PCV	1~4회	2, 4, 6개월 추가 : 12~15개월

3_ 보건소 예방접종

보건소에서는 필수예방접종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보건소 방문 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어린이건강수첩)을 지참하면 된다.

•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에 걸린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간염에 걸릴 위험이 높다. B형간염에 걸린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간염예방을 위한 면역글로불린 1회 접종,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및 항원·항체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 정부에서는 'B형간염 예방수첩'을 전국의 산부인과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여기에는 쿠폰이 포함되어 있다.
- 임신부가 B형간염 항원양성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면 이 수첩을 받을 수 있다.
- B형간염 임신부는 신생아에게 접종 시 쿠폰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서비스

기타 서비스로는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발달검사, 치아관리, 시력관리, 아기마사지교실, 이유식교실, 응급처치교실 등과 같은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는 보건소마다 실시여부가 다르므로, 보건소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 영유아건강검진

생후 6개월, 18개월의 유아를 대상으로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한다.

3»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1_보육 및 유아교육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보육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보육시설

- 보육시설은 만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시키는 시설로,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을 쓴다.
- 보육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기관에 따라 시간 연장보육, 24시간 보육을 하기도 한다.
-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 발달을 위한 내용으로 교육한다.
- 월간 보육료는 보육시간 및 아이의 연령, 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보통 17~38만원 사이이다.



(2) 유치원

-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기관이다.
- 교육시간은 보통 오전 9시~오후 2시까지이다. 맞벌이 부모 자녀를 위하여 운영하는 종일제 유치원은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교육하기도 한다.
- 유치원교육 대상인 유아기는 발달특성상 초등학교에서처럼 국어, 수학,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은 교과목 중심의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주로 유아발달 특성과 흥미, 요구 등을 고려하여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통합교육을 통하여 발달을 돕는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교육비는 국·공립유치원은 월 2~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18~25만원 정도이다.

2_보육료 및 유치원교육비 지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만 5세 이하)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 보육시설(만 0~만 5세)이나 유치원(만 3~만 5세)에 다닐 수 있다.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또는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 이하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관이다.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정부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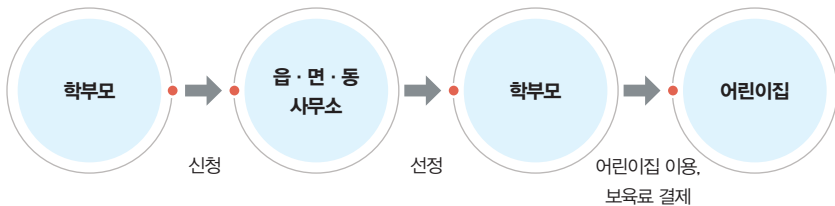
유아가 만 5세 이하이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혜택을 받는다.

- 부모의 월소득인정액(가족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정부가 산정하는 소득)이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소득하위 70%(기준 금액은 정부가 매년 결정)보다 적은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 수준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 장애아(만12세 이하이며 초등학교(특수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아동)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보호자(부모 및 기타 보호자)가 보육료 신청서와 증빙서류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주민자치센터에 제출
- 필요한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아이사랑카드가 발급되며,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매 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된다(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아이사랑카드로 함께 결제).



(2) 유치원교육비 지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는 유치원비를 지원해 준다.

• 지원 대상

유아가 만 5세 이하이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혜택을 받는다.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지원한다.
- 만 5세가 무상교육비는 균등지원하고, 만 3·4세아 차등교육비는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장애아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유치원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 지원 금액

유치원비는 유아의 연령과 유치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①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연령이 만 3~4세인 경우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자녀 중 만 3~4세 아동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교육지원비를 받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저소득모자가정자녀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부모의 자녀는 국공립유치원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②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연령이 만 5세인 경우

-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 유아는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는다.
(법정저소득층과 월평균소득 이하의 기타 저소득층)
- 취학대상 유아 중 취학 유예된 만 5세 유아는 무상교육비를 재지원 할 수 있다.
(취학유예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유아(만 4세)의 경우 만 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③ 자녀 2명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 부모의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라면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모두 ①과 같이 지원받는다.
- 둘째 유아부터는 소득하위 60~70%인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40~50%까지 유아의 유치원비는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지원 방법

- 유치원비 지원은 유아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에 해당되는 유치원비를 직접 입금한다.
- 보호자(부모 및 기타 보호자)가 유치원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보보호자(부모 및 기타 보호자)가 유치원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주민자치센터에 제출
- 필요한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3_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업인으로서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을 경우, 가정육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방법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농지소유면적 합계가 5ha 미만 등의 농어가 중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유아를 둔 경우
- 대상유아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 없이 농어업활동에 실제 종사하는 경우
- 대상유아의 부모 등 양육부담자의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인 농어가



지원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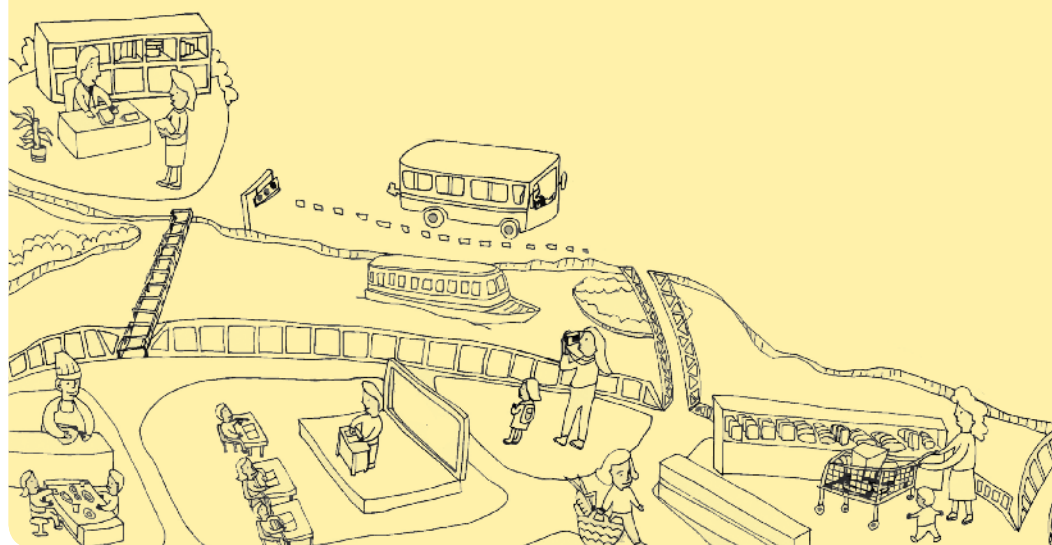
정부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으로부터 직장 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는 유아

•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이 되는 농어업인이 신청서에 이장 또는 통장 및 농지소재지 인근 농어업인 2인의 확인을 받아 읍·면·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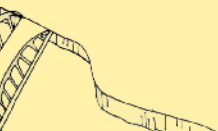




VI

자녀교육

- 138 **한국의 교육제도**
- 138 교육제도 일반
- 138 교육과정 운영
- 139 **초등학교 교육**
- 139 초등학교 입학안내
- 142 입학준비
- 144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 지도
- 149 **중학교 교육**
- 149 교과 과목에 따른 학습 내용
- 150 중학교 재량활동
- 151 중학교 특별활동
- 156 **고등학교 교육**
- 156 고등학교 종류
- 157 학생복지
- 161 **대학교 교육**
- 161 대학의 종류
- 162 장학금



1» 한국의 교육제도

1 교육제도 일반

한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전문대학은 2년)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학비가 무료이다.

2 교육과정 운영

1년을 두 개의 학기로 나누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학기가 끝나면 약 한 달 정도의 여름방학이 있고, 2학기가 끝나면 새 학년이 시작될 때까지 약 두 달 가량의 겨울방학과 학기말방학이 있다. 일반적으로 1학기는 2월말~3월초, 2학기는 8월말~9월초에 시작한다.



알아두세요!

외국인학교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의 자녀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대부분이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있다. 외국인학교는 보통 학비가 일반학교보다 비싸고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입학시험을 거쳐야 하는 학교도 많다.

- 입학요건

일반적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 외국의 시민권자
-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
- 외국의 영주권자
-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외국의 시민인 자녀

- 준비해야 할 서류

일반적으로 지원서와 이전 학교의 성적표, 추천서 등이 필요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각 학교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2» 초등학교 교육



초등학교 과정은 6년이다.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사회, 자연과목), 즐거운 생활(음악, 미술, 체육) 등의 과목을 배운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이다.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1_초등학교 입학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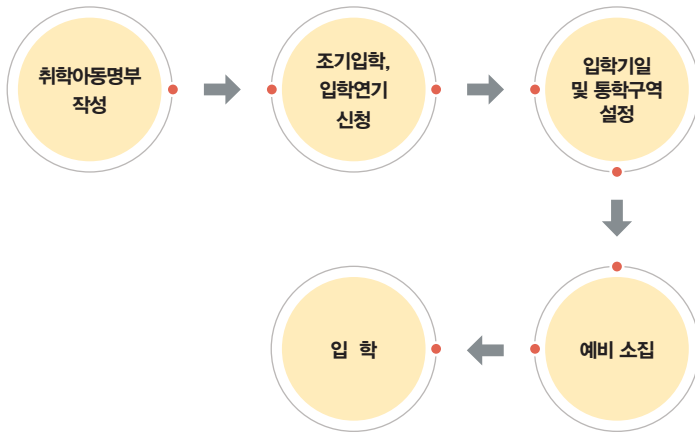
(1) 입학(취학)대상자

-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으로 연령이 만 6세에 도달하는 아동이다.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도 포함한다.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은 제외한다.

※ 201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3. 1. 1 ~ 2003. 12. 31 출생 아동
201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4. 1. 1 ~ 2004. 12. 31 출생 아동

(2) 초등학교 취학 절차

초등학교 입학 절차는 크게 다섯 가지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립초등학교는 교육대학교 또는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를 의미한다. 국립·사립초등학교의 취학절차는 공립학교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국립·사립 초등학교는 공립학교보다 먼저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립·사립학교 진학을 원치 않는 어린이는 공립학교에 진학하면 된다.



국립·사립초등학교의 취학일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야 한다.



(3) 조기입학 · 입학연기 · 추가입학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사람(1년 조기 입학만 가능)만 가능하다.
※ 201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4. 1. 1 ~ 2004. 12. 31 출생아동이 신청할 수 있다.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 201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3. 3. 1 ~ 2003. 12. 31 출생아동으로 2011학년도(2011.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아동이 해당자이다.
-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다.
- 신청 기간 :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추가입학 : 취학 연령이 된 아동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면제 또는 입학이 누락 되었거나, 국외 거주나 재외국민의 자녀로 입학이 누락된 아동의 입학을 말한다.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

- 의무교육대상 아동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 학교장은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된 경우 미취학아동의 입학을 허락하고 있다.

2_ 입학준비

어린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일은 어린이에게 있어 매우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부모님은 어린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미리 격려하고 준비해야 한다.

• 옷(복장)

학교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간편하고 활동적인 옷을 입혀 등교시킨다.

• 가방

가방은 등에 멜 수 있으며 너무 크지 않은 것으로 준비한다. 무늬가 너무 복잡하거나 잠시 유행하는 캐릭터 가방 보다는 단순하면서 깔끔한 가방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연필, 필통, 지우개

필통은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것이 좋으며, 게임기가 있는 필통은 피해야 한다. 학년 초에는 2B연필(진한 심)을 쓰면 좋다. 두세 자루 정도 미리 준비하고 지우개는 1개만 준비하면 된다. 샤프펜슬은 고학년 때 쓰는 것이 좋다.

• 공책

공책은 1~2학년용으로 준비한다.

알림장, 종합장은 미리 준비하고 다른 공책은 담임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 받아쓰기 공책, 알림장, 종합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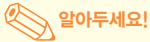
• 크레파스와 색연필

1학년에게는 열두 색 정도가 적당하다.

• 신발주머니와 실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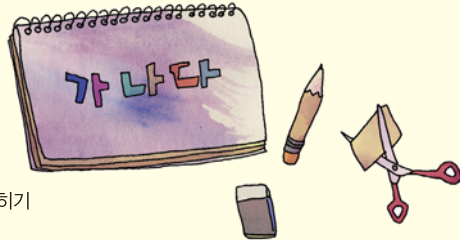
신발주머니는 운동화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적당하고 실내화는 흰색, 분홍색, 밝은 하늘색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겉기가 불편하거나 너무 큰 실내화는 피해야 하고 신발 가게나 학교 앞 문구사에서 살 수 있다(단, 실내화를 사물함에 넣고 다니는 경우에는 신발주머니가 불필요하다).



입학 전에 미리 알아 두기

- 학교 이름 알고 말하기
- 가족, 자기 이름 쓰기
- 자음과 모음 공부
- 기본 숫자 알기(1~10)
- 연필, 크레파스, 가위, 지우개 쓰는 법 익히기
- 색연필로 동그라미, 가로, 세로 줄 긋기
- 색 이름 알기
- 자기 물건과 남의 물건 구별하기
- 집 주소와 전화 번호 알고 전화 걸고 받을 줄 알기
- 식사할 때의 기본예절



3_ 입학 초기 학교생활 적응 지도

• 학교에 대한 좋은 인상 주기

- 학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 이런 어린이에게는 학교에 미리 와서 1학년 교실을 둘러보거나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학교는 재미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 학교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준다.
- 많은 친구들과 형, 언니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준다.

• 선생님은 학교생활을 도와주시는 분

- 학교에서 선생님은 알고 싶은 것,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준다.
- 선생님이 좋아하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말해 준다.
(규칙을 잘 지키는 어린이,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 등)

• 자기 일 스스로 하기

- 아이에게 물건 목록을 주고 가방에 차례차례 넣어보게 하고 학용품 정리하는 방법과 책가방 정리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함으로써 자기의 물건을 챙기는 연습을 해보게 한다.
(세수하기, 정리정돈 스스로 하기, 화장실 바르게 사용하기 등)

• 건강한 몸으로 학교에 다니기

- 입이나 눈, 코, 귀 따위에 잔병이 없는지 미리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한다.
- 어린이가 특별한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나 앓고 있는 병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미리 알린다.
(우유 알레르기, 아토피, 장염 등)

• 안전한 통학 방법 알기

- 걸어 다니는 것이 좋으며, 통학로를 충분히 확인한다.
-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 우측통행, 횡단보도, 교통신호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 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순서에 따라 승차하도록 한다.
- 버스에서 내리면 버스의 바로 앞 또는 뒤에서 횡단하지 않도록 한다.
- 육교나 지하도가 있는 곳에서는 육교나 지하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도록 한다.
- 횡단보도에서는 달리지 않는다.
- 교통 정리원이 있는 경우 지시에 따른다.
- 건너가기 시작할 때 신호가 바뀌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중앙보다 더 갔을 때는 빨리 건너간다.



방과후 활동 지원

저소득가정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방과후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방과후학교(각급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보육(보육시설) 등을 통해 초등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비롯하여, 초·중고생의 방과후 교육·활동과 숙제지도를 도와준다.

방과후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구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학교	방과후 보육
대상아동	저소득층 아동 중심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대상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중심 초(4~6학년), 중(1~2학년)	초·중· 고등학생	저소득층 초등학생 (초1 ~ 6학년)
운영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 평일 : 15:00~22:00 - 토요일 : 12:00~19:00 - 수업 없는 토요일 : 09:00 ~14:00	시·도 교육청별 자율적 운영	1일 4시간 이상
서비스 내용	보호·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통합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보충학습, 급식 등 종합서비스	과제지도, 놀이지도, 상담활동, 소질계발, 인성지도 등	보호·학습지도
이용자 부담	무료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청소 년 : 무료 - 일반 청소년 : 유료	시·도교육청 문의	지역별 보육시설에 문의
문의처	전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 ☎02-732-7979 www.jckh.org	전국 각 지역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02-6430-0908 www.youthacademy.or.kr	시·도교육청	중앙보육정보센터 ☎02-701-0431~2 www.educare.or.kr

인터넷학습사이트

인터넷학습사이트는 숙제에 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만큼 학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사이트와 민간기관의 유료학습사이트를 소개한다.

시·도교육청 개설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

지역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서울	꿀맛닷컴	www.kkulmat.com
부산	부산 사이버스쿨	cyber.busanedu.net
대구	대구 e스터디	estudy.dgedu.net
인천	인천 e스쿨	cyber.edu-i.org
대전	대전 사이버가정학습	www.edurang.net
울산	울산 사이버가정학습	home.go.kr
경기	다높이	danopy.kerinet.re.kr
강원	강원 에듀원	www.gweduone.net
충북	충북 교수학습지원센터	www.cbbedunet.or.kr
충남	충남 사이버가정학습	cell.cise.or.kr
전남	전남 사이버가정학습	cyber.jnei.or.kr
전북	전북 e스쿨	cyber.jbedunet.com
경남	경남 사이버가정학습	www.gnedu.net
경북	경북 사이버스쿨	cyber.gyo6.net
광주	광주 사이버가정학습	www.gedu.net
제주	제주e스터디	www.jejuestudy.net

초등학생을 위한 유료 학습 사이트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주요 내용
와이즈캠프	www.wisecamp.com	담임교사의 화상지도
에듀모아	www.edumoa.com	저렴한 회비, 최대 회원 수
아이나무	www.inamu.com	플래시와 동영상 결합, 중학과정의 연계
기출닷컴	www.gichool.com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무료 기출문제 자료실 운영
동아키드	www.doosandong.com	전 과목 학습내용, 숙제 도우미
에듀피아	www.edupia.com	사이버담임제, 학습습관가이드
하우키	www.howkey.com	현직교사들의 지도와 문제출제



3» 중학교 교육

중학교 과정은 3년이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과목을 배우게 된다. 중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게 되며,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이다. 부모가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1_교과 과목에 따른 학습 내용

중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필요, 능력, 적성,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하였다. 중학교 1~3학년 간에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수학, 영어 교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는 국어, 사회, 과학 교과가 해당된다.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목의 학습영역은 다음과 같다.

과목	영역
도덕	개인생활, 가정·이웃·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민족생활
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수학	수와연산, 문자와 식, 규칙성과 함수, 확률과 통계, 도형, 측정
사회	지리(인간과 공간), 일반사회(인간과 사회), 세계사·국사(인간과 시간)
과학	지식(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탐구(관찰, 분류, 측정, 실험, 자료분석, 조사)
체육	육상운동, 체조, 수영, 개인 및 단체운동, 무용, 체력 운동, 이론, 보건
음악	이해(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 활동(가창, 기악, 창작, 감상)
미술	미적체험, 표현, 감상
기술·가정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 기술,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영어	음성언어 기능(듣기, 말하기), 문자언어 기능(읽기, 쓰기)

2_중학교 재량활동

(1) 재량활동의 목표

-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성취 수준, 교육적 필요에 따라 기본교과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수준별로 심화·보충함으로써,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 기존의 교과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던 선택과목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복수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영역의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한다.
- 지역사회 및 학교,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여 창의적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소질과 특기, 다양한 인성 발달을 촉진시킨다.
- 학생의 흥미와 관심, 적성에 따라 학습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한 교과에서 다루기 어렵고 다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교육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폭넓고 종합적인 지적 발달을 이루도록 한다.
- 학교에서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필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자율과 재량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육적 신념과 지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재량활동 내용

영역	하위 영역	활동 내용	시간 배정
교과 재량 활동	기본 교과 심화·보충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학습	102 시간 (선택과목에 우선 배정)
	선택 과목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외국어, 기타	
창의적 재량 활동	범 교과 학습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함양교육, 보건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교육, 통일교육, 한국문화정체성교육, 국제이해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 기타 프로그램	34시간 (주당 1시간)
	자기 주도적 학습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개별 학습 활동 소집단 공동 연구, 자연 체험 등	

3. 중학교 특별활동

(1) 특별활동 목표

다양하고 건전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한다.

• 자치활동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 수행하고,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지닌다.

• 적응활동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신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한다.

• **계발활동**

계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서를 배우고, 협동심을 기르며,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 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 **봉사활동**

봉사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

• **행사활동**

각종 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가진다.



(2)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자치활동	• 협의 활동	• 민주 시민 활동	• 역할 분담 활동
적응활동	•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 정체성 확립 활동	• 친교 활동	• 상담 활동 • 진로 활동
계발활동	• 학술 문예 활동 • 보건 체육 활동	• 실습 노작 활동 • 여가 문화 활동	• 정보 통신 활동 • 청소년 단체 활동
봉사활동	• 일손돕기 활동 • 위문 활동	• 캠페인 활동 • 자선 구호 활동	• 환경·시설 보전 활동
행사활동	• 의식 행사 활동 • 수련 활동	• 학예 행사 활동 • 안전 구호 활동	• 보건 체육 행사 활동 • 교류 활동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에서는 청소년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의 청소년상담전화는 지역번호 없이 ☎1388을 누르면, 가까운 지역(상담)지원센터로 연결된다.

- 1) 이용대상 :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나, 청소년을 둔 학부모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 2) 신청방법 :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도 된다.
- 3) 이용 시간 및 비용
 - 센터에 따라 이용시간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 지역여건과 청소년센터의 상황에 따라 토·일요일에 운영하는 곳도 있다.
 - 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 이용비용은 대부분 무료이며, 심리검사 등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이용료를 받기도 한다.

청소년상담 관련 지원센터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개인상담	청소년 문제(학업, 친구, 비행), 비행예방, 부부관계, 가족 간의 갈등 등
집단상담	친구사귀기, 효과적인 대화법, 시간관리, 학습방법 등
심리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흥미검사 등
청소년 캠프	심신수련, 친구관계, 진로결정, 비행예방 등
부모교육	자녀와의 바람직한 대화법, 아버지 교실 등
사이버 상담	공개상담, 비밀상담, 채팅상담, 웹심리검사 등



알아두세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간에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하찮은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피해자의 마음이나 행동을 불편하게 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자녀의 행동

- 옷이나 운동화, 안경 등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다.
- 몸에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을 자주 발견한다.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한다.
- 교과서나 가방, 공책 등에 '죽고 싶다'와 같은 낙서가 쓰여 있다.
-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고, 말도 없이 집에서 돈을 집어간다.
- 맥없이 풀썩 주저앉거나,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 입맛이 없다며 평소에 잘 먹던 음식을 먹지 않는다.
-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
- 친구에게서 전화 오는 것조차 싫어한다.
-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거나 전학을 보내달라고 한다.
- 갑자기 성격이 떨어진다.
- 잘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나 앓는 소리를 한다.



대처방법

학교폭력을 당하였을 때 관련 기관에 연락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

먼저 자녀가 폭력을 당한 사실을 학교의 담임선생님께 알려야 한다. 담임선생님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조사 후에 처리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심의,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한다.

(2) 교육청 : 학교폭력 SOS지원

학교폭력 SOS지원은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와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는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개입하여 분쟁조정과 사건처리를 담당한다.

위기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88-9128(구원의 팔)이며, ☎1588-7179(학생고충상담전화)도 이용 가능하다.

(3) 사회단체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 전화하면, 피해자와 부모는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적인 정보와 치유를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경찰 :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전화(핸드폰 사용시 지역번호 + 117)하면,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를 통하여 긴급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One-stop지원서비스는 상담, 수사,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한다.

(5) 사이버 상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이버청소년상담기관은 왕따닷컴(☎1588-9128)과 청소년희망재단(☎02-3291-3634) 등이 있다.

(6) 학교폭력 피해자 신고방법 안내

- 위기상담센터 ☎1588-9128
-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 청소년 긴급전화 ☎1388
-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177

4» 고등학교 교육

고등학교 과정은 3년이며,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여러 가지 고등학교가 있다. 과학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시험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며, 그 외 일반고등학교는 지역 내 거주지를 중심으로 추천을 통해 입학이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학비는 각 가정에서 내야 한다. 학비는 지역과 학교 특성에 따라 다르다. 과학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의 학비는 3개월마다 40만원 정도이다. 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_고등학교 종류

일반계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을 배우고 2~3학년은 각 학생의 적성과 능력, 진로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한다.
전문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는 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로서, 전문교육과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한다. 1학년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을 배우고, 2~3학년은 전문교과를 이수한다. 전공은 크게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계열 등이 있다. 요즘은 들어서는 IT, 로봇, 애니메이션·영상, 조리, 미용, 관광 등 전공이 점점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영재를 조기에 찾아내어 지도하며, 그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주는 교육기관이다. 2년 이상의 과정을 마친 학생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과정 또는 2년 이상 수료자에게 입학할 허가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기타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학교들은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을 전공하게 한다. 이러한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은 누구나 일정한 전형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2_학생복지

지원에 관한 기준은 지역별 · 학교별 · 분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학비지원

• 대상자

- 읍 · 면 · 주민자치센터에 교육급여 대상자로 등록되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 · 부자가정, 시설보호대상자 등)
- 지역건강보험 월 47,000(3인)~50,000원(6인) 이하 보험료 납부가정 자녀
- 직장건강보험 월 43,800원 이하 납부가정 자녀
- 차상위계층 보험료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가정형편상(부모의 이혼, 사망, 실직, 파산, 질병, 채무, 행방불명, 폐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임교사가 추천한 저소득층 자녀

•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① 학비지원 신청서 ② 증명서(또는 읍 · 면 · 주민자치센터의 재학조회공문)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① 학비지원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확인용) ③ 건강보험증 사본 ④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영수증(보험료 확인 서류) ※ 급여명세서 제출시 담당자 또는 급여담당자 확인도장 필요
담임교사 추천	① 학비지원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확인용) ③ 담임교사 의견(추천)서 ④ 기타참고서류(부채/ 사망/ 실직/ 파산/ 이혼 등) ※ 담임교사 의견서는 담임선생님이 작성

(2) 학비감면

•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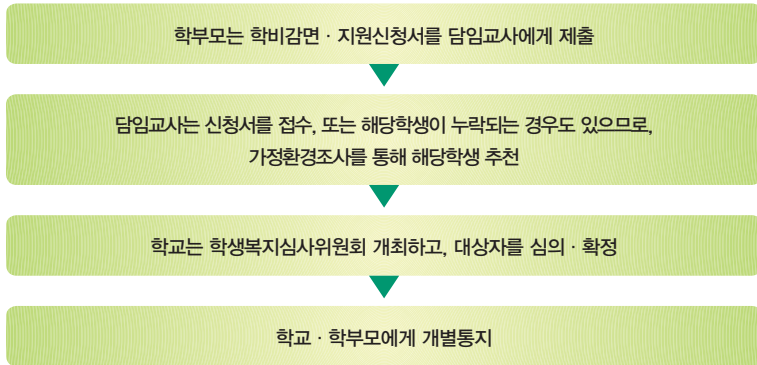
실질적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함에도 '학비지원' 기준에 미달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은 '담임사실 확인서'에 의거 감면을 범위 내에서 우선 감면처리 받을 수 있다.

감 면 대 상		구 비 서 류
법정면제 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학생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보호 대상자	관할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보호대상자 증명
일반감면 대상자	경제 사정 곤란자 • 실직·파산자 및 실제로 경제사정이 곤란함에도 '학비지원'기준에 미달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 • 장학금 등 기타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잔액을 지원받지 못해 그 차액 분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	담임선생님 사실 확인서
기타	위 사항 이외에 학교장이 장학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감면결정공문(감면사유 명기) • 학교근로봉사학생 (담당선생님 확인서)

• 감면 기간

학비감면 대상자의 감면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감면사유 소멸 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정면제자는 재학 기간 동안 계속 면제받을 수 있다.

(3) 학비 감면 및 학비 지원 신청절차



감면 및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학부모(보호자)가 ‘학비감면·지원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직접(또는 우편) 제출하여 접수하고, 담임교사는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그 형편에 따라 학생지도 및 복지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그 후에 학교에서는 학생지도 및 복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심의·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필요 시 담임교사의 의견도 참고하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모든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담임교사의 사실 확인서만으로도 학비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신청서는 학기 초에 학교에서 배부해 준다.

(4) 급식비 지원

지원에 관한 기준은 지역별·학교별·분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지원 기간** : 1년 단위로 운영(그 해 1. 1 ~ 12. 31)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필수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복지시설 수용학생, 특수학급 학생
 -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심의 대상자 : 차상위 계층

•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

사업명	지원대상	구비서류
벽지학교 급식비	벽지학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	없음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필수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모·부자가정 자녀 •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모·부자가정 증명서 • 학교장 확인 • 학교장 확인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심사대상 • 가급적 차상위 계층 내에서 선정 (결손, 실직, 기타 극빈)	• 담임교사 추천서 (학교장 확인)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서 및 청구서
한세대 셋째 자녀 이상 급식비	한 세대 셋째 자녀 이상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단, 세 자녀가 모두 초·중·고에 재학할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특수학교 급식비	특수학교 재학생	없음



5» 대학교 교육

한국의 대학에는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이 있다. 대체로 4년제 대학은 직업 교육보다는 전공 공부를 하고, 2년제 대학은 직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을 배운다. 설립 취지에 따라 대학을 일반대학과 특수목적대학, 특수대학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특수목적대학에는 교육대학, 개방대학, 방송통신



대학, 과학기술대학 등이 있으며, 특수대학에는 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등이 있다. 대학에 진학할 때는 일반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수능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점수를 받은 후 그 점수를 가지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학교에 따라 학생 선발 방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학생은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1_대학의 종류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2~3년제인 전문대학, 기능대학 등이 있다.

구 분	내 용
일반대학	여러 분야의 전공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이 진학하는 대학
산업대학	주로 산업인력을 키우는 대학
교육대학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
전문대학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텔레비전, 라디오,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어느 곳에서나 공부할 수 있는 원격교육 대학
기능대학	여러 분야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대학

2 장학금

대학의 등록금이나 학비는 각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대학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성적장학금 : 전공별 학과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공되는 장학금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제공되는 장학금 : 이 장학금은 어느 대학에서나 제공되고 있다. 학생이나 부모가 지도교수나 장학금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학생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알아두세요!

다국어 학교생활안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이민자 학부모 및 자녀를 위해 만든 학교생활 안내서에 잘 나와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각각 입학준비, 교육과정, 학교생활, 입시제도, 진학안내 등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서 알려준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제작되어 있다.

-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종)
- 중학생의 학교생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종)
-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종)

※ 안내서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교육청(043-290-2000)에 문의하거나, 충청북도 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에 들어가서 문서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Memo





VII 건강과 의료

166	국민건강보험	176	보건소
166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176	일반진료
166	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177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67	가입방법	178	무료 정신건강 서비스
167	가입자 혜택	179	응급처치
168	보험료 납부		
168	상담기관 또는 문의처		
169	의료급여제도		
169	적용대상		
170	본인부담금		
171	의료기관		
171	의료기관 유형		
172	진료 분야와 진료과목		
173	의료기관 이용절차		
174	응급상황 대처법		
175	약국		



1 » 국민건강보험

1_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한국은 소득에 따라 매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되,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처리하며, 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험기금에서 진료비 중 일부를 부담하므로, 나머지만 본인이 내면 된다.

2_국민건강보험 가입 대상 외국인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_가입방법

(1)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된다. 배우자가 필요한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내면 된다.
- 필요한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자** : 본인이 돈을 벌지 않고, 남편(부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외국인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 외국인이 직장에 다니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된다.
-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외국인등록증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이 모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여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지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 가입방법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이 혼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4_가입자 혜택

- 병·의원, 한의원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단 진찰, 치료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한다.
-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는다. 건강검진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5_보험료 납부

(1) 직장가입자

- 보험료 납부 : 매월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한다.

(2) 지역가입자

- 보험료 납부
 - 보험료는 매달 부과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월 25일까지 납부한다.
(단, 자격이 소급취득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최초보험료에 합산부과)
 - F-1~2와 F-5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매월 납부한다.



유의사항 : 단,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배우자임이 확인될 때는 내국인 세대에 합가 신청하여 내국인 부과기준으로 매월 납부할 수 있음

6_상당기관 또는 문의처

건강보험 보험료, 자격요건,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대표전화(☎1577-1000) 또는 영어상담전화(☎02-390-2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2» 의료급여제도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하여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게 된다.



1_ 적용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최저생계비 이하로 구성된 가구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의료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다.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 미만), 행려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2_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대상자도 의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내야 한다.

구분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입원	급여비용 면제	급여비용의 10%
외래	의원(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1,500원) 3차기관(지정기관/2,000원) CT*, MRI*, PET (의료급여비용의 5%)	의원(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여비용의 15%) 3차기관(급여비용의 15%)
약국	약국 500원	약국 500원

* CT(전산화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 정밀검사를 위해 신체 내부의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또는 시·군·구(읍·면·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3» 의료기관

1_의료기관 유형

의료기관은 규모와 이용 순서, 서비스 내용 및 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감기나 소화기 장애 등 병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동네 의원에서 가서 치료받고, 병이 낫지 않거나 세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



의료기관 유형

건강보험	1단계		2단계
규모	동네의원,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종합전문병원)
치료 내용	외래진료, 예방접종, 건강관리	종합검사, 입원치료	정밀검사, 장애나 질병 치료, 관리
해당 의료기관	보건소, 한의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등	여러 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전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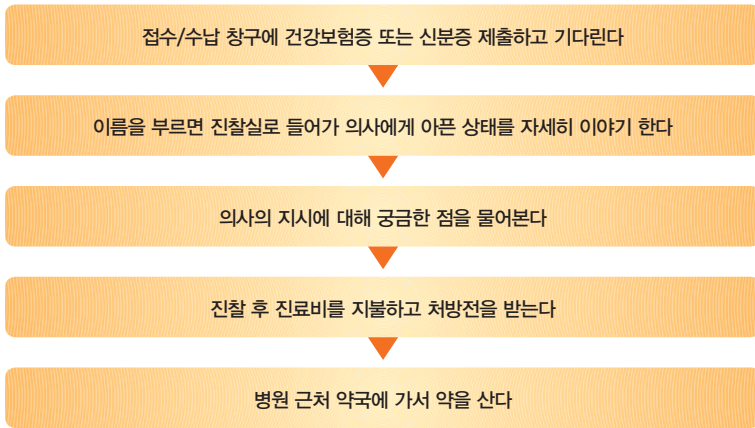
- 종합전문병원을 이용할 때에는 1단계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료의뢰서 없이 종합전문병원에서 1단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응급환자, 분만,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및 혈우병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한국에는 서양의학 외에도 한의학이 발달되어 한의원이 지역마다 있다. 한의원에서는 침, 뜸, 부항을 받거나, 약용식물을 달여 만든 한약을 지을 수 있다.

2_ 진료 분야와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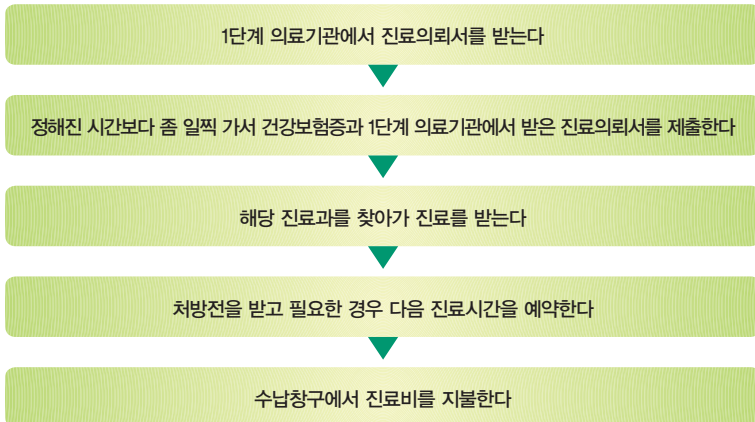
진료과목	주요 진료 분야
내과	각종 내부장기를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식도, 위 등 소화기 질환, 폐암, 심장, 혈관, 혈압, 당뇨 등과 관련된 병 치료
소아청소년과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들의 질환치료를 한다. 미숙아, 신생아 치료, 소아의 신장, 신경, 호흡기, 알레르기 등을 치료
산부인과	임신 및 출산과 여성의 생식기에 관련된 질환 치료
정신과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 치료
신경과	뇌졸중, 간질, 치매, 신경통 등 신경계와 관련된 병 치료
가정의학과	연령, 성별,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방, 검진 및 치료 등 포괄적인 의료 제공
피부과	여드름, 탈모, 두드러기 등 피부와 관련된 질병 치료
일반외과	맹장염, 감염질환, 소화기 계통 등 수술을 요하는 질병 치료
정형외과	골격 및 근육에 관한 질환을 수술과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 화상 및 후유증 치료 등 몸의 형태와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
재활의학과	재활전문 의사가 물리치료사와 함께 근육, 뼈, 신경 계통의 질병을 치료
비뇨기과	콩팥, 방광 등 요로계 장기들과 음경, 고환 등 생식기관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치료
안과	백내장, 녹내장, 근시 교정 수술처럼 눈과 눈의 신경에 관련된 질병을 치료
이비인후과	귀, 코, 목 등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
치과	치아교정, 보철, 스케일링, 치아신경치료 등
응급의학과	응급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
한의학과	동양에서 발전해 온 의학으로, 모든 분야의 질병을 치료하지만 치료방법이나 약을 만드는 방법이 일반 병원과 다르다.

3_의료기관 이용절차

(1) 1단계 의료기관 이용절차



(2) 2단계 의료기관 이용 시 다른 점



4_응급상황 대처법

- 평상 시 약국에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을 구입해서 집에 두는 것이 좋다.
- 응급전화 ☎119를 하면, 응급차가 오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안내된다. 응급실에서 기본적인 처치를 받은 후 수술이나 검사를 위해 입원이 필요하면 병실이 배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 병실이 배정되면 입원 수속을 한다.



알아두세요!

의료기관과 약국에 갈 때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갖고 간다

- 응급상황 전화 ☎119
- 보건복지콜센터 ☎120(핸드폰으로 할 때는 지역번호 + 129)
-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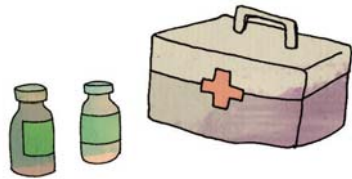
5_약국

한국은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초의약품은 제외한 약들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약국에서 직접 살 수 있는 약은 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각종 연고 등이다. 그 밖에 모기나 바퀴벌레 등을 잡는 살충제, 생리대, 건강보조음료, 콘돔 등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급약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집에 구급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구급약이 없으면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약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다. 특히 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급약을 준비해서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다음은 집에 꼭 있어야 할 기본적인 약품들이다.

- **해열제** : 열이 많이 날 때 먹는 약
- **진통제** : 통증을 줄이기 위해 먹는 약
- **소화제** : 배탈이 났을 때 소화를 돕는 약
- **지사제** :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
- **안약** : 눈이 피로하거나 눈병이 났을 때 넣는 약
- **소독약** : 칼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벤 상처에 덧나지 않도록 바르는 약
- **바셀린** :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 바르는 약
- **피부연고제** : 습진이나 가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약
- **물파스** : 벌레 물린데, 가려움, 습진, 땀띠에 바르는 약
- **붙이는 파스** : 근육통에 붙이는 약
- **소독밴드** :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붙이는 밴드
- **구급함** : 거즈, 탈지면, 가위, 체온계, 소독밴드, 붕대, 반창고 등 응급상황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 있다.



4»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돌보기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예방접종, 만성질환진료 및 각종검사, 물리치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의료기관보다 진료 및 치료비용이 저렴하다.

1_일반진료

구분	내 용
진료범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및 각종 검사와 물리치료
한방진료	침술, 뜸, 한약재 투여
치과진료	구강검진 및 상담, 예방치료, 충치치료, 발치 등
진료비용	65세 이상 경로, 의료급여 : 무료 - 진료+각종 검사 = 1,100원 - 치과치료 = 1,100원 - 한방과 = 1,100원 - 물리치료 = 500원
진료절차	접수 → 진료 → 수납 → 처방전 발급 → 약국

2_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영양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 적용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 문제가 있는 주민을 관리한다.
-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노인부부를 우선으로 한다.

(2) 서비스 종류

- 뇌졸중, 고혈압, 당뇨, 암, 치매, 정신질환 등 주요한 건강문제관리
- 만성질환, 장애, 사고 등 가족의 건강문제관리
- 임신부 산전관리 및 영유아 성장발달 지도
- 건강교육 및 상담, 판단에 따라 정기적인 방문서비스 제공
-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실시

(3) 신청 방법



- 지역 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부서에 신청한다.
- 담당자가 방문하여 신청자 가족의 생활환경, 건강위험요인 등을 파악한다.
- 건강문제에 따라 집중적인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3_ 무료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재활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보건기관이다.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중독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가까운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 적용 대상

-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프로그램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 정신질환예방 프로그램은 일반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 이용절차 및 방법

- 정신보건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지역의 여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서비스 이용절차
 - 정신보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한다.
 - 정신보건센터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경우 상담과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로 연락하면 정신보건센터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정신건강문제의 상담이 가능하다.
- 이용료 : 무료
(비용이 많이 드는 특수 프로그램의 경우 소정의 비용이 들 수 있다)

5» 응급처치

사고가 났을 때 올바르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응급조치 후에는 신속히 ☎119(긴급구조전화)나 병원 응급실로 연락을 해서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1)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눈동자를 움직이면 부상이 심해지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눈에 이물질이 박혀 있다면 빼지 말고, 다친 눈을 붓대로 감은 다음 양쪽 눈을 감는다. 이후 빨리 병원으로 옮긴다.



(2) 이가 빠졌을 때

이가 빠진 자리에 조심스럽게 다시 끼우고 치과로 간다. 만약 이를 제자리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자의 입 속이나 미지근한 우유 속에 담아서 옮긴다. 빠진 치아를 너무 깨끗하게 씻는 것은 좋지 않다.



(3) 코피가 날 때

우선 머리를 앞으로 숙여 숨을 쉬면서 코뼈 밑 부분을 잡는다. 이때 말을 하거나 침을 삼키거나 기침을 해서는 안 된다. 10분 정도 지난 뒤에도 피가 멈추지 않으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코피가 멎은 후에도 한동안 머리를 앞으로 굽히고 미지근한 물로 코와 입 주위를 닦으며 물리적 자극을 피하는 게 좋다.



(4)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이 심하고 상처부위가 넓은 경우 전문치료가 필요하다. 일단 소독 거즈로 감싼 후 호흡 상태를 관찰하면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심하지 않을 때는 상처 부위의 옷을 가위로 자르고, 흐르는 찬물로 최소한 20분 이상 열을 식히는 것이 좋다. 상처 부위는 절대 문지르면 안 되며, 물질도 터뜨리지 말아야 한다. 상처가 심할 때는 연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5) 감전되었을 때

즉시 전원을 끈다. 전원을 끌 수 없는 곳이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옷차림을 갖추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을 이용해 감전을 일으킨 물건을 환자에게서 떼어낸다. 구조 후엔 환자에게 의식이 있는지 살피고, 의식이 없으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다. 호흡이 멎었을 때는 인공호흡을, 맥박이 멎었다면 인공호흡과 함께 심장 마사지를 해 준다. 감전은 몸의 내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의식이 있더라도 즉시 응급실로 옮겨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6) 일사병 · 열사병

일사병은 머리나 목 부분에 직사광선을 받아 생기는 병이고, 열사병은 체내의 열을 체외로 내보내지 못할 때 생기는 병이다. 이런 때는 환자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이나 시트로 환자를 덮은 뒤 부채나 선풍기로 바람을 쏘여주며 병원으로 신속히 옮긴다.



(7) 질식

질식하면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또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눈 주위가 튀어나오며 심하면 얼굴색이 파랗게 된다. 이럴 때는 환자를 공기가 맑은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의식이 없더라도 호흡이 유지되고 있으면 엎드린 자세로 서서히 회복시키는 게 좋다. 만일 호흡이 없거나 호흡이 심하게 곤란한 상황이라면 즉시 인공호흡을 하고, 회복의 기미가 없으면 병원으로 신속히 옮긴다.



(8) 뼈가 부러졌을 때

골절 부위가 변형됐거나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온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고정시킨 다음 구조요원을 부른다. 상처 부위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담요나 베개를 이용해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여주는 게 좋다. 단순히 뻐 경우에는 다친 부위를 탄력붕대로 넓게 감싸고 움직임을 줄이면 부은 것이 가라앉는다. 통증을 줄이는 데는 얼음찜질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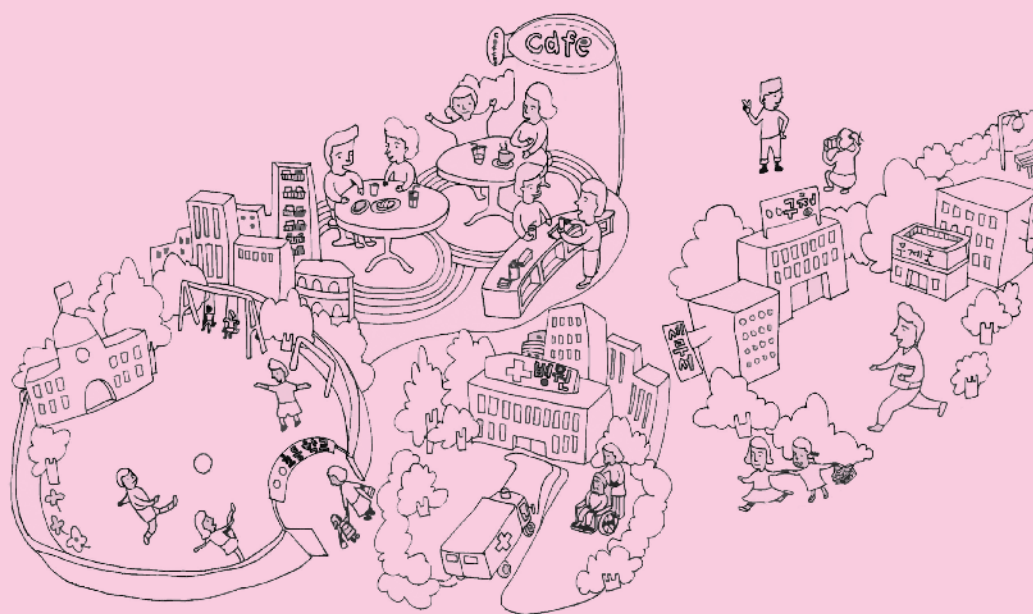


(9) 손가락이 잘렸을 때

잘린 손가락은 다시 접합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적절히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상처부위를 눌러 피를 멎게 하고 손을 심장보다 높이 든다. 잘린 손가락은 거즈로 잘 싸서 얼음이 담긴 비닐봉지에 넣어 병원으로 신속히 운반해야 한다. 잘린 부위에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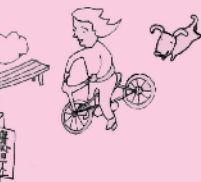




VIII

사회보장제도

184	국민기초생활보장	194	자활근로사업
184	적용대상	194	적용대상
185	급여의 종류	194	근로조건
186	신청방법	195	신청방법
187	국민연금	196	한부모가족 지원
187	적용대상	196	서비스 종류
188	보험료 부담	197	신청방법
188	급여혜택		
190	긴급복지지원		
190	적용대상		
191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192	소득·재산 기준 및 적정성 심사기준		
192	지원종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_적용대상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다면, 외국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한국인 가족들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으로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말한다. 가족이 몇 명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가 매년 발표한다.

2009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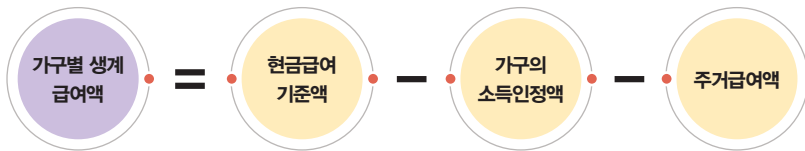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 2,062,877원)

2_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 급여의 내용 : 의복 ·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중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2009년 주거급여 한도액 및 주거 현물급여 기준액

(단위 : 원/ 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현금급여기준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 2,062,877원)

(2) 주거급여

- 급여의 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현금 또는 현물급여를 제공

(3) 교육급여

- 급여의 내용 : 입학금 ·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 고등학생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109,000원/1인), 학용품비(45,000원/1인)
 - 중학생 : 부교재비(33,000원/1인), 학용품비(45,000원/1인)

(4) 해산급여

출산(출산예정 포함) 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5)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 1인당 40~50만 원 지급

(6) 기타급여

- 긴급복지지원 (⇒ p190, 3. 긴급복지지원 참고)
- 자활급여 (⇒ p194, 4. 자활근로사업 참고)
- 의료급여 (⇒ p169, Ⅷ. 건강과 의료 2. 의료급여제도 참고)

3_신청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신청은 읍·면·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늦어도 30일 이내에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려준다.



알아두세요!

보건복지콜센터 129 (www.129.go.kr)

- 나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정보와 상담을 원하면, 어디서나 ☎129로 전화하면 된다.
- 상담시간
 - 소득보장, 민생안정지원,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상담 : 평일 9시~18시
 - 긴급지원상담 : 365일 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

2» 국민연금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_적용대상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 (20개국)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공, 동티모르, 몰디브,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통가, 피지

※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송출 근로자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본국 법령 적용

2_보험료 부담

-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소득월액의 4.5%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한다.
- 지역가입자(자영자 등)는 본인의 신고(실제)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3_급여혜택

- 외국인가입자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하는 급여이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된다.
-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유족연금** 가입 중 또는 연금을 받고 있던 중에 사망한 때에는 생계를 함께 하고 있던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 **반환일시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출국, 사망, 60세에 도달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우리나라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 (37개국)

-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카자흐스탄, 홍콩, 터키, 벨리즈,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토고, 베네수엘라, 가나,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위스, 엘살바도르, 요르단,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나이지리아, 콜롬비아(이상 29개국, 상호주의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 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이상 8개국,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반환일시금 지급)

※ E-8, E-9, 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지급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

참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3»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휴·폐업 등의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 부모, 자녀)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難民)의 인정을 받은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1_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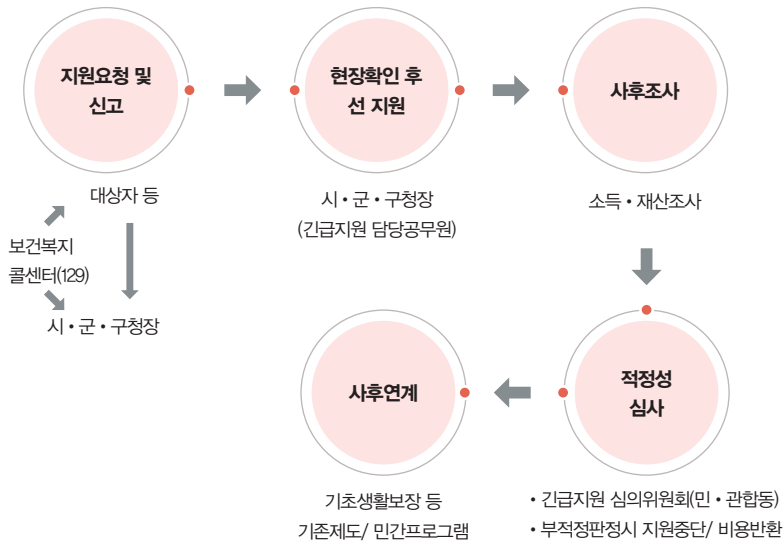
(1)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포함)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생계유지 등의 곤란

- 생계유지 등의 곤란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2_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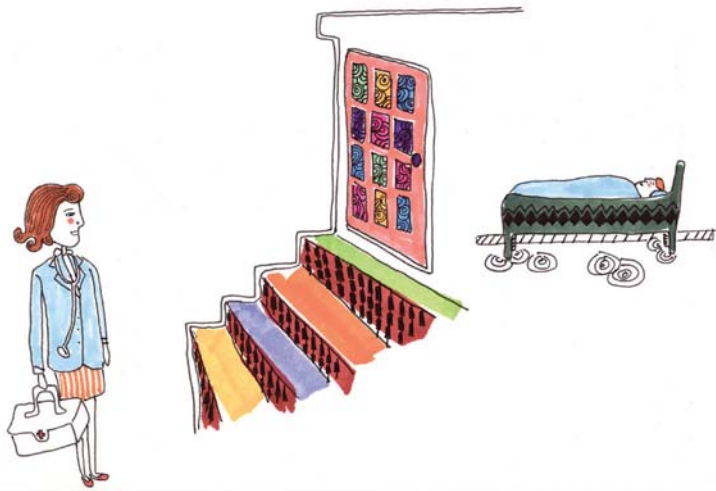
-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 129)로 전화한다.
-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우선 지원해 준 후 적격자인지를 다시 심사한다. 만약 지원받을 상황이 아니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 긴급지원이 끝나더라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국가제도나 민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

3_소득·재산 기준 및 적정성 심사기준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기준 : 199만원)
다만,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4인가구 기준 : 132만원)
- **재산기준**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09.2.6 시행)

4_지원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그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명의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 2명(아이 1명과 본인)이고, 모든 가족소득이 83만 원 이하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이 긴급한 상황 여부, 소득·재산상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부서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상담해 보면 좋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좋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되면 생계비와 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갑자기 중한 질병에 걸려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이거나, 이혼 중이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인지 여부, 소득·재산상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부서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상담해 보면 좋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좋다.



**남편한테 맞아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담당 공무원이 조사하여 결정한다. 대상자가 될 경우 생계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거주지 시·군·구청 담당부서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상담해 보면 좋다.

4» 자활근로사업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 기술, 자금 등의 부족으로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1_적용대상

아래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소득인정액(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정부가 산정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층 이하인 경우
-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2_근로조건

- 1주 근무일 및 1일 근무시간은 대상자의 근로능력 및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일 5~8시간, 1주 4~5일 근무에 1일 임금이 21,000~31,000원이다.
-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가까운 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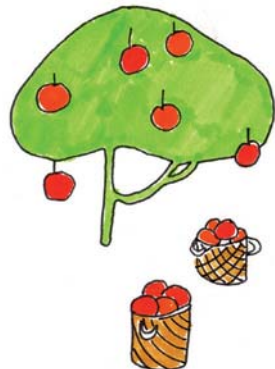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02-324-1841

3_ 신청방법



- 읍·면·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뒤 신청한다.
-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다음, 대상자여부를 판단한다.
- 담당 기관이 적합한 대상자로 판단하면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준다.
-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은 대상자와 상담을 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한다.
- 가까운 읍·면·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상담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02-324-1841, www.jahwal.or.kr)



5» 한부모가족 지원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1_서비스 종류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 고교생학비 :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2)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대출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사람(타 기관과의 중복용자 불가)
-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2,000만 원 이내
 - 대여이율 : 연이율 3%의 고정금리
 - 대여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09(원/월)	1,086,490	1,405,540	1,724,590	2,043,640	2,362,690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19,050원씩 증가 (7인 가구 2,681,74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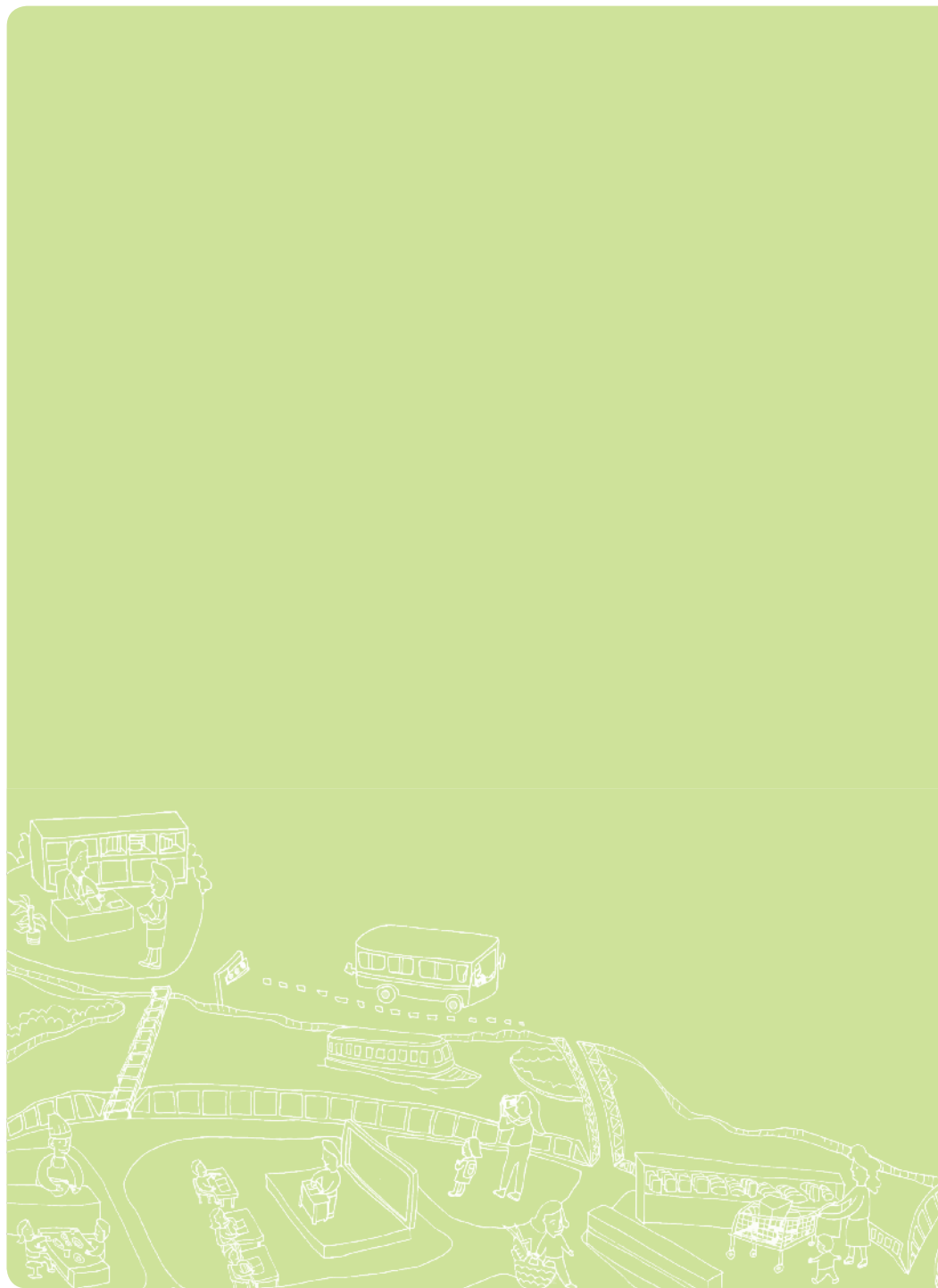
2_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한다.
-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뒤, 대상자인지를 판단하여 알려준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 살 길이 막막합니다. 나하고 아이랑 살고 있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적다면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이나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등 필요사항에 대해 조사한 다음 결정한다. 긴급하다면 긴급복지 대상자도 될 수 있다. 그러니 가까운 읍·면·주민자치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면,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상담하는 것이 좋다.



IX

취업과 근로

200	취업 및 직업훈련	213	산업재해보험
200	취업	213	산업재해
204	직업훈련	215	기본적인 안전수칙
206	근로 관련 주요사항	216	알아두어야 할 안전표지
206	사회보험	21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6	근로기준법 안내	217	출산휴가
208	근로기준	218	유사산휴가
210	임금	219	육아휴직
211	고용보험		
211	실업급여		

1 » 취업 및 직업훈련

1_취업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다. 국민배우자(F-13, F-21)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된다.

※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국번없이 ☎1345)에서 확인 가능

취업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들과 취업하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봉급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을 상의해 보는 것이다.

(1) 일자리 알선기관 방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구분	내 용
고용지원센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료취업알선기관으로 전국에 퍼져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사람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구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업체를 알아보기도 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적합한지를 안내해 준다. 또한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체 면접을 주선하고 있다.
취업정보센터	주거지의 시나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취업알선기관이다. 시청이나 군청을 방문하면, 대부분 취업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취업할 사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에 따라 유료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민간기관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취업알선,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인터넷 이용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하고자 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체를 검색할 수 있다.



서울글로벌센터 (jobs.seoul.go.kr)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주한 외국인 취업지원, 구인구직 검색, 채용정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제공한다.



잡넷 (www.jobnet.go.kr)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잡넷은 여러 취업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정보를 한곳에서 구축하는 검색사이트이다.



워크넷 (www.work.go.kr)

노동부 산하단체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관련 사이트로 다양한 일자리 정보, 고용지원센터 채용행사, 직업심리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 (know.work.go.kr)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각종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이버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도록 도와준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jobcenter.work.go.kr)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무료 취업알선기관으로 상담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며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이트에서 연결되는 지역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거주지와 가까운 전국의 지부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여성인력개발센터 (www.vocation.or.kr)

다양한 취업교육과 직업훈련, 근로여성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며 취업을 알선해주는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다.

시·군 취업정보센터

지자체에서도 무료 취업알선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업체 방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담원들이 동행하여 사업체를 방문하기도 한다.

- 고용지원센터(jobcenter.work.go.kr) • 여성인력개발원(www.vocation.or.kr)



알아두세요!

통역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국국제노동재단(워크인 코리아)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기관	전화번호	이용시간	통역이 가능한 언어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1644 - 0644	월~금 09:00~18:00 일요일 13:00~19:00	한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영어(필리핀),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러시아), 파키스탄어(인도어), 캄보디아어, 네팔어,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워크인 코리아	031) 838 - 9111~2	화, 수, 목, 금, 일 09:00 ~ 18:00	영어, 중국어, 인도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파키스탄어, 캄보디아어 (캄보디아상담통역은 일요일만 가능)



2_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직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제도화된 직업훈련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한층 더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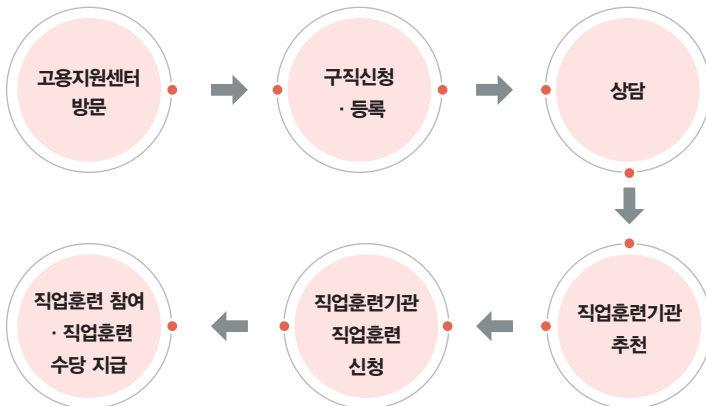


- 고용지원센터 (jobcenter.work.go.kr)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 - 1350)
- 노동부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

(1) 고용보험에서의 직업훈련 수급자격

- 실업자, 가난한 자영업자, 취업보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에게 제공된다.
-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 국적이 없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전직 실업자훈련'을 이용할 수 있다.

(2) 직업훈련 신청방법과 절차



(3) 직업훈련 종류 및 혜택

훈련종류	주요내용	주요대상	지급수당
신규 실업자 훈련	취업을 돕는 훈련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	교통비, 식비
전직 실업자 훈련	재취업을 돕는 훈련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	교통비, 식비, 자활수당
여성가장 훈련	취업과 창업이 쉬운 직종 중심 훈련	• 남편이 없는 여성 • 미혼,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능력이 없는 경우 • 남편이 구직신청 후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여성 • 이혼소송을 하고 별거 중인 여성 • 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여성	교통비, 식비,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
우선선정 직종훈련	민간직업훈련에 위탁하여 훈련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한 모든 미취업자 • 실직자 •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예정인 고3 학생	교통비, 식비, 우선 선정 직종수당
자활훈련	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로 자활훈련받기 전 직업적응훈련 중에서 근로의욕 증진 및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교통비, 식비, 자활수당
고용촉진 훈련	취업 및 창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 중 시·군·구청장이 선발한 미취업자·실직자	교통비, 식비

(4) 기타 직업훈련

-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이외에, 여성결혼이민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유·무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기관이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당해 기관이나,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여성인력개발원 (www.vocation.or.kr)

2» 근로 관련 주요사항

모든 사업체에는 취업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근무에 관한 사항, 근로안전과 위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_사회보험

- 한국 국적이 있는 자가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사회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러 혜택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이와 관련된 보험료는 회사가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걷어 사회보험관리기관에 제공한다.

2_근로기준법 안내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1) 근로계약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말한다. 계약체결시에 임금·직종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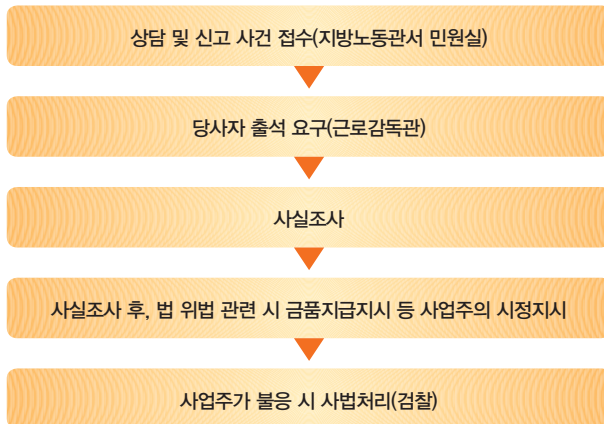
(2)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불된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을 때, 사업주 또는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장시간 근로 및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근로를 당하였을 때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근로감독과에 진정할 수 있다.
(노동종합상담센터 ☎1350, ☎1544-1350)

(3) 임금체불

-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진정사건이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 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다.
- 처리순서



(4)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의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는다.

- 최종 3월분의 임금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 (90일분의 평균임금)

(5) 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일신상의 사유
- 행태상의 사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3_근로기준

(1) 노동시간

-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계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휴계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2011년 경 주당 40시간으로 바뀔 예정이다.

(2) 휴식시간

- 휴식시간은 4시간 노동에 30분,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 휴식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휴식시간에 한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한다.
- 야간근로는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것을 말한다.
- 휴일근로라 함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나, 약정휴일(회사가 정한 휴일)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 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임금의 1.5배를 받도록 되어 있다.

(4) 교대근무

- 생산시설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회사는 근로자들을 두 팀이나 세 팀으로 나누어 교대로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을 교대제근로라고한다.
- 교대제로 일할 경우, 일부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1주일 간격으로 주간팀과 야간팀을 번갈아 맡기도 한다.
- 이와 달리 주간팀과 야간팀이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는 공장도 있다.



4_임금

구분	내 용
최저임금	•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법률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이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제라고 한다. • 모든 회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2009년 현재 최저임금 액수는 1시간당 4,000원, 1일 3만 2,000원이며, 내년 2010년 기준으로는 1시간당 4,110원, 1일 3만 2,880원이다.
임금지급 체계	• 임금계약은 시간제, 일당제, 월급제, 연봉제가 있다. • 제조업은 월급제가 많고, 건설업은 일당제가 많다. 시간당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에 한해 시간급으로 계산되며, 일당으로 계산해 주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월급날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매일 매일 근무시간을 기록하여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회사에서 출근카드를 찍는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	•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 회사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라야 한다.



3» 고용보험

회사는 실업에 대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임금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한다.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1_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이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1) 적용대상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 둔 경우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단,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직장에 중대한 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알아두세요!

고용보험 가입자격

한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나, 국적이 없는 사람은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주 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2) 실업급여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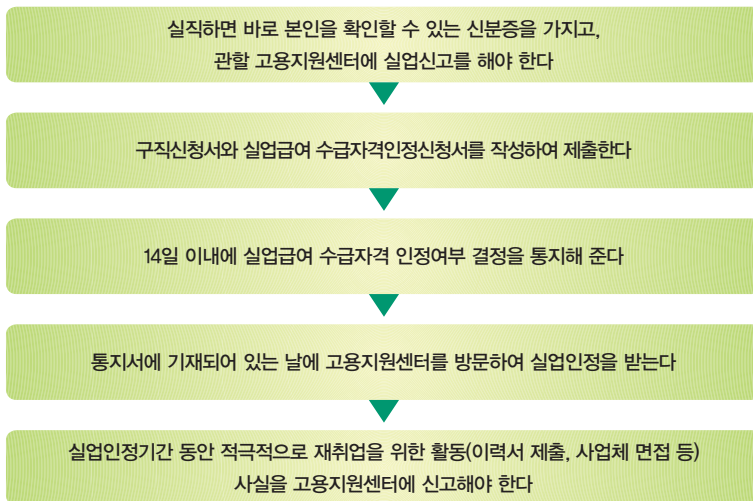
- 실업급여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지급일수
- 실업급여 지급일수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 일수)

(연령 : 퇴사당시의 만 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3) 신청절차



4» 산업재해보험

1_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국가가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보험제도의 설치를 통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신청을 하면 공단 측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1) 산업재해 기초상식

- 산재보상 신청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
만약 회사에서 신청을 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직접 신청하거나 상담지원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된다.
-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치료가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손가락 절단사고가 나면, 24시간 이내에 절단된 손가락을 들고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데려갈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본인의 실수로 생긴 사고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산재를 당해 치료를 받게 되면 즉시 통장을 만들고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 산재치료 중에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강제로 출국시킬 수 없다.
외국인노동자들 중에는 산재를 당하고도 법률을 잘 몰라 강제출국당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의 유족들이 한국 실정에 어두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산재를 당하는 즉시 상담지원 단체와 의논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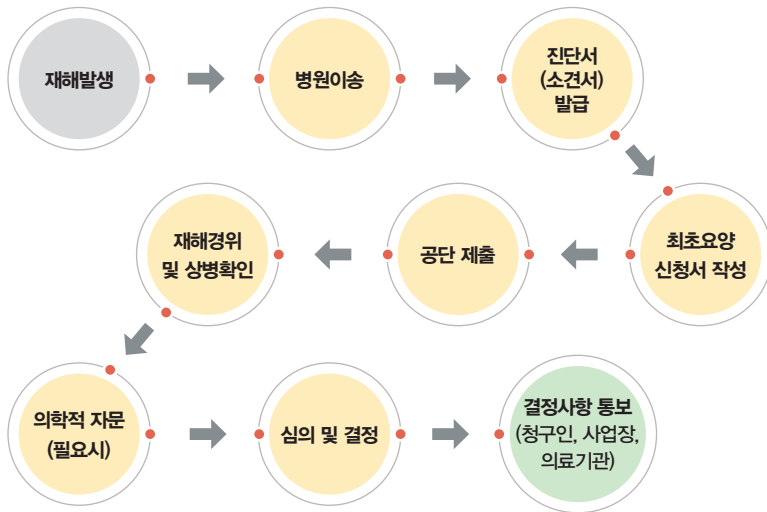
(2) 신청대상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 서류작성

가능하면 접수내용과 재해일시 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한다. 서류작성 시 산재 요양신청서, 휴업급여 신청서, 장해보상청구서(필요시), 요양비청구서를 각각 3부씩 작성해 근로자와 회사, 병원의 날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산재요양신청서와 휴업급여신청서 서류 원본을 송부한다.

(4) 보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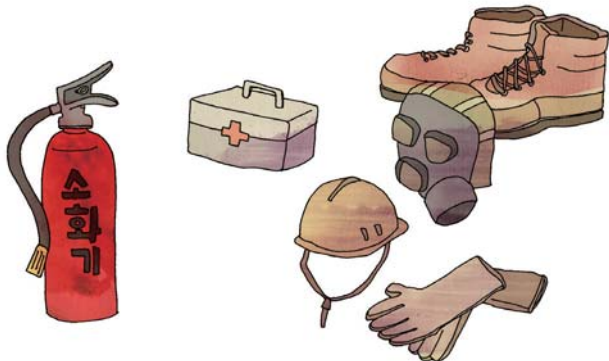
(5)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

구분	내 용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유족급여 · 장의비	사망 재해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제에 소요되는 장의비

2_ 기본적인 안전수칙

사고예방의 일차적 조건은 작업장과 주변 통로를 자주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잘 해두는 것이다. 통로의 장애물을 모두 치워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 다음은 모든 작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다.

- 유해물질은 종류별로 정해진 장소와 용기에 구분해서 보관하자.
- 작업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작업장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말자.
-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자.
- 회전하는 기계에서 작업할 때는 면장갑이 아니라 안전장갑을 끼자.
- 절단, 연삭, 기계 등 미세먼지나 찌꺼기가 날리는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을 쓰자.
- 세척제, 접착제 등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보호(방독)마스크를 착용하자.
- 항상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두자.
- 구급상자와 소화기 설치 위치를 알아두자.
- 안전표지나 안내표지 등 안내 메시지를 잘 알아두자.
- 식사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먹자.



3_ 알아두어야 할 안전표지

				
사용금지	타승금지	화기금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물기엄금
				
승강금지	전기조심	위험장소경고	폭발물경고	인화성물질경고
				
유해물질경고	회전물체경고	추락주의	미끄럼주의	끼임주의
				
보안경착용	방진마스크착용	귀마개사용	넘어지지 않게 할 것	안전화착용

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나 후에 출산휴가를 받는다. 또한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1_출산휴가

(1) 적용대상

- 육아휴직은 입양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산전후휴가는 실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만 가능하다.
-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여성근로자면 가능하다.

(2) 출산휴가 기간

- 아기의 분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출산예정이나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를 받는다.
- 출산휴가기간은 산후에 반드시 45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 산전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서 산전후 휴가도 종료된다.

(3) 출산휴가급여

- 출산휴가기간 동안 휴가급여가 지급된다.
- 대기업의 경우 60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 보험에서 지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의 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4)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

- 회사에서 받는 서류 : 산전후휴가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서류 :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2_유사산휴가

(1) 적용대상

- 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임신 16주 이후부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유사산휴가 기간

- 임신 16주 이전에 자연유산을 하였다면 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
- 16주 이후에 유산 되었다면 건강회복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휴가 부여 된다.
 - 임신 16주~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보호휴가 부여
 - 임신 22주~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보호휴가 부여
 - 임신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3) 유산신후가급여

- 유산·사신후가시 급여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다.
- 대기업은 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60일을 초과하는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4) 유산신후가급여 신청방법

유산신후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유산·사신후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유산신후가신청서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신했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3_ 육아휴직

태어난 지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다.

(1) 적용대상

- 육아휴직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육아문제로 인하여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하기 위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도록 남녀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2)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보장된다.

(3)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지만, 이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영유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월 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육아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장려금(월 20만 원)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월 20~30만 원)이 지급된다.

(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휴직을 하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다.
- 육아휴직신청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있다.
-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함께 사업주로부터 받은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Memo





X

대한민국 즐기기

- 224 여러 가지 문화 공간
- 225 주요 관광지
- 225 UNESCO 지정 세계문화유산
- 228 국립공원
- 229 지역별 주요 관광지
- 240 박물관 및 미술관
- 243 놀이공원
- 245 외국인거리



1» 여러 가지 문화공간

한국에는 영화관과 같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문화공간이 있는 반면에, 비디오방이나 만화방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곳도 있다.



영화관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아침 9시~10시 사이에 시작되는 첫 회 상영 요금을 할인해준다. 금, 토, 일요일에는 자정 이후까지 심야상영을 하는 곳들도 많다. 최근에는 10개 안팎의 스크린을 갖춘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늘어나 한 곳에서 여러 개의 작품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비디오방/DVD방

비디오나 DVD를 골라 작은 방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요금이 영화관보다 싸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골라 볼 수 있다.



만화방

만화책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 보고 싶은 만화를 골라 만화방 안에서 편안히 볼 수도 있고, 집으로 빌려가서 읽을 수도 있다.



노래방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선택하여 반주기의 반주에 맞춰 부를 수 있는 곳.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한국노래 외에도 다양한 나라 노래도 찾을 수 있다.



PC방

컴퓨터 게임, e-메일,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각자의 목적에 따라 PC를 사용할 수 있는 곳. 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에는 많은 수의 PC방이 있다. PC방 요금은 시간 당 1,000원~1,500원 정도이다.

2» 주요 관광지

한국에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비롯해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문화적 유산이 많이 있다. 또한 창덕궁, 수원 화성과 같이 UNESCO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곳도 있다.

1_UNESCO 지정 세계문화유산



종묘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5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적어 놓은 작은 나무패)를 모신 왕가의 사당으로, 국가의 정신적 지주이자 왕실 존립의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상징적 존재이다.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전쟁이 끝난 뒤 1608년 복구된 이후로 여러 차례 증·개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 지하철 1, 3, 5호선 종로3가역 8번, 11번 출구



해인사 장경판전 경상남도 합천군, 1995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13세기에 만들어진 세계적 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판 8만여 장을 보존하는 보고로,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이다. 고려대장경판은 나무로 만들어져 화재와 습기와 벌레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50년이 넘게 훼손되거나 단 한 장 뒤틀린 것도 없이 양호한 상태로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다.

※ 88올림픽고속도로 해인사 IC→가야산(해인사) 방면 1033번

지방도로 북쪽으로 14km



불국사·석굴암 경상북도 경주시, 1995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1,440년전 신라 법흥왕 22년에 그 어머니 뜻에 따라 세워졌으며, 그후 신라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다시 지어 절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임진왜란으로 건물은 물론 값진 보물들이 거의 불에 타거나 약탈되어 1920년 이전에는 일부 건물과 탑만이 퇴락한 채 남아 있었으나, 지속적인 원형복구 및 보수로 오늘날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불국사에서 산등성이를 타고 약 3km(포장도로 석굴로는 9km)정도 올라가면 동양 제일의 절각으로 알려진 여래좌상의 본존불이 동해를 마주 바라보고 있는 유명한 석굴암이 있다.

※ 경주역, 버스터미널에서 일반버스 10,11번, 좌석버스 101,102번 이용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1997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정조가 그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축조한 성으로 거중기, 녹로 등 신기술과 신기재를 사용해 축조하였다. 화성은 군사적 방어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매우 뛰어난 동양 성곽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 지하철 1호선 수원역, 4호선 사당역에서 7000번, 7700번



창덕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7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1610년 광해군때부터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총 258년 동안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임금들이 거처하며 정사를 편 궁궐이다. 후원, 또는 비원으로 더욱 잘 알려진 창덕궁에는 조선시대의 조경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다.

※ 지하철 3호선 안국역(매주 월요일 휴무)



경주 역사유적지구 경상북도 경주시, 2000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경상북도 동남부에 위치한 경주는 기원전 57년부터 서기 935년까지 56명의 왕이 다스리며 천년 동안 왕조를 이어 온 신라의 수도로써, 한국문화의 원형이 되는 신라시대의 역사와 문화의 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특별한 도시이다.



강화 · 고창 · 화순 고인돌 유적 2000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인돌은 말 그대로 ‘돌을 고였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형식이며, 박물관이 아닌 자연 현장에서 대면할 수 있는 청동기 시대 유적 가운데 하나다. 대체로 탁자 모양 고인돌은 대부분 한반도 중부 이북에서, 고임돌이 작거나 없는 고인돌은 전라도나 경상도를 비롯한 남부 지방에서 발견된다.



조선왕릉 40기 2009년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500년 이상 왕조가 이어졌고, 왕과 왕비의 능이 온전히 남아 있는 사례(조선 태조의 건원릉부터 마지막 황제 순종의 효릉)는 세계적으로도 조선왕릉이 유일하다. 조선왕릉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건축과 조경양식, 제례의식 등 무형의 유산이 역사적 전통을 통해 이어져오고 있다.

2_국립공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이 있거나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공원으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국립공원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름	특징	위치
지리산	1,500m가 넘는 여러 높은 봉우리	전북, 전남, 경남 등에 걸쳐있음
경주	불국사, 석가탑, 석굴암 등 신라 유적물	경북 경주시
계룡산	백제유적, 오래된 절 (동학사, 갑사, 신원사, 절경의 폭포)	충남 공주시, 논산시, 대전시에 걸쳐있음
한려해상	백로와 왜가리의 번식지인 학섬 (천연기념물)	전남 여주시, 경남 통영시에 걸쳐있음
설악산	백담사, 천불동 계곡, 오색온천, 대승폭포	강원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에 걸쳐있음
속리산	문장대, 법주사, 정이품송	충북 보은군, 괴산군, 경북 상주시에 걸쳐있음
한라산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1,950m), 백록담	제주도
내장산	가을 단풍, 단풍축제, 내장사	전라도
가야산	한국의 대표적 8가지 경치 중 하나, 해인사	경남 합천군, 거창군, 경북 성주군
덕유산	8개의 계곡, 무주 구천동, 겨울 풍경	전라도, 경상도
오대산	월정사 8각9층석탑, 상원사, 문화유적	강원도 강릉시, 홍천군
주왕산	기암절벽, 폭포	경북 청송군, 영덕군
북한산	절, 계곡, 문화재	서울 북부
치악산	비로봉, 상원사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월악산	문화재, 계곡, 사적	충북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경북 문경시
소백산	비로봉, 국립 천문대	충북 단양군, 경북 영주시
월출산	폭포, 노송대나무, 늦가을 단풍, 기암괴석	전남 영암군, 강진군

3_지역별 주요 관광지

(1) 서울 및 그 주변지역



경복궁 본 궁은 1395년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에 의해 건립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800년대에 고종이 재건립했다. 근정전, 향원정과 아미산 굴뚝 같은 건물은 잘 보존되어 한국 전통 문화 유산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다.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



청계천 40년 간 고가도로로 복개되어 있던 청계천을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였다. 길이는 5.8km에 이르고, 모전교, 광통교, 장통교, 버들다리, 두물다리를 비롯하여 총 22개의 다리와 9개의 분수가 설치되어 있다. 청계광장, 광통교, 정조반차도, 패션광장, 청계천 빨래터, 소망의 벽, 하늘물터, 버들습지 등의 청계 8경을 비롯하여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 서울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도보이동



조계사 조계사의 창건은 1910년 각황사(覺皇寺)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대한불교 직할교구 본사로서 조계종 총무원, 중앙종회 등이 자리하고 있는 한국 불교의 중심 사찰이다. 조계사에는 법당과 법당 뒤에 자리한 건물은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 국보 327호인 용문산 성원사 청동종, 탑과 석탑, 천연기념물 제 9호인 500년이 된 백송 한 그루가 있다.

※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남산 남산은 서울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 262m인 산이다. 조선 전기 서울에 왕도(王都)를 정할 때는 여러 산과 더불어 왕도의 위곽(圍郭)을 이루어 그 능선을 따라 성벽이 쌓여졌으나, 오늘날은 서울 중앙에 있으면서 102만 9,300m² 산지가 남산공원으로 지정되어 서울에서 가장 넓은 공원이 되었다. 그 정상부에는 탑골공원의 정자를 본뜬 팔각정(八角亭)과 N서울 타워가 있다.

※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4호선 명동역, 충무로역



한국민속촌 민속촌은 민족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습장 및 내·외국인을 위한 전통문화의 소개 등을 설립 취지로 하여 1974년에 완공되었다. 민속촌에서는 조선시대 후기의 한 시기를 택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재현해두었다. 공연행사로는 농악, 줄타기, 마상무예, 전통혼례식 공연 및 기타 이벤트 행사가 절기별로 행해지고 있다. 장터에서 증편, 인절미, 북어구이, 빈대떡, 파전 같은 우리 고유의 떡과 안주류에 순 재래식으로 담긴 동동주를 맛볼 수 있다.

※ 지하철 잠실역과 분당역에서 1116번 버스, 지하철 강남역, 양재역에서 1560번 버스, 수원역에서 37번 버스 또는 순환 버스

(2) 강원지역



경포대 해변 경포대 해변은 백사장이 1.8km에 평균 수심이 1~2m로 적당한 깊이와 완만한 경사 때문에 해마다 많은 인파가 찾아오는 곳이다. 해변 주변에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 해수욕과 산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피서지로 안성맞춤이다. 경포호 주변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여 즐기는 하이킹 또한 하나의 명물이다. 주변에 설악산, 오대산 국립공원이 있어 산, 바다, 계곡 등을 두루 돌아 볼 수 있다.

※ 경포역에서 19-7번 버스로 20분



삼척 환선굴 총연장 6.2km로 추정되는 동양 최대의 석회동굴. 해발 500m 지점의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 14m, 높이 10m의 아치형 동구(洞口)를 통해 다량의 동굴수가 유출되고 있다. 내부에는 국내의 여러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钟유석은 물론 여러 단계로 형성된 2차 생성물들이 집적되어 있어 동굴의 생성, 성장, 퇴화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 삼척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40분



설악산 한반도의 중추인 태백산맥 중에 가장 높은 대청봉을 정점으로 펼쳐진 설악산은 남한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봄의 철쭉 등 온갖 꽃과 여름의 맑고 깨끗한 계곡물, 설악제 기간을 전후한 가을 단풍, 눈 덮인 설경 등 사시사철 어느 때건 찾는 이의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한계령과 미시령을 경계선으로 동해쪽은 외설악, 서쪽은 내설악이라 부르며, 한계령 이남 오색지구를 남설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7번 버스



남이섬 1994년 청평댐을 만들 때 북한강 강물이 차서 생긴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내부의 섬이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도 유명하여 일본, 대만, 중국 등을 비롯한 아시아권 관광객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 가평버스터미널 또는 경춘선 가평역에서 택시나 시내버스로 약 10분 소요

(3) 중부지역



서산마애삼존불상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 84호로 지정되었다. 높이는 본존여래상 2.8m, 보살입상 1.7m, 반가상 1.66m이다.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가야산 계곡의 층암절벽에 거대한 여래입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보살입상, 왼쪽에는 반가사유상이 조각되어 있다.

※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버스로 2시간 20분



궁남지 사적 제135호로 '마래방죽'이라고도 하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東南里)에 위치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저수지. 부여읍에서 남쪽으로 약 1km 지점에 있으며, 동쪽에는 초석(礎石)이 남아 있고, 주변에 옛기와가 많이 산재하여 있다. 또 부근에는 대리석을 3단으로 쌓아올린 팔각형의 우물이 있는데, 지금도 음료수로 사용되고 있다.

※ 부여 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15분



공주공산성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금성동·옥룡동에 걸쳐 있는 백제시대 석축 성곽이다. 전체 성벽의 둘레 2,660m 중 1,930m는 석성이고, 730m는 토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제 때 축조된 동쪽의 토성 부분은 복원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나머지 석성 부분은 복원을 통해 원래의 성벽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 공주 버스터미널에서 1, 3, 22번 혹은 30번 버스로 20분



한국 독립기념관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조상들이 남긴 자취와 자료를 수집·전시하고 있다. 1987년 8월 1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면 흑성산로 120만 8,135평의 대지에 37동의 독립기념관을 세웠다. 겨례의 집, 겨례의 큰 마당, 3·1마당, 무궁화동산, 통일의 길, 백오인 층계, 7개의 전시관 등이 있다.

※ 천안 버스터미널에서 독립기념관 행 버스



법주사 신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24년 쯤인 진흥왕 14년에 의신조사가 세웠다. 경내에는 우리나라 3대 불상전 가운데 하나인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용화전, 원통보전 등 8개의 전각과 일주문, 금강문 등 5개의 부속건축물, 그리고 선원, 강원, 염불원 등 3개의 원과 또한 염화당, 용화당을 포함한 10여 채의 요사채들이 남아 있다.

※ 속리산 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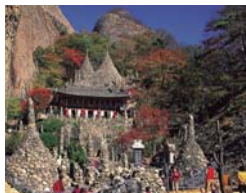
충주호 충주시 종민동과 동량면 사이의 계곡을 막아 만든 다목적 호수로 우리나라 호수 가운데 가장 크고 깨끗하다. 월악산, 송계계곡, 청풍 문화재단지, 단양 8경, 고수동굴, 구인사, 수안보온천, 노동동굴 등 많은 관광지가 주변에 펼쳐져 있다.



도담삼봉 장군봉(남편봉)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첩봉(딸봉)과 오른쪽은 처봉(아들봉) 등 세 봉우리가 물 위에 솟아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들을 얻기 위해 첩을 둔 남편을 미워하여 돌아앉은 본처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음악에 따라 움직이는 음악분수는 또다른 볼거리이다.

※ 단양IC - 5번국도(단양방면) - 상진대교 - 단양읍내 - 4번국도(도담삼봉방면)

(4) 남서지역(호남지방)



마이산 석탑 마이산은 수성암으로 이루어진 두개의 큰 봉우리로 솟마이봉(667m)과 암마이봉(673m)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세계 유일의 부부봉이다. 마이산 탐사는 이 갑용 처사가 쌓은 80여 개의 돌탑으로 유명하다. 돌탑들은 1800년대 후반 이갑용 처사가 혼자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센 강풍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



광한루 원래 이름은 광통루라 하였으나 1444년 관찰사 정인지가 그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여 이 곳을 월궁속에 있는 광한청허부와 같다 하여 광한루라 이름을 붙였다. 소설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춘향이 인연을 맺은 곳으로도 유명하며, 1920년대에 경내에 춘향사를 건립하고 춘향의 영정을 모셔, 우리의 민족정신을 후세에 기리고 있다.

※ 남원역에서 택시 10분, 남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 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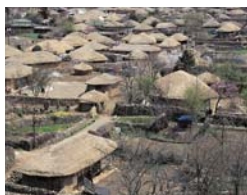
화엄사 구례읍에서 동쪽으로 5.4km 떨어진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천년 고찰로 544년에 연기조사가 창건하였다하여 절의 이름을 화엄경의 화엄 두 글자를 따서 붙였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630년에 벽암선사가 절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여 7년 만인 1636년에 완성하였다.

※ 구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30분



미륵사지 신라 선화공주와 혼인한 후 왕이 된 마동 즉, 무왕이 선화공주와 함께 용화산(현재의 미륵산) 사자사의 지명법사를 찾아가던 중에 갑자기 연못 속에서 미륵삼존이 출현하여, 이를 계기로 미륵사를 창건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국보 제 11호 미륵사지 석탑은 현재 높이 14.24m인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석탑이다.

※ 익산역에서 쌍능행 41, 60번이나 105번 버스



낙안읍성 성에는 초가집과 시장이 있고 산성은 조선시대 이래 잘 보존되어 왔다. 옛 문화를 보존하며 108 가구가 아직도 한국 전통 생활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안동 하회마을과 같이 양반마을이 아닌, 그저 대다수의 서민들이 살아왔던 옛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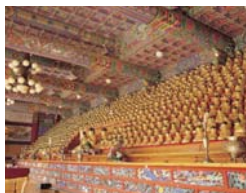
※ 순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63번 버스로 30분



왕인 박사 유적 구림마을의 동쪽 문필봉 기슭에 왕인 박사의 자취를 복원해 놓은 곳이다. 왕인은 기술공예의 전수, 일본가요의 창시 등에 공헌함으로써 일본 황실의 스승이며 정치고문이 되었다. 백제문화의 전수를 통하여 일본 사람들을 계몽한 일본문화사상의 성인으로 일본 비조문화의 원조가 되었다.

※ 영암 버스터미널에서 목포 쪽으로 차로 10여 분

(5) 남동지역(영남지방)



직지사 절 안 주위의 울창한 오랜 소나무와 깊은 계곡의 맑은 물, 가을의 단풍이 절경이며, 주위의 조경과 잘 어울려 있다. 1천구의 아기부처가 나란히 안치되어 있는 비로전(일명 천불전)이 있으며, 1,000년 묵은 찰뿌리와 싸리나무 기둥의 일주문,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건물인 대웅전, 통일신라시대 작품인 높이 1.63m의 석조약사 여래좌상(보물 319호)이 있다.

※ 김천 버스터미널에서 11번 버스 종점에서 하차, 도보로 20분



동화사 대구 도심에서 동북쪽으로 22km떨어진 팔공산 남쪽 기슭에 신라 소지왕 15년(493년)에 극달 화상이 세운 절로, 그때 이름은 유가사였으나, 흥덕왕 7년(832년)에 심지왕사가 다시 세울 때 겨울철인데도 경내에 오동나무가 활짝 피었다고 해서 동화사라 이름을 고쳐 불렀다고 한다.

※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동화사 행 105번 버스



봉정사 신라시대 문무왕 치하의 672년에 의상 국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재 건축물인 극락전은 고려시대 건축 양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사찰 경내에 고금당과 삼층 석탑을 포함한 많은 문화재가 있다.

※ 안동 버스터미널에서 51번 버스로 1시간



거제 해금강 원래 이름은 갈도(蝸 섬)로써 지형이 쉼쭈리가 뻗어내린 형상을 하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갈도보다 남해의 금강산을 뜻하는 해금강으로 널리 불리어지고 있다. 두 개의 섬이 맞닿은 해금강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며, 1971년 명승 제2호로 지정되었다.

※ 거제 장승포에서 버스로 1시간 30분



해운대 해변 백사장의 길이 1.8km, 너비 50m 규모로 넓은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고 있으며 얇은 수심과 잔잔한 물결로 해수욕장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부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이 해운대 해수욕장이라고 할 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이다.

※ 부산지하철 해운대역에서 도보 이동



안동 하회마을 하회마을은 풍산 류(柳)씨가 대대로 살아오던 전형적인 집성촌으로 한국 전통가옥의 미(美)가 살아 숨쉬는 마을이다. 조선시대의 대유학자 겸암 류운룡 선생과 서애 류성룡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 안동 하회마을은 1999년 4월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 한국 전통의 고장으로써 방문하여 더욱 유명해졌다.

※ 안동에서 예천방향으로 25km거리

(안동 - 송현동 - 풍산 - 풍천중리 - 하회마을)

(6) 제주도



성산일출봉 해발 182m인 성산 일출봉은 10만 년전 제주도 수많은 분화구 중에서는 드물게 바다 속에서 수중폭발한 화산체이다. 용암이 물에 섞일 때 일어나는 폭발로 용암은 고운 화산재로 부서져 분화구 둘레에 원뿔형으로 쌓여 있다. 일출봉 정상에는 지름 600m, 바닥면의 높이 해발 90m에 면적이 8만여 평이나 되는 분화구가 있다.

※ 제주 민속박물관에서 버스로 30분



만장굴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로서 폭은 약 5m, 높이는 5~10m가 되며 총 연장은 13,422m에 이른다. 약 250만 년전 제주도 화산 발생시 한라산 분화구에서 흘러넘친 용암이 바닷가 쪽으로 흘러 내리면서 지금과 같은 커다란 공동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 제주 버스터미널에서 차로 40분



산굼부리 제주도에에는 360여 개의 기생화산이 분포되어 있지만 이곳 산굼부리를 제외한 다른 화산은 모두 대접을 얹어놓은 듯한 분화구의 형태이고, 산굼부리 분화구만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용암이나 화산재의 분출없이 폭발이 일어나 그곳에 있던 암석을 날려 그 구멍만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화산을 마르(Maar)라고 부르는데 한국에는 하나 밖에 없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화산이다.

※ 제주 버스터미널에서 40분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나 관광안내전화 ☎1330(서울 외 지역이나 휴대폰에서는 지역번호+1330)을 이용하면 우리나라의 관광정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주제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태국어도 지원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해당지역의 관광지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구분	홈페이지 주소	구분	홈페이지 주소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강원도	www.provin.gangwon.kr
부산광역시	www.busan.go.kr	충청북도	www.cb21.net
대구광역시	www.daegu.go.kr	충청남도	www.chungnam.net
인천광역시	www.incheon.go.kr	전라남도	www.jeonnam.go.kr
광주광역시	www.gwangju.go.kr	전라북도	www.jeonbuk.go.kr
대전광역시	www.metro.daejeon.kr	경상북도	www.gyeongbuk.go.kr
울산광역시	www.ulsan.go.kr	경상남도	www.gsnd.net
경기도	www.gg.go.kr	제주도	www.jeju.go.kr

4_ 박물관 및 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02-2077-9000)

국립중앙박물관은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을 전시해 놓은 대표적인 박물관이다. 주변 아시아 국가의 문화를 소개한 아시아관도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어린이 박물관, 각종 음악회, 연극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전문공연장도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www.nfm.go.kr (☎02-3704-3114)

경복궁 안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인이 한반도에 자리잡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주요생활상을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 민속박물관에서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민속 내용물을 눈과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경찰박물관

www.policemuseum.go.kr (☎02-735-2519)

조선시대 경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찰의 역사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다.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직접 살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다.



농업박물관

www..agrimuseum.or.kr (☎02-2080-5727)

농업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농업사와 농업문화의 연구를 통해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을 배우고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www.museum.seoul.kr (☎02-724-0163)

서울은 조선왕조 이후 6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다.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항공우주박물관

www.aerospacemuseum.or.kr (☎02-300-0466)

21세기는 항공우주과학의 시대이다. 첨단 항공 우주산업과 관련된 항공기의 발달사, 비행기의 원리와 항공기의 구조, 전투기의 모형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namu.sdm.go.kr (☎02-330-8899)

서울 연희동에 위치한 자연사박물관은 태초의 생명부터 인류까지의 진화과정과 현재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를 모형으로 전시해 놓고 있다. 특히 공룡의 생활, 아름다운 나비 등 생명체의 다양한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리움삼성미술관

www.leeum.org (☎02-2014-6901)

한국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고대와 근대, 현대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특히 장르와 작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양식을 계승하여 변화되어 온 미술사를 감상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www.moca.go.kr (☎02-2188-6000)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인근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의 근대와 현대의 미술작품들을 다양하게 전시하고 있으며 세계 미술의 시대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www.sscmc.or.kr/culture2 (☎02-360-8590)

서울 현저동에 위치한 옛날 서대문형무소를 그대로 보존하여 현재의 역사관으로 꾸며 놓았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인의 탄압기관을 그대로 되살려 놓은 한국민의 자주독립의 정신을 일깨워 주는 역사의 산 교육장이다.



전쟁기념관

www.warmemo.co.kr (☎02-709-3139)

서울 용산에 자리 잡고 있는 전쟁기념관은 전쟁에 관한 모든 자료와 물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총, 대포, 탱크, 전투기 등 고대로부터 전쟁 시 사용하던 무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삼성어린이박물관

www.samsungskids.org (☎02-2143-3600)

서울 신천동에 위치해 있으며 과학, 미술, 방송국,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직접 표현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철도박물관

info.korail.com (☎031-461-3610)

기차에 관한 많은 것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으로서, 경기도 의왕에 위치하고 있다. 옥외전시장에는 다양한 기차와 수리장비 등을 전시하고 있다.

간송미술관

(☎02-762-0442)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간송미술관에는 한국의 국보급 고서와 문화재, 미술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 이외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박물관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www.emuseum.go.kr을 참고하자. 한층 더 다양한 박물관을 찾아볼 수 있다.

5_놀이공원



서울대공원

grandpark.seoul.go.kr

경기도 과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청계산이 주는 자연의 여유로움과 동물원의 낭만을 느낄 수 있다. 돌고래쇼장, 테마가든 (장미원과 어린이동물원), 자연캠프장,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롯데월드

www.lotteworld.com

롯데월드는 서울 잠실에 위치한 테마파크이다. 다양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어드벤처와 페스티벌, 퍼레이드, 실내외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에버랜드

www.everland.com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의 최대 종합테마파크이다. 다양한 놀이기구, 사파리 월드와 테마동물원 등이 있다. 특히 실내외가 연결된 대형 규모의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는 인공파도에서부터 서핑까지 즐길 수 있다.



설악워터피아

www.seorakwaterpia.com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설악워터피아는 설악한화리조트 내에 있는 종합 온천테마파크로 사계절 내내 물놀이와 온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한국민속촌

www.koreanfolk.co.kr

경기도 용인에 위치. 옛 사람들의 삶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한 야외 민속 박물관으로 한국의 전통건축물과 민속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이다.



부산어린이대공원

www.bschildpark.or.kr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도심 속 시민공원이다. 어린이대공원 내에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꿈나무교통나라, 놀이동산, 숲체험학습센터, 동물원이 있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

www.expopark.co.kr

엑스포과학공원은 과학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다. 첨단 과학기술을 전시하고 있으며, 입체영상관, 최첨단 아이맥스영화관, 과학체험교실, 전통공예교실, 로봇교실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천안상록리조트

www.sangnokresort.co.kr

상록리조트는 놀이기구, 물놀이공원, 4계절 썰매장, 골프장, 빌리지를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형 종합레저타운이다.



대구우방랜드

www.woobangland.co.kr

우방랜드는 대구의 대표적인 놀이시설이다. 77층 전망대에 설치된 스카이점프, 아쿠아리움, 어린이들을 위한 별난물건 박물관, 물놀이 축제 등이 있다.



통도 환타지아

www.fantasia.co.kr

경남 양산에 위치한 통도 환타지아에서는 놀이시설, 물·눈썰매장, 갤러리, 축제 등을 즐길 수 있다.



금호패밀리랜드

www.kumhofamilyland.co.kr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금호패밀리랜드는 30종의 최첨단 놀이시설, 사계절 썰매장과 아이스링크, 수영장을 갖춘 사계절 종합테마파크이다.

6_외국인거리

• 이태원(서울)



외국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이태원에는 각국 대사관과 이슬람사원이 있으며,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들도 많다. 서울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에서 녹사평역까지 이어진 길을 걷다 보면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유럽식당 :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독일
- 아시아 식당 : 파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일본, 한국
- 남미 식당 : 멕시코

각 식당들의 자세한 위치나 정보는 www.iteawon.go.kr/food/index.asp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제공)

• 네팔 거리(서울) : 창신동과 송인동 일대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4번 출구 주변인 송인동과 창신동 일대에는 네팔 음식점과 가게들이 모여 있는 네팔 거리가 있다. 2000년을 전후해 형성된 이 거리엔 현재 무역업체나 음식점을 경영하는 네팔인 200여 명이 모여 살고 있다.

• 연변 거리(서울) : 가산동, 가리봉동, 대림동 일대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아 ‘연변 거리’로 통하는 이곳은, 구로공단의 노동자들이 살던 쪽방(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작은 방) 밀집지역에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인들이 들어오며 형성되었다. 가리봉 시장을 비롯한 가산동 거리는 골목마다 중국 식료품점과 음식점, 중국노래방, 국제전화방, 환전소 등이 즐비하다.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과 가리봉역, 2호선 대림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 **중앙아시아 타운(서울)** : 을지로6가와 광희동 일대

서울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12번 출구에서 나와 남쪽으로 난 길을 20m 정도 걸어가면 중앙아시아촌이 나온다.

러시아와 인근 국가의 보파리상들이 동대문 일대 의류시장을 자주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아시아촌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정통 중앙아시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도 찾을 수 있다.

• **필리핀 거리(서울)** : 혜화동 로터리 일대

동성 중 · 고등학교 담장을 따라 혜화동 성당까지의 거리 일대를 말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필리핀 노동자들이 필리핀산 망고, 코코넛, 롱빈(콩류) 등 열대 과일과 통조림, 삼푸, 화장품, 향료, 조미료 등 필리핀인이 즐겨 쓰는 생활필수품 등을 판다. 필리핀 유명 가수의 음반이나 TV드라마, 영화 테이프 등도 살 수 있다.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 **차이나타운(인천)**

한국과 중국문화가 공존하는 인천 차이나타운은, 1883년 인천항개항과 더불어 중국인 거주지역이 형성된 이래 지금까지 그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한국에서 유일한 차이나타운인 이곳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500여 명의 화교가 살고 있다.

홈페이지는 www.ichinatown.or.kr/index.asp(한국어 제공)

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 국경없는 마을(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역 앞 원곡동은 한국인들보다 여러 나라 출신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이는 지역이다. 여러 나라 출신 사람들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마을로 각 나라 음식점, 상점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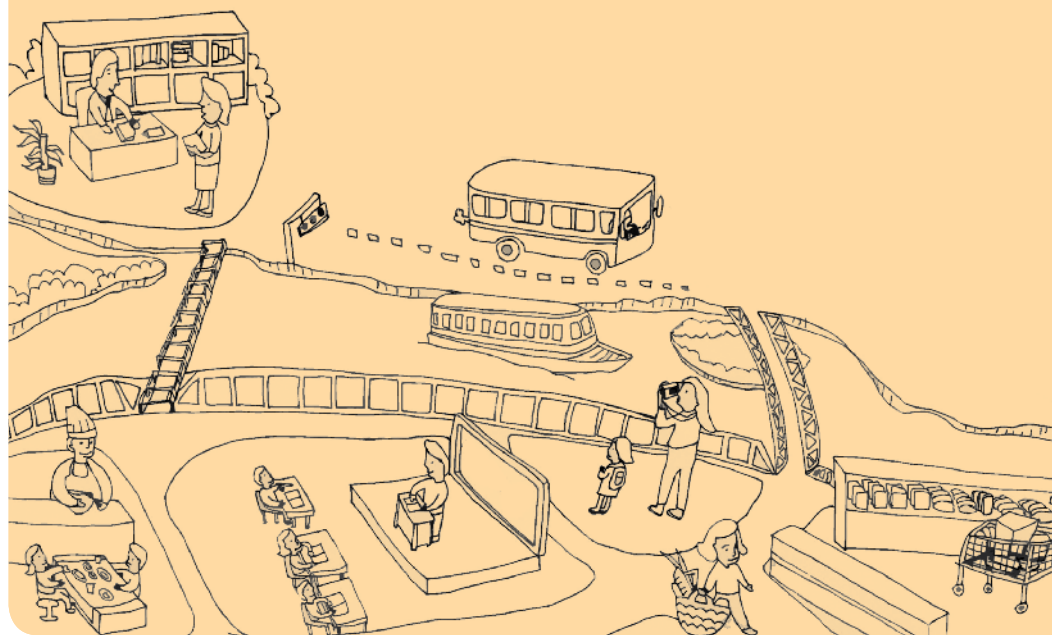
서울지하철 4호선 안산역

• 러시아거리(부산)

부산역에서 마주 보이는 초량 외국인 상가로 ‘초량 텍사스거리’라고도 불린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 선원들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러시아인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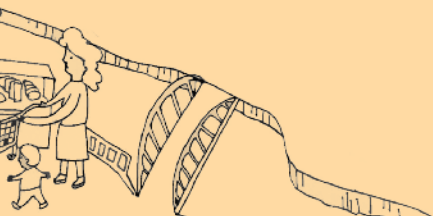
부산지하철 부산역 5번 출구





부록

- 25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 255 이주여성간접지원센터 ☎1577-1366
- 255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256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센 터	연 락 처
서울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957-1074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953-0468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846-5432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599-3260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403-3844
부산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610-2027
	사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320-8344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205-8345
	기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1-723-0419
대구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475-2324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580-6819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341-8312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282-4371
인천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440-6545
	강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933-0980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552-1016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467-3912
광주	광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954-8003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대전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2-252-9997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2-639-2664
울산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2-274-3185
	울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2-263-6881
경기	남양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0-8214
	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57-8504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677-7192

센터		연락처
경기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38-9801
	부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0-6391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740-1175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439-2209
	용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23-7133
	의정부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878-7880
	평택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650-2660
강원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765-8135
	강릉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648-3019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251-8014
	속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638-3523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433-1925
	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344-3459
	인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462-3651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330-2087
	철원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452-7800
충북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223-5253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733-1915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544-5422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643-0050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856-2253
	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832-1078
	진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537-5431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745-8489
충남	공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856-0883
	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750-3990

센 터		연 락 처
충남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540-2972
	부여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835-2480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334-1367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664-2710
	홍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634-7432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735-5810
	당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358-3673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936-8506
	서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953-1911
	연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862-9338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7733-8305
	청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944-2333
	태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1-670-2396
전북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850-6046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352-3362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545-8506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635-5474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291-1296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243-0333
	정읍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531-0309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561-1366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653-8180
	군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443-0053
	무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322-1130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580-4587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642-1837

센터		연락처
전북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433-4888
전남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331-0709
	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742-1050
	영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353-7997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463-2929
	광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797-6832
	고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832-5399
	여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690-7160
	장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393-5420
	장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864-4810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534-0017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362-5411
	함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324-5431
	화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375-1057
	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380-2807
	무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452-1813
경북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464-0545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554-5591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270-5556
	예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654-4321
	경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3-810-6221
	경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743-0770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439-8279
	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535-1341
	안동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853-3111
	영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634-5431

센 터		연 락 처
경북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334-2882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789-5411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832-5440
경남	김해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329-6349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749-2326
	창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274-8337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682-4958
	거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945-1365
	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245-8746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356-8875
	양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382-0988
	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963-2013
	남해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864-6965
	함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583-5430
제주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4-712-1140

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지 역	센 터	상 담	사무처
서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02-927-1410
수원	지역센터		031-257-1841
대전			042-488-2979
광주			062-367-1577
부산			051-508-1366

3»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센 터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644-0644	www.migrantok.org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31-4750-111	www.afwc.or.kr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31-8389-111	www.ufc.or.kr
김해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55-338-2727	www.gimhaekorea.or.kr
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55-253-5270~5	www.mfwc.or.kr

4»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기 관	주 소	관할구역
서울·경기·인천지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21	서울특별시/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세종로출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로 12 윤현궁 SK허브빌딩 2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31	인천광역시/ 경기도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옹진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번지	경기도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5	평택항, 당진항
오산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송탄우체국 사서함 3호	오산군용비행장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67-2번지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강원지역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6	강원도, 경기도 가평군
동해출장소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47 동진빌딩 4층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속초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3-3 속초항만지원센터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고성출장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88	남북왕래 출입국심사
충북·충남·대전지역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새터1길 23	충청북도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길 150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북 영동군, 옥천군
대산출장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97-8, 한성빌딩 3층	충남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당진군, 보령항

기관	주소	관할구역
전북·전남·광주지역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호성로 213	전라북도
군산출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49-32	전라북도 군산시, 장항항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267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광양출장소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59-5	광양항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96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제외)
목포출장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82-2	전라남도 목포시,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경북·경남·대구·울산지역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로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상남도(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울산출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16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117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출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13	경상북도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경상남도 마산시 해안로 260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제외)
통영출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171-10	통영시
사천출장소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44-5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거제출장소	경상남도 거제시 마전동 535-5	경상남도 거제시
제주지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7	제주특별자치도

한국 생활 가이드북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

발행

관계부처 합동

기획/제작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사진협조

한국관광공사

디자인

(주)더세븐파트너스

번역

(주)엔코라인(영어, 러시아어), 채널텐(몽골어), 유코무역통번역(타갈로그어),
글로벌트랜스(중국어, 베트남어)

참고 및 인용문헌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2007, 보건복지가족부)

외국인노동자 문화가이드북(2005, 문화체육관광부)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총 3권, 2009, 교육과학기술부 · 충청북도교육청)

행복드림 Happy Start(2009,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 이 책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인용 · 발췌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